

정책보고서 2010-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이소정 정경희 김경래 이은진

강 인 이금룡 한정란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3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 머리말

평균 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평균 약 20여년의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함을 의미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극적 계획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미리 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설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후설계를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놓치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개인들도 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며 노년기를 풍성하게 채워나갈 계획과 준비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급박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노후설계를 위한 기반은 대상자가 가진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마다 축적된 서로 다른 자원, 기술, 경험, 취향에 대하여 각자 희망하는 노후의 인생설계 및 이에 필요한 물적 기반도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설계를 위한 기반은 최대한 다양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설적인 노후설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수행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조사,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화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소정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원내의 정경희 연구위원, 이은진 연구원과 협동연구진으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인 교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의 이금룡 교수,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의 한정란 교수가 참여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강혜규 복지서비스연구실장과 염지혜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	1
요약.....	3
제1장 서 론.....	11
제2장 우리나라 복지모형과 노후설계 서비스 .....	17
제1절 사회서비스로서의 노후설계서비스 .....	17
제2절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22
제3장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	31
제1절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내용 .....	31
제2절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 구축 방안 .....	33
제4장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	55
제1절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 .....	55
제2절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	71
제5장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	85
제1절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 .....	85
제2절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100
제3절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 .....	103
제6장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	109
제1절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과 법적 과제 .....	109
제2절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	112

제3절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안 .....	119
제4절 기존법률 개정안 .....	134
제7장 노후설계서비스 국내사례 현황 .....	141
제1절 국내 노후설계 관련 프로그램 사례 .....	141
제2절 국내사례 현황 .....	142
제8장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 결과 .....	167
제1절 조사 개요 .....	167
제2절 기술통계 결과 .....	168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1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17
참고문헌 .....	231
부 록 .....	241

## 표 목차

〈표 2-1〉 재화별 서비스 공급주체 .....	18
〈표 3-1〉 거점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유관기관 장·단점 비교 .....	35
〈표 4-1〉 자격 특성 및 영역별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기존 전문 인력 .....	57
〈표 5-1〉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기준 .....	86
〈표 5-2〉 사회복지 2급 교과목 .....	86
〈표 5-3〉 사회복지사 1급 검정시험 과목 .....	87
〈표 5-4〉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	87
〈표 5-5〉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취득방법 .....	89
〈표 5-6〉 평생교육사 과목 .....	89
〈표 5-7〉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	91
〈표 5-8〉 자산관리사 시험과목 .....	95
〈표 5-9〉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	96
〈표 5-10〉 종합자산관리사 시험과목 .....	97
〈표 7-1〉 인문학 아카데미 개요 .....	143
〈표 7-2〉 프로그램 내용 .....	148
〈표 7-3〉 은퇴자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 세부 내용 .....	150
〈표 7-4〉 제3기 인생대학 프로그램 내용 .....	153
〈표 7-5〉 세부 강의 일정 .....	156
〈표 7-6〉 변화관리 프로그램 .....	157
〈표 7-7〉 전직지원 프로그램 .....	158
〈표 7-8〉 생애설계 컨설팅 .....	158
〈표 7-9〉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용 .....	162
〈표 8-1〉 조사대상자의 인구분포 현황 .....	167
〈표 8-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에 관한 인식 .....	168
〈표 8-3〉 직업유형별 노후에 관한 인식 .....	170

〈표 8-4〉 연령별 노후준비 중요도 .....	171
〈표 8-5〉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 중요도 .....	172
〈표 8-6〉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중요도 .....	173
〈표 8-7〉 가구형태별 노후준비 중요도 .....	173
〈표 8-8〉 월수입별 노후준비 중요도 .....	174
〈표 8-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경제) .....	176
〈표 8-10〉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건강) .....	176
〈표 8-1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여가) .....	177
〈표 8-12〉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사회참여) .....	177
〈표 8-13〉 연령별 노후준비도 .....	178
〈표 8-14〉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도 .....	179
〈표 8-15〉 교육수준별 노후준비도 .....	181
〈표 8-16〉 가구형태별 노후준비도 .....	183
〈표 8-17〉 월수입별 노후준비도 .....	183
〈표 8-18〉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경제) .....	185
〈표 8-1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건강) .....	185
〈표 8-20〉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여가) .....	186
〈표 8-2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사회참여) .....	186
〈표 8-2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경제) .....	188
〈표 8-23〉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경제) .....	189
〈표 8-2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건강) .....	189
〈표 8-25〉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건강) .....	190
〈표 8-2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여가) .....	190
〈표 8-27〉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여가) .....	191
〈표 8-2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사회참여) .....	192
〈표 8-2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사회참여) .....	193
〈표 8-3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경제) .....	194

〈표 8-3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경제) .....	195
〈표 8-3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건강) .....	195
〈표 8-33〉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건강) .....	196
〈표 8-3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여가) .....	197
〈표 8-35〉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여가) .....	198
〈표 8-3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 (사회참여) .....	199
〈표 8-37〉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사회활동) .....	200
〈표 8-3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정보제공 및 연결 서비스 필요도 .....	201
〈표 8-39〉	직업유형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필요도 .....	202
〈표 8-4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전문가상담 서비스 필요도 .....	203
〈표 8-41〉	직업유형별 전문가상담 서비스 필요도 .....	204
〈표 8-4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교육프로그램 필요도 .....	204
〈표 8-43〉	직업유형별 교육프로그램 필요도 .....	205
〈표 8-4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지속적인 관리서비 스 필요도 .....	206
〈표 8-45〉	직업유형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필요도 .....	207
〈표 8-4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정보제공 및 연결 서비스.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의향 .....	208
〈표 8-47〉	직업유형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의향... ..	209
〈표 8-4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교육프로그램.지속 적인 관리서비스 이용의향 .....	209
〈표 8-49〉	직업유형별 교육프로그램.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이용의향 .....	210
〈표 8-5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설계서비스 적 합기관 .....	211

〈표 8-51〉 직업유형별 노후설계서비스 적합기관 ..... 212  
 〈표 8-5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기관 선택 이유.. 213  
 〈표 8-53〉 직업유형별 기관선택 이유 ..... 214  
 〈표 9-1〉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의 장단점 비교분석 ..... 219  
 〈표 9-2〉 수행체계 안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 221

그림 목차

[그림 2-1] 경합성과 배제를 기준으로 본 재화의 분류 ..... 18  
 [그림 2-2]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 26  
 [그림 2-3]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달체계 ..... 27  
 [그림 3-1]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구성요성 및 내용 모형도 ..... 31  
 [그림 3-2]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수행체계 모형 ..... 34  
 [그림 3-3]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전략 및 사회자원 연계 모형 ... 36  
 [그림 3-4]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체계 ..... 37  
 [그림 3-5] 수행체계 1안 - 지역사회 거점기관 중심으로 운영 ..... 41  
 [그림 3-6] 수행체계 2안 -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 ..... 43  
 [그림 3-7] 수행체계 3안 - 거점기관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 44  
 [그림 3-8] 수행체계 4안 -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활용 ..... 45  
 [그림 3-9] 수행체계 5안 -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 모형 ..... 47  
 [그림 7-1] 전직지원 서비스 진행과정 ..... 160  
 [그림 7-2] 생애설계 프로세스 ..... 161  
 [그림 9-1]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 ..... 223  
 [그림 9-2] 노후 건강 준비 정도 ..... 223  
 [그림 9-3] 노후 여가 준비 정도 ..... 223

[그림 9-4] 노후 사회참여 준비 정도 .....	224
[그림 9-5]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단위 : %) .....	225
[그림 9-6] 직종별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26
[그림 9-7] 성별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27
[그림 9-8] 교육수준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28
[그림 9-9] 소득수준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29



# Abstract

## Policy strategy fo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old age planning system

The life expectancy of Korean society is expected to reach 78.2 years for men and 84.4 years for women in the year 2020, implying that the proportion of old age within the lifecourse is increasing, calling for a comprehensive policy strategy for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older people. However, such objective cannot be achieved by sole endeavor of the public sector and individual effort to prepare for old age is necessary.

However our society is not ye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old age preparation, needless to mention the need for the public sector to intervene in establish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onsulting old age preparation.

This study is designed with the objective of suggesting diversified plans for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old age preparation.



# 요약

## 1. 주요 연구 내용

### 가.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네트워크 관리방식, 민간의 거점조직 등을 통해 다원화된 시스템 체계(complex system)을 수용해 가야 할 것임.

### 나. 노후설계 서비스 수행체계

- 노후설계 지원서비스는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후설계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산하의 중앙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방안 검토
- 민간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인증제도 및 자격증 제도를 근거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노후설계지원사업 중앙센터 설립 방안

-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거점기관
  - 거점기관 중심안 (수행체계 제 1안)
  - 지방자치단체 중심안 (수행체계 제 2안)
  -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 (수행체계 제 3안)
  - 사회서비스 관리원 활용안 (수행체계 제 4안)
  - 국민연금공단 활용안 (수행체계 제 5안)

#### 다.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 노후설계 서비스에서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재무 및 일자리 관련 전문자격: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자격: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생활건강지도사
  - 대인 관련 전문자격: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등
  - 여가 관련 전문자격: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통합 관련 전문기는 노후생애설계전문가(SLCA), 노후설계컨설턴트(CSA), 노인교육사 등
- 노후설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로는 상담자, 교육자, 연계자, 통합자, 개발자, 평가자, 촉진자가 있음.

#### 라.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수행체계 제 1안: 전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각 시군구에서 위탁받은 지역의 노후설계 서비스 거점기관에 위치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이미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업무에 요구되는 교육내용 혹은 교과목을 규정하여 그 과목을 이수한 이들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로서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행체계 제 2안: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각 시군구청 내의 지역 노후설계지원센터 안에 위치
  - 시군구의 공무원 중 필요 인원을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하게 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활용, 기존 업무와 노후설계 업무 간의 갈등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노후설계 관련 교육 실시 부담이 있음.
  - 또는 노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별도 채용,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수행체계 제 3안: 전문인력 시군구청과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 양쪽에 위치, 시군구청 내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업무는 주로 기존 공무원 인력 중 관련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두는 방안
  - 담당업무 할 공무원들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활용
- 수행체계 제 4안: 기존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노후설계지원팀 신설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자바우처의 운용 업무만을 담당, 실질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복지 수행체계와 민간의 사적 시장이 공동으로 담당
  - 시장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 질 관리가 우려되며 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 내에 노후설계지원팀을 두고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자격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수행체계 제 5안: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양성해오던 노후설계컨설팅센터(CSA)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 요구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및 자격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

-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 필요성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수행체계 제 1안: 지역사회복지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행체계 제 2안: 첫 번째 안은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재교육기관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혹은 지정된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교육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정부가 해당 기관에 위탁,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의 1안의 경우처럼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행체계 제 3안: 2안과 마찬가지로 재교육기관이나 대학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
  - 수행체계 제 4안: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기타 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기관 활용
  - 수행체계 제 5안: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외부 원격대학에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 개발하여 원격교육방식으로 노후설계컨설턴트 교육을 실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 바람직할 것임.

#### 마.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은 1차적으로 노후설계 기반을 조성, 2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음.
- 노인과 영유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장년층에 대하여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의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권리적 차원에서의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후설계서비스는 보건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영유아-청소년-중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계층간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큼.

- 헌법상 명시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해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국민의 근로권·근로 의무는 간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이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시안 제시
  - 노후설계사 교육기관, 직무·자격증의 교부, 노후설계사 자격제도 도입, 바우처 발급, 사업평가, 노후설계서비스 통계조사 근거규정,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등
- 기존 법률 개정 시안 제시
  - 기존법률의 개정하는 방식에 한계점이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함.

#### 바.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국내 사례 조사

-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운영 주체에 있어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인 내용의 진행을 하기 보다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다수임.
- 노후설계 관련 프로그램은 인생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타인 은퇴설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각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내용을 준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위의 내용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개별적인 주제들로 나열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내용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라 내용과 이용자들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가 혹은 무료 비용을 부담하여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의 재원은 외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방면의 내

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음. 이를 포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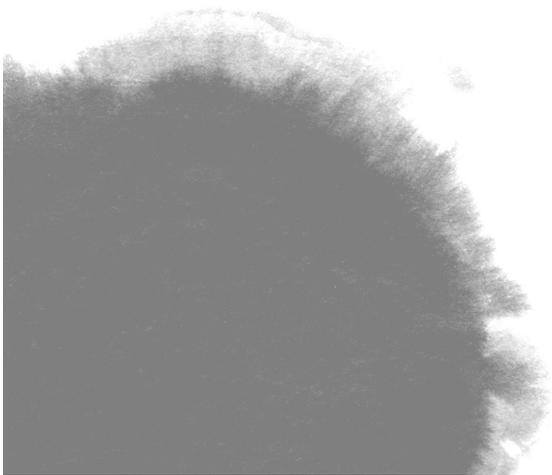
사.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 인식 및 욕구조사

-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욕구에 대해 전화 조사 실시
- 경제 및 건강에 대한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준비도는 높은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 영역의 인식과 준비도는 낮게 나타남.
- 노후설계서비스 가운데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저축·투자 상담서비스,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연령집단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수행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 45-59세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도와 이용희망율이 고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직종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 정도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르게 나타남.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노후준비도가 나은 상태이지만 미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도도 높게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 및 소득수준별로 노후준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희망하는 노후설계 인프라에서 차이를 보임.

01

K  
I  
H  
S  
A

서  
론





# 제1장 서론

## 1.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될 노년층의 삶의 질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는 일거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온 국민이 스스로의 노후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리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설계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가를 수반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미리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까지 사회적 화두(話頭)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노후설계를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

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일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자각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려는 개인들도 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며 노년기를 내용적·질적으로 채워나갈 계획과 준비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저조한 사회참여율에서도 알 수 있듯,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소극적인 삶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고령화 현실에 직면해 가장 기본적이고 급박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증하는 노인인구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자립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의 공적 사회보장체계 확립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및 서비스 제도가 확립된 현 상황에서 보다 보편적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복지사회로 도약해야 한다.

한편, 노후설계를 위한 기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욕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일한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을 수반하는 광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개인은 서로 다른 자원, 기술, 경험, 취향을 축적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마다 희망하는 노후의 인생설계 및 이에 필요한 물질 기반도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노후설계를 위한 기반은 최대한 다양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대상이 편중되며 포괄적이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적인 노후설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각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이것을 조정(coordinate)하는 정부의 균형 잡힌 역할 제시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노후설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전 국민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노후에 대해 다각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줘야 한다.

##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7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나라 복지모형 전반 속에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위치를 점검한다. 또한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전달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주체로 상정한 시나리오별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유사 전문인력과 비교 검토를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안 별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노후설계서비스에 관련된 조항이 삽입될 수 있는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입법방식에서부터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국내 노후설계서비스 사례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 노후설계서비스 국내사례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노후설계서비스가 갖는 특징과 향후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8장에서는 미래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인식과 욕구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의 전반을 요약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한다.



우리나라 복지모형과 노후설계서비스



## 제2장 우리나라 복지모형과 노후설계 서비스

### 제1 절 사회서비스로서의 노후설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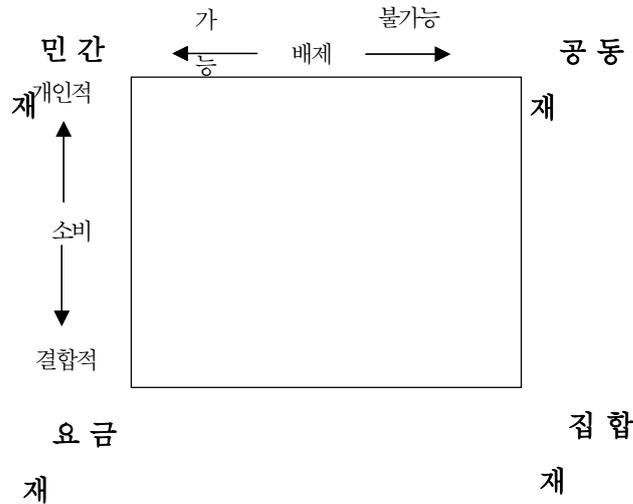
#### 1. 사회서비스로서의 노후설계서비스의 특징

노후설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재화로 보는가에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방식의 모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화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비에 경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되며(Savas, 1994), 이러한 기준을 교차시키면, 민간재(사적재), 공동재, 요금재, 집합재 등이 분류될 수 있다(그림 2-1 참조). 민간재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서 생산 및 거래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반면 공동재의 경우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먼저 서비스를 접한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누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영역의 개입이 요구된다. 반면 요금제는 보통 시장에서 공급·관리되지만 독점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쟁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장애가 존재할 경우 공공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집합재의 경우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재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정경희 외(2006)에서 논의된 재화의 분류에 관한 논의를 요약정리하였으며, 제시된 기준에 비추어 노후설계서비스가 검토하여야 할 논점들을 정리하고자 함.

[그림 2-1] 경합성과 배제를 기준으로 본 재화의 분류



자료: Savas(1994)

<표 2-1> 재화별 서비스 공급주체

구 분		배 제	
		가능	불가능
소비	개인소비	민간재 (기업)	공동재 (기업: 정부 보조 필요)
	공동소비	요금재 (정부 또는 기업: 정부규제)	집합재 (정부)

이러한 재화의 종류 중 노후설계서비스를 어떠한 성격의 서비스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노후설계서비스 제공방안이 상이해질 것이다. 재화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질을 가진 충분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집합적인 개입과 공공의 책임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노후설계서비스를 민간재로 간주할 경우 공공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노후설계서비스라는 것이 적절한 노후설계를 통하여 개인의 삶이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재로만 보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로 보기에 제한이 있다.

한편 노후설계서비스를 요금재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면, 노후설계서비스는 시장에서 공급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독점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

가 우려되는 경우나, 반대로 경쟁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존재할 경우 공공의 개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금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하여 공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하는 내용적인 측면과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하는 양적인 충족성일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수준의 가격과 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노후설계서비스가 공공재라면 시장에서 적정량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노후설계서비스의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못하며(이소정 외, 2009;정경희 외, 2010),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후설계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비용부담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후설계서비스를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과 개인이 비용부담을 나누어 지급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비용부담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서비스가 민간재에서 공공재로 전환되어 온 것처럼 단계적으로 서비스의 성격을 정의하고 단계에 상응하는 공사역할분담구조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소수만 향유하는 민간재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재로 전환되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즉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즉, 민간재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은 소수가 될 것이며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즉,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은 협의로 하되 서비스 내용은 광의로 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집합재로 설정하고 정부 주도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의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 후, 노후설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즉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은 광의로 설정하고 공공이 보조를 하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성격의 서비스로 노후설계서비스를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공의 개입의 성격과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개입의 성격도 단계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단계적인 공공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공사역할분담 모색

사회서비스로서의 노후설계서비스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간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과 제3섹터, 국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공유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모색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이다. 즉,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중 어떤 방법이 서비스의 질에 대비하여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서비스 전달비용의 극소화가 아니라 노후설계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혜택과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 효율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노후설계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노후설계서비스제공체계는 더 나은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하는데 어떠한 공사역할분담체계를 가져갈 경우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선택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성과 관련해서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대상이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제3섹터, 공공의 공급자 중 누구를 서비스 공급의 장으로 끌어들이어 경쟁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계층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구매가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를 의미하며, 지리적 여건이나 낮은 정보접근성으로 인하여 욕구는 있으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절히 구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시장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설계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 시장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공급자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하다. 현재는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잠재적인 상태이나 이러한 욕구가 구체화되어 구매로 이어질 경우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노후설계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불확실성이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높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후설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그러한 노후설계서비스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계층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인가가 불확실하며,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효용이 즉각적이지 않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볼 때 노후설계서비스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또는 공공의 역할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공급자가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사회의 평등가치를 더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구성원이 노후설계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고르게 갖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와 그러한 접근성에 있어 비형평성이 있는가를 검

토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공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효율적인가 아니면 수요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에서 제공할 경우 서비스 공급이 과소공급되거나 과잉공급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

## 제2절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모색함에 있어 토대가 될 수 있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구체적인 전달체계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가 대상자·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조직적 연결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의 쟁점과 문제점을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및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협력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 전달체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집행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공공보건은 보건소를 지방 직속기관으로 두어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한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집행은 지자체에 위임해 왔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는 2006년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군구 읍면동 기구의 재구조화는 공공전달체계의 전국적인 변화를 시도한 첫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개편작업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자원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조사(자산조사, 생활실태조사, 서비스 욕구파악)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원연계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읍면

동에서는 직접 주민을 대면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의 접수, 상담, 서비스 연계제공, 대상자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7).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은 협의의 사회복지 를 넘어서는 통합적 공공서비스 중심의 지방행정 기능재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급격하게 확대된 복지재정, 사회정책분야 업무 확대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없었고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설계 및 준비가 미흡하였고 신규 인력을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부담의 감소, 사후관리·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개편의 기대효과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지만(강혜규, 2008), 그중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은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상자별, 서비스간 공공민간서비스기간간의 연계제공이 미진하다. 둘째,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가 부재하다. 이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실제적인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과 수행체계가 부재하다. 서비스의 다양화 및 욕구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 사업 기획은 필요성은 높아가지만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조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조사·행정중심의 지방행정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진행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복지수요 및 공급관리에 기반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기획·관리가 필요하며, 사후관리·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주민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쉽고 편리한 접근성과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욕구에 맞는 급여·서비스 제공 및 체계인 사후관리로 문제예방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접근(any-stop services)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협력 서비스의 공식화 및 민간 자원 연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파견, 정보공유 및 교육, 공동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민간서비스 기관, 유관공공기관과의 다양한 협력방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공공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떠한 속도로 진행 되는가에 조응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 전달체계의 개선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설계서비스는 개인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와 공공과 민간, 민간 시설들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누락 또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장기적·종합적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세분화·전문화됨으로써 시설 유형간의 업무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류명석, 2008). 따라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공공부문과의 연계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시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은 정부실패 또는 민간 비영리부문의 실패로 인해 제기되어왔다. 민간시설과 공공부문간의 협력 체계구축의 모형은 크게 세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종속적 대행자 모형으로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기관이 단순히 정부가 배정한 클라이언트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동반자 모형으로 민간은 독자적으로 재원으로 조달하고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고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한 것이며, 셋째는 뉴-거버넌스 모형으로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네트워크를 하나의 통치 구조로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조직간의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합의된 규칙에 의한 규제 등을 특성으로 하는 모형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발견되는 종속적 대행자 모형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에 기반하여 다 자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네트워크 관리방식, 민간의 거점조직 등을 통해 다원화된 시스템 체계(complex system)을 수용해가야 할 것이다.

## 2. 민관협력체계 구성 사례

장기적·종합적 계획없이 서비스 기반이 확대되어온 우리의 경우 민간협력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협력체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활사업<sup>2)</sup>

자활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어 다른 사업과 큰 차이를 가진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고는 있지만 모든 사업의 기획에 고용노동부도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단위에서 자활기관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사업의 총괄관리·지방정부 차원의 사업 총괄시행이라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읍면동에서는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조건부수급자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상응하는 자활사업 지원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다. 재단법인인 중앙자활센터(2008년 8월 개소)에서는 자활지원제도 관련 대상자·사업실적 등에 대한 중앙단위의 정보 집적·관리·분석 및 자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현재 6개소)에서는 단편적·부분적인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 공동추진과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자활센터(현재 242개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확대되고 있다.

2)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www.cssf.or.kr](http://www.cssf.or.kr)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구분	기능·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 2월)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증지여부 결정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고용지원센터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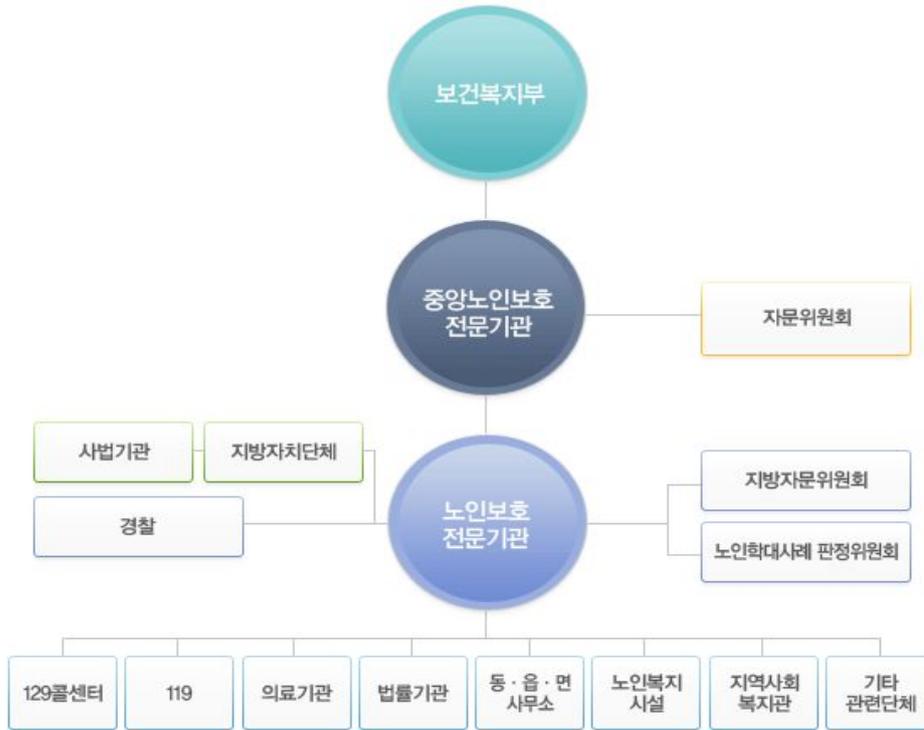
[그림 2-2]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나. 노인보호전문기관<sup>3)</sup>

노인학대 등 노인권의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의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중앙노인보호기관과 현장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며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noinboho.or.kr](http://www.noinboho.or.kr)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수행하고 있는 23개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 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의 중요성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그림 2-3]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달체계

#### 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sup>4)</su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설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시작하여 2010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지불·정산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운용과정과 정책의 성과 모니터링,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업 및 일자리 발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있다. 앞서 살펴본 중앙자활센터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중앙자활센터와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업의 방향성 제시 등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행정적인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민간기관 또한 관리 대상으로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이는 중앙자활센터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우처 제도<sup>5)</sup>의 설계는 제도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 공급자들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구매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시되는 시장적 관점으로부터 도입·활용되었기 때문에(김진, 2007),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에 기초해볼 때 노후설계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기획과 관련한 정보 집적·관리·분석 및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중앙단위의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가칭)가 직접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단위의 노후설계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인가 하는 전달체계상의 ‘단계’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바우처 제도는 첫째,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 현금지급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둘째, 각종 서비스나 재화의 향유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촉진할 수 있고 셋째, 공급자간의 유효 경쟁을 유도하며 서비스 가격 인하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넷째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의 생산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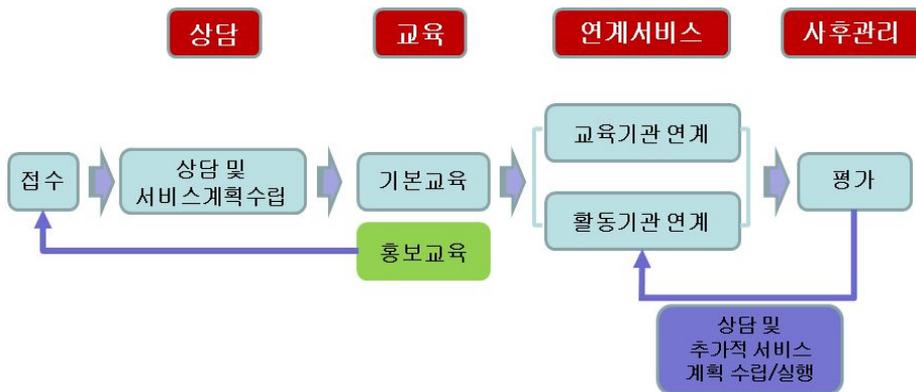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 제3장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 제1 절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내용

노후설계지원서비스는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3-1 참고). 상담서비스는 접수된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이를 통해 향후 노후설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를 위한 초기단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상담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사후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으로만 종결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내 노후설계 유관기관(교육 및 활동기관)들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담서비스가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매뉴얼(혹은 모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해서는 전산화 과정을 통해 상담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구성요성 및 내용 모형도

교육서비스는 크게 ‘기본교육’과 ‘홍보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은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연계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교육의 형태로 노후설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노후설계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개인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노후설계의 사안들을 판단하여 적절한 교육 및 활동 기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계대상 기관으로는 노후재무설계, 노후경력관리설계, 노후건강설계, 노후여가설계, 노후생활설계 등 5개의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연계기관과 체험 및 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연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홍보교육은 접수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대중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홍보교육을 통해 수동적으로 접수된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후설계지원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설계사(가칭)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절한 교육강사를 섭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교육기관 및 활동기관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의 발굴 및 개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대한 DB 구축, 유관기관과의 의뢰체계(referral system) 구축,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련된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연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주요 업무로는 서비스 제공기관(교육 및 활동기관)에 대한 평가,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서비스 제공기관 프로그램 및 연계서비스 과정상의 평가), 초기 서비스 계획 달성 여부 평가, 추가적인 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행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제2절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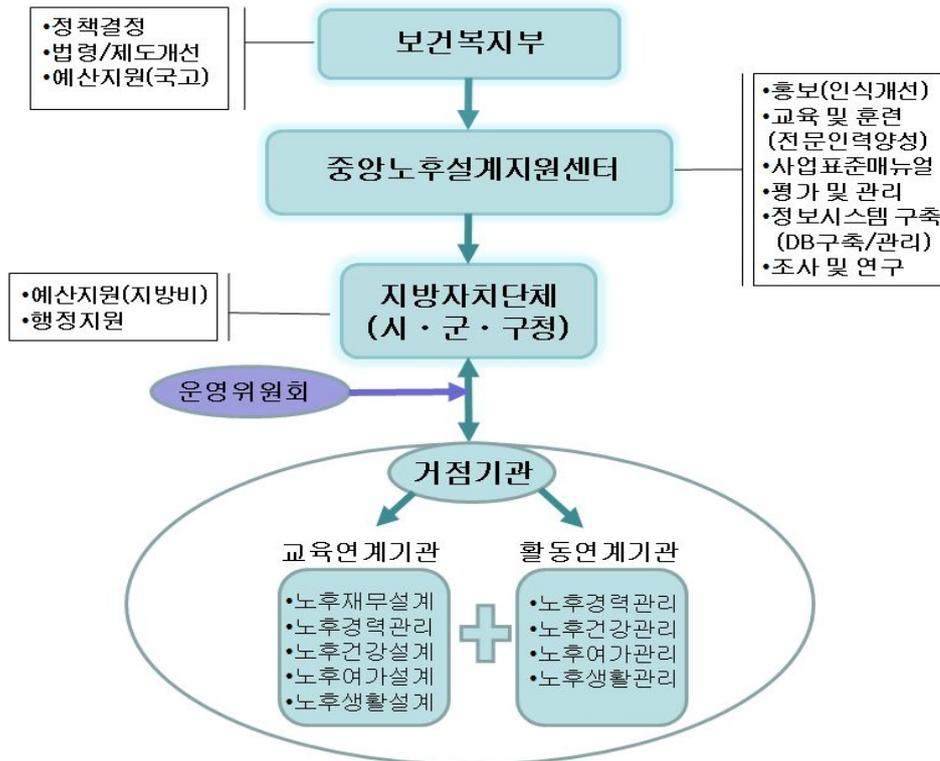
노후설계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앙정부 산하의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인증제도 및 자격증 제도를 근거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 1. 노후설계지원사업 중앙센터 (가칭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 방안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센터(가칭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관리 혹은 운영하는 수행체계이다(그림 3-2참고). 이와 같은 수행체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지원(국고) 등이며,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노후설계지원사업 표준 매뉴얼 구축, 지역별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DB 구축 및 전산화 시스템 운영),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방비) 지원, 홍보 및 연계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수행체계 방안 중 하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에서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노후설계지원사업 유관기관들의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이들과의 의뢰체계(referral system)을 구축하는 등 지역자원의 개발 및 연계 구축을 지원하며,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강사의 섭외, 홍보사업 등에 협력한다.



[그림 3-2]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수행체계 모형

## 2.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에서의 거점기관

거점기관은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상담, 교육,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내 유관기관들의 특징을 접근성, 전문성(기능적 측면), 기관의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거점기관 대상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제시되었으며, 개별 기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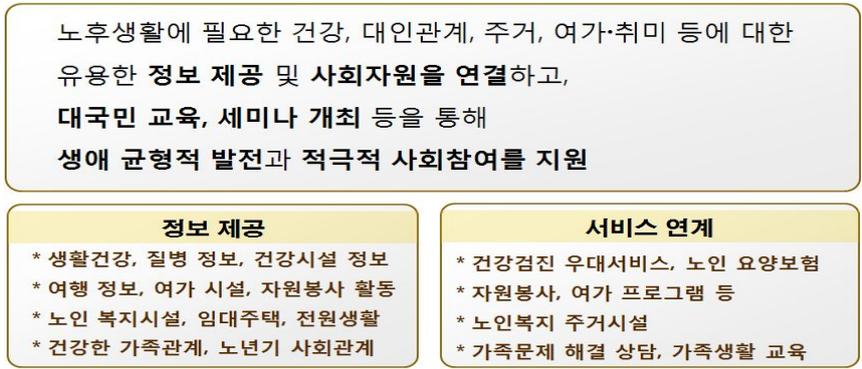
〈표 3-1〉 거점기관 선정을 위한 지역유관기관 장·단점 비교

유관기관	장점	단점	평가
국민연금공단	·접근성 용이(지역 접수창구) ·대상의 적절성(4,50대)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공단의 높은 관심 ·CSA 양성프로그램 보유 ·재무영역 강점 ·대국민 홍보(전국적인 홍보가능)	·사후관리 서비스 미흡 ·비재무영역 서비스 미흡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객관성 유지 어려움(공적연금 중심의 재무설계) ·공단내 전문인력양성 주력 가능성	○
노인인력 개발원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보유 ·일자리 연계서비스 강점	·전국적으로 인프라 부족(접근성 미흡)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사후관리 서비스 무경험	○
사회복지관	·지역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중장년층 대상 사업 경험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인식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
노인복지관	·지역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중장년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없음 ·중장년층의 인지적 접근성 낮음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
건강가정지원 센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보유 ·기존 전문가(건강가정사) 활용	·다양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 미흡(가족자원중심 사업 수행) ·상대적으로 접근성 미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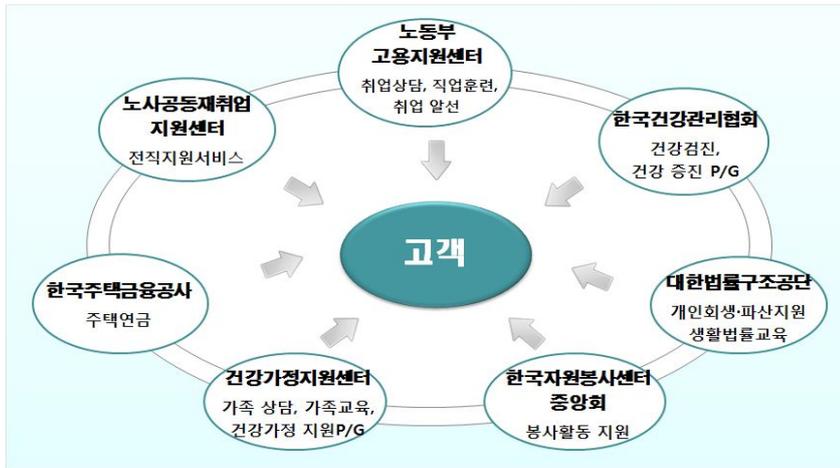
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역 내 접수창구를 활용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연금수령대상자인 중년층과 예비노인층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노후설계지원사업에서 대상의 적절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자체에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미 부분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양성프로그램(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CSA)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후의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노후설계의 재무적 영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점기관들에 비해 강점으로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개

요와 사회자원의 연계 현황은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 MOU체결을 통한 사회자원 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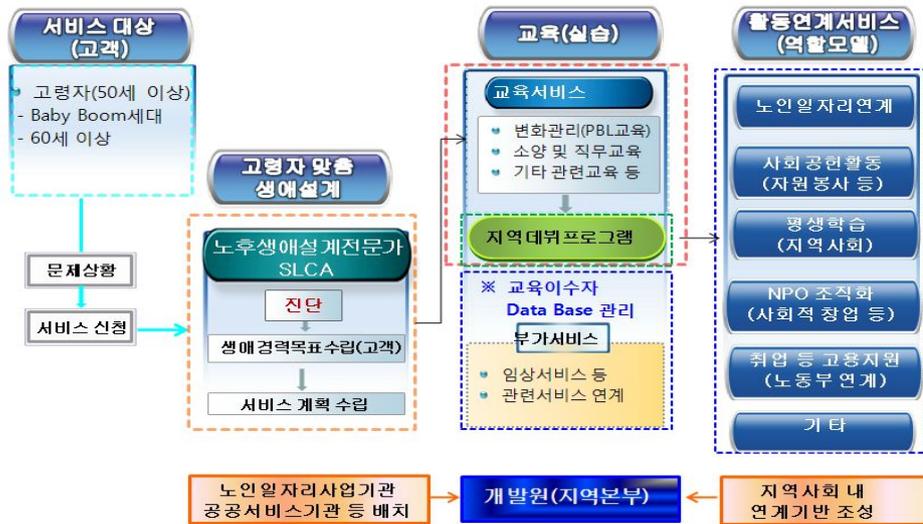
[그림 3-3]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전략 및 사회자원 연계 모형

반면에, 노후설계서비스가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까지 포함된다 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사회 접수창구 직원들을 활용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사후관리 서비스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접수창구의 직원은 공단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노후설계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시간을 요하는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수 있다. 또한 재무영역이 공단의 강점이지만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재무설계를 기획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비재무

적인 영역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관기관들에 비해 미흡하다. 비록 건강가정 지원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상공동재취업지원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서의 다양한 기관이나 협회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는 있지만, 공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을 양성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국민연금공단의 CSA과정과 같이 노후생애설계전문가(SLCA) 과정을 운영하면서 노후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개발원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일자리 연계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후설계지원사업과 유사한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그림 3-4 참고).



[그림 3-4]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체계

하지만, 공단이나 지역사회 복지관에 비해 전국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성이 미흡하다. 또한, 수행체계로는 사후관리서비스까지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 다.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해 각 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5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42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분포되어 있다.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성은 기존의 고유업무에 부합된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인 4, 50대의 인지적인 접근성에도 그다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개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및 가족단위의 사례관리 업무는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업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사를 노후설계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충원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회복지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협된 인식으로 인해 중산층의 지역주민이 사회복지관에서 노후설계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복지관의 수나 복지관의 운영수준 등에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후설계지원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수행할 경우 지역적 편차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 36에 의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은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노후의 취미여가 활동, 다양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요보호 대상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신체적 보호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상담은 물론 노인가족상담, 치매상담, 법률 및 재무상담 등 전문상담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237개의 노인복지관이 분포되어 있다.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및 사후관리의 전문성 등이 강점인 동시에 노인 복지서비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주요대상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행 경험이 거의 없으며, 지역사회 내 중장년층들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지와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의 수나 지역별 복지관 사업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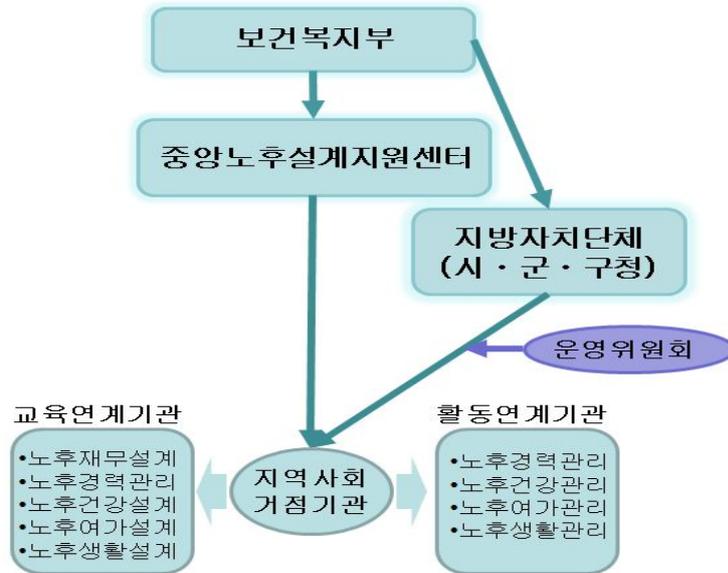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계획을 구상하고, 정책개발, 연구, 교육,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및 관리, 인력수급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제공, 전국적인 건강가정문화운동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사업,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와 전국적으로 82개의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 은 38개소,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는 곳은 44개소이다.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노후설계영역으로 쉽게 전환하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문가(건강가정사)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 내 분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된 고유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거점기관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장단점들을 살펴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가장 유력한 거점기관으로 판단되며, 이 중에서도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 3. 거점기관 중심안 (수행체계 제 1안)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위한 수행체계 첫 번째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에서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3-5] 수행체계 1안 - 지역사회 거점기관 중심으로 운영

운영위원회는 거점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간 혹은 지역간 편차를 극복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거점기관이 선정될 경우, 기존의 사업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예, 인력보충 및 사업비 지원 등)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가. 장점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로, 시군구 차원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둘째로, 종합사회복지관(혹은 노인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보건복지

부에서 통제·관리하기 수월하다.

셋째로, 종합사회복지관(혹은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인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사후관리 서비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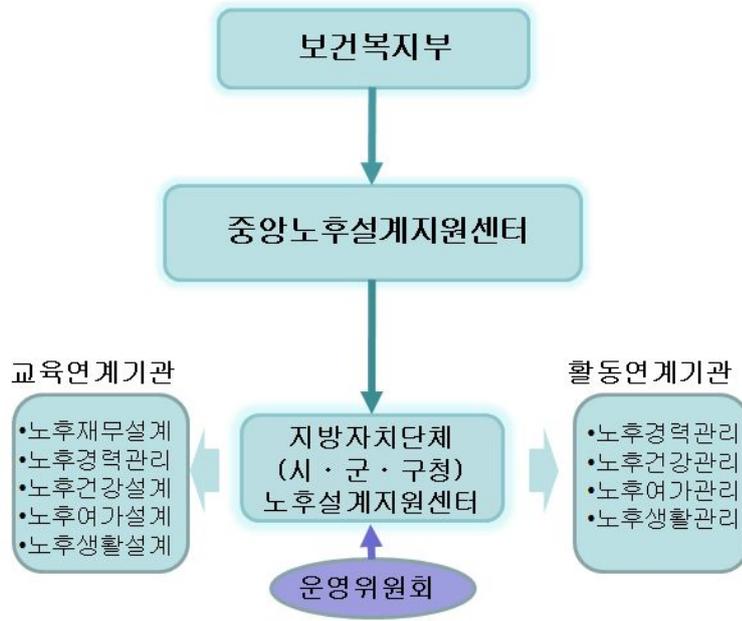
#### 나. 단점

첫째,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관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향상되기 어렵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 4. 지방자치단체 중심안 (수행체계 제 2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즉, 시군구청 내에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시청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정연계팀장이 무한돌봄센터장을 맡고, 행정직원과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설계지원센터도 시군구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행정직원과 노후설계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을 배치하여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림 3-6] 수행체계 2안 -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

#### 가. 장점

첫째, 시군구 청사 내 노후설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지리적, 인 지적인 접근성이 높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넷째,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시군구 차원에서 전개하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성이 크다.

#### 나.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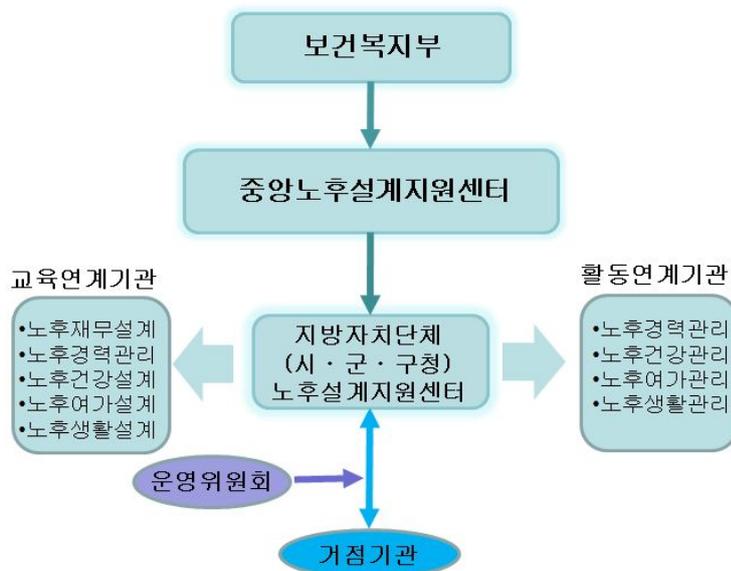
첫째, 센터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순환보직으 로 인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과정에서 기존의 노하우가 없다.

셋째,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지역 활성화 정도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5.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 (수행체계 3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한다. 수행체계 제 1안과 제 2안에 대한 보완적인 수행체계로써 선정된 거점기관의 전문인력이 지자체내 노후설계지원센터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에서 조정연계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행정팀과 더불어 노후설계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이 거점기관의 인력으로 충원한다. 거점기관내에서도 노후설계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중간관리자(과장 혹은 부장)가 지자체에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관리한다. 이러한 수행체계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수행체계와 유사하다.



[그림 3-7] 수행체계 3안 - 거점기관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가.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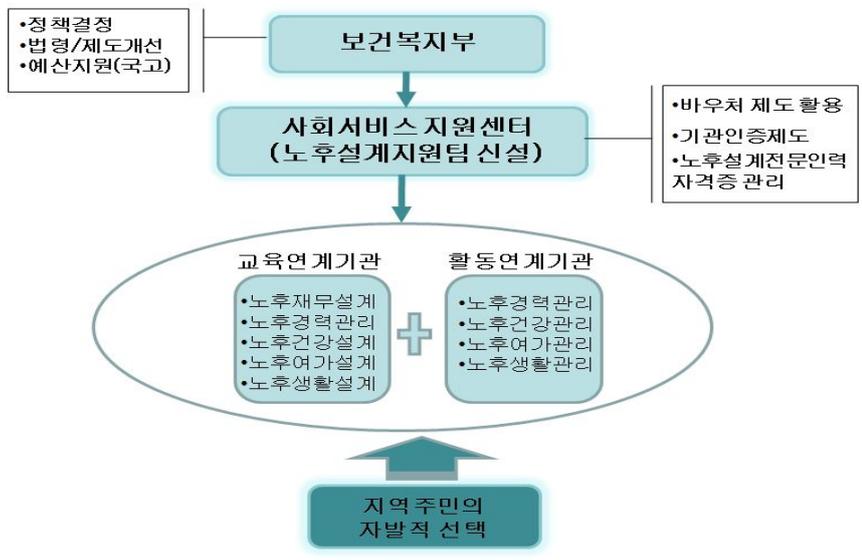
제 1안의 장점(지역자원 연계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점기관을 통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과 제 2안의 장점(지자체의 공신력을 통한 연계사업 및 홍보사업의 활성화)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수행체계이다.

나. 단점

지자체의 노후설계지원센터와 거점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 또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거점기관의 위상이 애매하며 자칫 지자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와 거점기관과의 관리와 책임소재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6. 사회서비스 관리원 활용안 (수행체계 4안)

기존의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노후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설계와 관련된 교육 및 활동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노후설계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행체계이다.



[그림 3-8] 수행체계 4안 -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활용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영역의 교육 및 활동기관에 대한 기관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초기에 노후설계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설계 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노후설계 전문가의 인력수급관리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체계는 지역사회 내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지원센터의 기능은 없으나 민간영역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노후설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가. 장점

첫째, 민간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되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셋째, 노후설계에 대한 개인적 역량과 민간영역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넷째, 클라이언트는 질 높은 노후설계서비스를 무료 혹은 실비의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나. 단점

첫째,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노후설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가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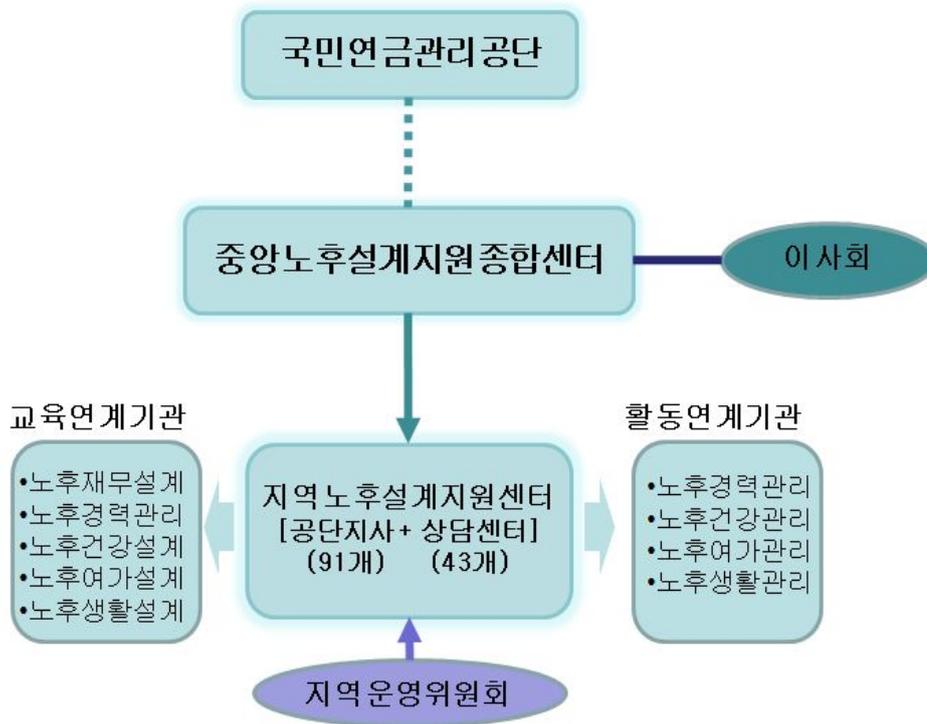
둘째, 소비자와 제공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이 배제됨으로써 개인별로 정보습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사후관리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노후설계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도에 포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고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용안 (수행체계 5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사와 상담센터를 활용하되 본연의 연금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과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조직으로 ‘(가칭)중앙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단지사와 상담센터를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로 활용하는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3-9] 수행체계 5안 -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 모형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지원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공단지사와 상담센터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가. 수행체계 구성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

### 1) 중앙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노후설계지원사업의 기획과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중앙노후설계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연금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노후설계지원사업 표준 매뉴얼(혹은 모듈)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DB구축 및 관리) 및 노후설계종합포털 구축 운영, 노후설계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노후설계서비스 대상 기관의 중앙기관과의 연계(MOU 체결),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 예산 지원,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분야(학계, 정부, 법률, 복지, 민간영역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여 공단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설계지원사업이 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업무와 구분하여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의 역할

노후설계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 일선에서 일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는 상담, 교육(기본교육 및 홍보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

노후설계지원사업의 본연의 기능으로 제시되었던 사후관리 서비스는 공단의 인력 충원의 부담감과 전문성 확보 등으로 인해 당장은 실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가 지역사회 기관들의 연계서비스에서는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9] 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들이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서비스와 향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이 지역기반이 탄탄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예, 지역사회복지관)과의 강한 파트너십 혹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

지역자원연계와 관련하여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후설계지원사업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역운영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과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향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나. 장점

첫째,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1년 중반까지 전국의 91개 공단지사와 49개의 상담센터를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전국적인 조직망(지사와 상담센터)을 활용하는 수행체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노후설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기존에 수행해 왔던 사업(상담, 교육, 연계, 온라인 서비스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의 기존 조직편제에 노후설계지원부서가 있으며, 노후설계 사업기획 및 총괄지원을 담당할 중앙조직(가칭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을 2011년 1월에 신설하였다.

#### 다. 단점

첫째, 국민연금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노후설계지원사업이 수행될 경우, 노후설계의 내용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과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지원사업이 공단의 연금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중립적인 사업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이를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는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혹은 노인복지관)에 비해 지역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수행체계 모형도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을 공식적인 수행체계인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설계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로 상담, 교육,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공단지사와 상담센터를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로 할 경우, 사후관리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이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 서비스는 초기단계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거나(예, 특수직 연금가입자) 국민연금 대상자이지만

연금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 등 국민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 맞춤형 혹은 세분화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전략이 필요하다.



# 04

##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 제4장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이제까지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노후설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까지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들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종교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일반인들에게 직접 노후설계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영역별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노후설계서비스를 보다 더 통합적이고 생애 과정적 맥락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고자 한다.

### 제1절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

노후설계서비스란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은 노후설계와 관련된 건강, 재무,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설계와 관련된 유관 전문 인력들은 노후설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

해와 생애 과정에 따른 노후 삶을 포괄적으로 인지하는 전문 인력이기 보다는 대부분 재무, 대인관계, 혹은 건강 등 특정 한 분야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노후설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각 특정 영역별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다양한 영역들에서 통합적으로 노후생애 서비스 지식을 습득했던 전문 인력들은 비교적 짧은 교육 시간을 통해 여러 영역들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 만큼, 노후설계 관련 각 영역별로 심도 깊은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각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영역별 전문 인력들에 관한 사전 고찰을 통하여 이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보다 차별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러한 각 영역별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역할과 기능도 요구되는 바, 먼저 각 영역별 전문 인력들의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국가와 민간 자격 및 유관 현장에서 인증하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을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역할 가운데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별로 전문 인력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국가자격(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 외국자격 기준 및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주요 기관들이 인증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 주요 영역별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영역들 간의 전문 자격을 구분하는데, 역할의 전문성이 상호간 중복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표 4-1> .

〈표 4-1〉 자격 특성 및 영역별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기존 전문 인력

영역 자격	재무 및 일자리	신체 및 정신 건강	대인	여가	통합
국가자격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자	
민간자격 (국가공인 및 등록민간자격)	자산관리사(AFPK)	생활건강지도사	가족상담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외국자격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기관인증		노인건강관리사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건강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노인상담사	가족치료사 가족상담사		노후생애설계전문가 (SLCA) 노후설계컨설턴트 (CSA) 노인교육사 노인교육지도사 시니어플래너 실버플래너 골드에이지 플래너 노후설계전문가

### 1. 재무 및 일자리 관련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기존 전문 인력 역할과 기능

재무 및 일자리 영역과 관련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존 전문 인력으로는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산관리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전문 인력들은 일자리, 자산관리와 같이 특정 경제적 측면에서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이러한 전문 인력들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애과정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부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 상담을 제공한다.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그에 관한 정확성을 검토 수정하기도 한다.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아 주며 적성,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즉, 직업상담사의 수행직무는 구인·구직·취업알선상담·진학상담·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 상담, 노동시장·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를 실시하며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Q-Net, 20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양성되는 전문인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한다. 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며,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또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고령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10).

자산관리사(AFPK)는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성공적으로 인생 재무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해주는 개인재무설계사로서 투자설계,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부동산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세금설계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관련 영업부서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

여 고객이 원하는 생애설계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자격 금융전문가를 의미한다. 즉, 자산관리사는 국내 금융기관 관련 영업부서에서 고객의 재무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종합적인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실무처리를 담당한다(한국FPSB, 2010).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사(AFPK) 자격이 우선이어야 한다. 고객이익의 최대한 보호라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재무설계에 관한 고객 상담과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며, 고객들이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재무적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관리와 재무설계를 실시한다. 또한 고객의 재무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은퇴이후의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기에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법을 도와주며, 재무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필요한 세금관리, 상속설계를 도모한다. 즉, 고객의 재무목표 및 니즈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객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소비지출 방식 및 자산운용방식을 포함하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고객의 동의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별하여 계획을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FPSB, 2010).

이러한 직업상담사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 또는 구직자의 직업 관련 업무의 향상 및 촉진을 도모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이들은 최근 중, 노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된 노후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요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사(AFPK)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종합 재무설계에서 최근 은퇴설계에 관한 비중을 점차 크게 설정함으로써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장기간 재무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무 및 일자리 관련 유관 전문 인력들의 노후설계 서비스에 관한 역할과 기능은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

## 2. 건강 관련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 역할과 기능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영역과 관련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존 전문 인력으로는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생활건강지도사, 노인건강관리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노인상담사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전문 인력들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의 예방과 처치 및 관리와 같이 신체, 정신 건강 측면에서의 일반 및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 건강과 주로 관련된 전문 인력 가운데, 보건교육사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과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및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 교육 및 지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2010). 이러한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점차 전생애 과정에 걸친 건강 관리 지도에 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영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을 지원하는 일상생활동작(ADL)지원과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및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를 지원한다. 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노인복지법, 2010).

생활건강지도사는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 의한 등록민간자격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운동지도, 스트레칭, 근육 및 인파 마사지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병원, 학교, 학원, 복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Q-Net, 2010).

노인건강관리사는 대한노인회 소속의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서 노인운동, 체조, 요가, 노래 등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대한노인회, 2010).

다음으로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 부분에서, 치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지니는 임상심리 영역의 전문 인력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의 역할과 기능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Q-Net, 2010), 보건복지부 주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와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즉,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가운데 일반 정신건강 보다는 노인의 정신장애, 치매에 관한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여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특화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정신보건법, 2010). 그리고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배출하는 임상심리전문가는 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임상심리학회, 2010). 이렇듯 임상심리 영역의 전문 인력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정신적 질환을 보다 더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츰 이러한 영역에서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일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에서 보다 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는 발달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 노인상담사 등이 있다. 먼저 발달심리전문가 또는 발달심리사는 한국발달심리학회에서 양성하는 전문 인력으로,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발달심리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발달심리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은 성인, 노인보다는 영유아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보다 더 담당하고 있다(한국발달심리학회, 2010).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상담심리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배출하는 전문 인력으

로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를 하며,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하고, 지역 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며,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과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0).

건강심리전문가 또는 건강심리사는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인증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스트레스 관리, 통증관리, 건강관리, 행동의학 등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이다(한국건강심리학회, 2010).

노인상담사는 전국 경로당 및 노인관련단체 등에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침해되어 있는 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수행하며, 경로당, 노인대학 및 노인관련단체에서 활동한다(대한노인회, 2010).

이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전문 인력들은 대부분 특정 연령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관심이 대두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 3. 대인 관련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 역할과 기능

대인 관계 영역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존 전문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가족치료사 등이 있다. 기존 전문 인력들은 가족관계 및 친구, 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 습득과 적용을 통해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 업무량 관리와 자기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모금, 기관들 사이에 협조하고 연계하는 업무, 지역사회와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조력자, 중재자, 통합자/조정자, 관리자, 교육자, 분석가/평가자, 중개자, 촉진자, 협상가, 용

호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공적사회복지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기구 등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에서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 및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보건의료영역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고,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며, 군사회복지사는 군대 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구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산업사회복지사는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즉,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병원이나 진료소, 보건의료 영역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건강가정사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제공하는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

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의미한다. 건강가정사의 역할 기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조직체계를 유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센터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기획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리더쉽, 시설관리, 마케팅 등 경영의 하위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둘째,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넷째,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다섯째,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여섯째,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일곱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여덟째,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가족상담사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인증하는 유사한 자격과정이 있으며, 먼저 한국가족상담협회에서 배출하는 가족상담사는 등록 민간자격으로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현장에서의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첫째, 가족상담사 수련감독은 가족상담의 최고 전문가이며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족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담당하며, 가족 상담현장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을 하고,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에 대한 교육 및 사례지도하며, 수련중인 가족상담사(1급, 2급)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을 추천하고,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가족상담기관을 운영한다. 둘째, 가족상담사 1급은 가족 상담의 전문가이며 독자적 가족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담당하며, 가족상담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을 하고, 해당 전문영역에서 가족상담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며, 가족상담에 대한 연구와 가족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 셋째, 가족상담사 2급은 가족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

족상담사(수련감독, 1급)의 지도하에 가족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하며,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 상담을 통한 지도를 하고, 가족 상담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넷째, 가족상담사 3급은 가족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사의 지도 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하며,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를 담당하고, 상담 행정 업무를 한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0).

또한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양성하는 가족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첫째, 가족상담사 2급 전문인력은 전화상담 또는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상 위급 상담자의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가족상담사 1급 전문인력은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셋째, 가족상담 수퍼바이저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사를 상위급의 가족상담사로 추천한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10).

그리고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배출하는 가족치료사는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 조손가족, 미혼부모가족, 단독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부부갈등, 이혼문제, 중독문제 등 개인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다. 첫째, 가족치료사 II급 전문인력은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가족치료를 통한 지도를 하고, 가족치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가족치료사 I급 전문인력은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하며,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상담 및 가족치료를 하고, 동시에 가족치료사 II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하며, 가족치료사 II급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가족치료 및 상담에 대한 연구

를 하며, 가족치료 상담실 운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가족치료 슈퍼바이저는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를 전달하며, 자신의 주모델의 철학적, 실용적 시사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고, 치료자 - 내담자, 슈퍼바이저-치료자-내담자 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하며, 위의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하고, 다양한 슈퍼비전 상황(예; 현장 또는 비디오를 통한 지도감독)에서 슈퍼비전을 구조화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하며,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상 생기는 쟁점을 제기하고, 지도감독에 있어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한국가족치료학회, 2010).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전문 인력들은 대부분 가족,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문제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이러한 전문 인력들은 생애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부부, 자녀 및 여러 대인관계의 변화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접근을 보다 더 시도하고 있다.

#### 4. 여가 관련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 역할과 기능

여가 영역과 관련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존 전문 인력으로는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전문 인력들은 다양한 여가 관련 활동 등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평생교육사는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인력개발 관련 등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을 하며,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와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및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평생학습의 자원을 조사 분석하며,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는 네트워킹과 학습자 및 강사의 관리와 지원 및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을 운영 지원하며, 평생학습의 참여를 촉진하는 변화촉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평생학습의 성과지표를 창출하며 평가를 보고하고, 평생학습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및 계획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학습, 상담컨설팅의 직무를 수행한다(평생교육법, 2010 ; 평생교육진흥원, 2010).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이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건전한 국민의 생활 체육 확대를 도모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과학적 운동처방과 지도,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의무배치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에 배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며,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운동을 처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당구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한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사로서 운동지도를 주로 담당하는데, 보디빌딩, 태권도, 수영, 에어로빅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사가 가장 많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을 지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민체육진흥법,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레크리에이션지도사는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 의한 등록민간자격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회, 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재활병원 등에서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전문적 직무를 담당한다(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2010). 이 외에도 한국레크리에이션연합

회, 한국대학레크리에이션협회 등 여러 민간기관들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레크리에이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과거보다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여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여가를 학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다양한 여가에 대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여가에 대한 생애 과정적 설계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 통합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전문 인력 역할과 기능

노후설계서비스란 다양한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노후설계서비스 유관 영역의 전문 인력들은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인력이기 보다는, 재무, 건강, 대인, 여가 등 각 고유 영역에서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그 영역마다의 전문성을 보다 생애 과정에 걸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며, 동시에 일부 영역의 경우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영역의 업무와 복합적으로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자격 기준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최근 생애과정적 관점과 통합적인 맥락에서 여러 영역에 걸친 노후생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영역에 걸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후생애설계전문가(Senior Life Career Advisor)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기관 등 시설중심, 지자체, 시니어 클럽 등 지역중심, 직업상담관련, 민간복지시설 등 관련비즈니스, 기업 등의 현장에서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자기개발 촉진, 생애설계 지원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즉, 노후맞춤형 경력개발, 재무상태, 여가상태, 지역사회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맞춤형 통합 노후생애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이러한 노후생애설계전문가는 입문과정, 전문과정, Master과정으로 구분된

다. 이들의 업무는 노후생애설계상담업무, 노후생애설계관련 교육업무, 노후생애설계 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업무, 노후생애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노후생애설계 상담 행정업무 등이다. 즉, 노후생애설계전문가는 생애경력에 관한 기본역량을 바탕으로 노년을 이해하고 노후생애설계 각 영역별 기초역량을 강화하여 인생에 있어서의 직업, 일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장래 생활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상의 역할의 균형을 고려한 삶의 방식을 고려하는 카운슬링을 한다. 또한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와 조직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라이프 스테이지, 커리어 스테이지 별로 자신을 돌아보고 유연히 변경하여 생애에 걸쳐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노후생애설계전문가는 라이프커리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라이프커리어 디자인, 커리어플랜, 커리어개발 등에 관한 지원, 일(역할)선택 및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선택과 의사결정의 조언, 경력 목표 달성의 전략 책정, 라이프커리어에 관한 정보제공, 개인의 발달과제 지원, 동기부여, 자존감 유지를 위한 지원, 커리어불안, 정서적 갈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돕는다. 즉, 노후생애설계전문가는 내담자의 의식개혁과 자기 실현을 서포트하는 환경의 개발 역할, 본인만의 서포트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 동료, 기타 장애요인을 개발하며, 본인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서포트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하는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첫째, 원조자의 역할을 하며 생애경력개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둘째 매개자로서 네트워킹과 기관을 소개 하며, 셋째, 촉진자로서 성공적 노후의 필요성을 강조, 촉진, 동기를 부여한다. 넷째, 조언자로서 생애경력진단 및 상담, 라이프커리어 디자인 및 기타 지원을 하며, 다섯째, 실천지도자로서 실천기술의 지도 및 능력개발지원을 하게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다음으로 노후설계컨설턴트(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으로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노후생활 6대 영역인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을 담당한다. 즉, 노후설계컨설턴트는 전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성인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발달에 따른 노년준비를 도와주며, 동시에 통합론적인 관점에서 노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들에서의 성공적 노후의 달성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컨설턴트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노후설계컨설턴트 2급은 노년학, 상담학, 노인심리, 자산관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이 노후설계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후설계컨설턴트 1급은 노후설계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및 상담 및 업무처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보다 심화된 지식습득과 실천적 기술 습득 및 현장적용 능력을 배양하여 실천하며, 정보제공과 사회자원 연결을 강조한다. 즉, 상담심리, 재무설계, 생활설계,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보다 심화된 기초지식을 지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내외자원 동원능력을 보다 더 활용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고객감동 대인관계기술을 더 갖추며, 내외고객을 선도하고, 상황별 유연한 적응력을 지닌 전문인력으로 기능한다. 즉, 고객의 심리파악과 대응, 재무 컨설팅, 건강, 여가, 자원봉사 컨설팅 및 더 나아가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개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에 노후설계컨설턴트 1급 전문가의 핵심 역량은 고객의 심리파악과 대응, 재무, 건강, 여가, 자원봉사에 관한 컨설팅,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활용, 지역별 맞춤 서비스 개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해당된다(서울사이버대학교, 2008; 서울사이버대학교 2009).

노인교육사는 한국고령사회교육원에서 배출하는 전문 인력으로 노인 교육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또한 1-3세대 통합 가정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행복을 만들도록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로당, 노인대학 및 노인관련단체에서 노인교육사로서 활동가능하다. 이들은 노년기 생활설계에 관한 강의 수강을 통해 노년기 생활설계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한국고령사회교육원, 2010).

또한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양성하는 노인교육지도사는 노년학, 성인학습 및 상담, 노인복지, 평생교육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교육 시설, 단체에서 노인교육을 계획하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2010).

이외에도 최근 대학, 기업 등 여러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원 주관하고 호서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양성되는 시니어플래너,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배출하는 실버플래너, 대한생명에서 은퇴 이후 인생의 황금기에 필요한 건강, 시간, 재정, 사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재무설계사들에게 은퇴설계 컨설팅을 제공하여 양성하는 골드에이지 플래너, Metlife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노후설계전문가 등 최근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여러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전문 인력들은 일정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의해 단기적으로 배출되는 형태로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이러한 각 특화된 영역별 전문 인력들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또한 기존의 통합적인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들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여 생애과정에 따라 사전에 노후설계 준비가 가능하도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성 및 노후설계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 인력의 보편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역할이 본 장에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수행체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 1.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의 필요성 및 정의

이제까지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들은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특

수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각 영역별 전문적 노후설계서비스 간의 연계 및 통합적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통합적인 맥락에서 여러 영역들에 걸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는 전문 인력이 일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양성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기관의 요구에 초점을 두는 특성화된 전문 인력 양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생애과정적 접근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포괄하는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표준화된 양성과정 및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은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교육, 연계 및 사후관리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조직운영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노후설계서비스 전문 인력이란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는 허브가 되는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과정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노후설계서비스 차원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과 교육 및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 2. 노후설계서비스 목적과 방향성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노후설계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성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여 생애과정에 따라 사전에 준비하는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노후설계사는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전생애과정에 걸친 노후설계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한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노후설계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한다.

### 3. 노후설계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을 2장에서 제시한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로 구성된 노후설계서비스 내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상담자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생애과정에 따른 재무, 건강, 여가 및 다양한 요구 관련 노후설계를 상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의 기능은 첫째, 생애단계에 적합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을 실시한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생애발달과정에 따라 각 생애단계에 적합한 노후설계 상담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재무, 건강, 대인관계 및 다양한 생활설계 영역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이 이루어진다. 셋째, 노후설계서비스의 추후과정 즉, 교육, 자원활용 및 연계, 사후관리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 나. 교육자

노후설계서비스 교육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노후설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영역별로 또는 모든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대상에 따라 다르게 모듈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교육자의 기능은 첫째, 생애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노후설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과정적 이해를 클라이언트가 가능하게 한다. 둘째, 노후설계서비스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들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함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노후설계서비스 교육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요구와 차별성을 감안하여 모듈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

#### 다. 연계자

노후설계서비스 연계자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연계자의 기능은 첫째, 중년기, 노년기 등 각 생애단계에 보다 적합한 자원 및 정보를 연계한다. 둘째, 건강, 재무 및 여가 등 개인의 차별화된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개별적인 정보와 자원을 연계한다.

#### 라. 통합자

노후설계서비스 통합자의 역할은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포괄하여 통합할 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노후설계의 연속성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통합자의 기능은 첫째, 여러 영역들 간 그리고 각 영역들 내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생애단계 간, 생애단계 내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 개발자

노후설계서비스 개발자의 역할은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새로운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개발자의 기능은 첫째,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의 자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둘째,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표준화된 그리고 특성화된 매뉴얼과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바. 평가자

노후설계서비스 평가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제공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평가관리체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노후

설계서비스 평가자의 기능은 첫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후설계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되도록 기능한다. 둘째, 클라이언트 개인 및 집단들의 요구 및 사후관리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사. 촉진자

노후설계서비스 촉진자의 역할은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노후설계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 촉진자의 기능은 노후설계가 전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이해가 전제되며, 사전에 노후설계를 미리 준비해야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더 나아가 관련 다양한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후설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것이다.

### 4.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이 각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방안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 및 기능

#####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 거점기관 선정에 따른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수립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가운데 노후설계서비스 거점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 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유관 기관으로는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앞서 논의된 유력한 거점 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이 선정되는 경우, 이 기관 내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확대

된 역할이 요구된다. 물론 유관 기관으로 사회복지관 이외 다른 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도 그 기관 내 전문 인력이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확대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상담과 교육, 연계 및 조정과 사후관리 역할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즉, 본 수행체계 내 거점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된 경우, 이러한 거점 기관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에게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확대 담당하게 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일선 현장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중간실무자와 일선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관리자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주된 역할과 기능: 기존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부가, 확대

- 기존 거점 기관(예: 사회복지관 선정 시)에 찾아온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이에 각각 해당 관련 교육 및 실천적 차원에서 적합한 기관을 연계하여 조정한다.
- 사회복지관 내 노후설계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중간실무자와 일선 직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선정함으로써 상담과 교육, 유관기관 연계, 아웃리치 서비스 개발 및 실시, 유관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에는 관리자급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으로 보다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으로써 표준매뉴얼개발, 포털구축, 지속적인 연계기관 발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한편 사회복지사는 기존의 주된 업무에 부가적 업무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후설계서비스 역할과 기능은 주도적이기 보다는 보다 소극적인 역할과 기능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선정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수립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련 역할과 기능 수행이 용이하다. 이 경우, 독립적인 전문 인력인 노후설계사를 새롭게 배출함으로써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 센터장이 일정 교육을 통해 노후설계와 관련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산하 일선 노후설계사는 노후설계서비스 실태조사 및 대면 상담, 교육, 유관서비스 연계 등 일선 업무를 수행하여, 센터 내 역할과 기능이 중간 관리자와 일선 실무자의 역할로 이원화되며,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내에 배치되는 노후설계사는 관리자급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 주된 역할과 기능: 새로운 노후설계사 전문 인력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독자적인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담당
  - 센터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일정 교육기간을 거친 후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중간 관리자 및 중간 실무자급 노후설계사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내 일선 노후설계사를 감독, 교육하며, 지역사회 내 노후설계서비스를 홍보하며, 특성화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관 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 일선 노후설계사는 센터 내 일선 대면 상담, 교육, 실태조사, 프로그램 집행, 관련 사무 등을 통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역할과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내 관리자급 노후설계사는 보편적인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와 교육, 평가 등을 실행하며,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 내 센터 및 각 센터장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 3)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 선정시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 인원과 파견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수립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되, 동시에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거점기관과의 연계적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 이 경우, 독립적인 전문 인력인 노후설계사를 배출하되 이 노후설계사는 거점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충원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에 파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에서 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거점기관 내에서도 노후설계지원팀이 구성되어 노후설계관련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 주된 역할과 기능: 새로운 노후설계사 전문 인력이 거점기관 내에서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 센터장과 거점기관 내 노후설계 지원팀은 동시에 중간관리자 및 중간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내 파견 노후설계사는 일선 실무자급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강화되는 수행체계이다. 그리고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내 노후설계사는 관리자급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 거점기관 파견 노후설계사는 센터 내 일선 대면 상담, 교육, 연계, 실태조사, 관련 사무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되,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이 강화된다.

#### 나.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활용방안

기존의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내 새로운 노후설계지원팀을 신설하여 이 곳에서 노후설계사의 자격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때 각 공적 기관 및 민간 기관 내 노후설계사가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며, 이들은 서비스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내 노후

설계지원팀은 공공 및 민간 기관 내 노후설계사 배출 및 기관 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운영 및 평가 관련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 주된 역할과 기능: 새로운 노후설계사 전문 인력이 시장 체제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자격 기준 하에 독자적으로 활동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내 노후설계지원팀은 노후설계서비스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실무자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노후설계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활용방안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노후설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설계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 실행에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은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즉, 이전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요 특성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설계를 주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무 이외의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통합적 노후설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주요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노후설계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독립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의 구축이 요구되며 동시에 산하 지역 공단지사 내에도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성된 전문인력인 노후설계컨설턴트(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보완하게 될 것이다. 기관 외부 환경에서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전문인력을 개발할 필요 없이 기존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은 비교적 생애과정적 관점과 통합적인 맥락 취지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전개하고자 시도되었던 전문인력이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국민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노후설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은 기존의 재무영역인 연금 중심의 노후설계에 치중된 상담과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단점이 된다.

따라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취지에서 노후설계서비스 고유의 목적과 방향성에 입각한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완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노후설계서비스 실행 주요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정될 경우, 초기에는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을 활용하되, 이때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에서는 보다 고유의 노후설계서비스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인력 양성안을 먼저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 배출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인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의 자격을 보완하여 교육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기존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이 보다 양질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 점차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 내 마련된 전문인력 양성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이외 외부 기관으로까지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노후설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 주된 역할과 기능: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보완, 확대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존 배출된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은 크게 첫째,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 내 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팅(CSA) 전문인력, 둘째, 공단 지사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내 중간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팅

턴트(CSA) 전문인력, 셋째, 공단 지사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내 일선 실무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 내 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CSA):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예산집행과 인사,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통 교육 매뉴얼의 제작, 중간 및 일선 노후설계컨설턴트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및 평가,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의 평가, 대국민 홍보, 포털구축, 조사와 연구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정책 및 실천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준할 수 있다. 첫째, 외부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자격 과정 및 기준을 수료하게 한 뒤 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로서 고용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이내 직원 가운데 기존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로 고용할 수 있다. 셋째, 보수교육을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존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과 일정 기간동안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외부 전문인력을 동등한 비율로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에 고용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다.
- 공단 지사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내 중간관리자급과 일선 실무자급 노후설계컨설턴트(CSA)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내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는 노후설계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와 일선 실무자인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상담, 교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및 사후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관할 지역사회에 적합한 아웃리치 서비스 개발 및 실시, 관할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할 지역 노후설계지원센터의 특성화된 사업 등을 발굴하는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이때 중간관리자는 일선실무자를 지도하며 일선 실무자는 가장 일선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대민 노후설계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초기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들은 기존의 주된 업무에 부가적 업무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후설계서비스 역할과 기능은 주도적이기 보다

는 보다 소극적인 역할과 기능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성상 노후설계서비스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지도 감독이 외부기관의 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즉, 이러한 기존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전문인력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 연구 취지의 노후설계서비스의 방향성과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립적인 취지 하에 중앙노후설계지원종합센터 및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와는 독자적인 해당 전문 역할과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노후설계컨설턴트(CSA)는 이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와 분리된 독립적인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상담과 연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점차 국민연금관리공단 외부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 제5장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본 장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 할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양성 기관의 선정에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제1절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

본 절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검토하고,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연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이 별도의 자격제도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기존 전문인력 자격제도

앞의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관 기존 전문인력으로는 직업상담사, 자산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자격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2급과 3급은 무시험 양성제도인 반면, 1급은 시험을 통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이다. 3급은 사실상 현장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여 실질적으로는 1급과 2급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2급의 자격기준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나 이에 동등한 학

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취득 조건은 <표 5-1> 과 같다.

<표 5-1>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기준

구분	자격취득 조건
대학원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등 총 8과목 이상
2년제·4년제대학 (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표 5-2> 사회복지 2급 교과목

구분	교과목
필수(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4과목 선택)	이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1급 검정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합격기준은 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은 <표 5-3> 과 같다.

〈표 5-3〉 사회복지사 1급 검정시험 과목

구분	과목명
사회복지기초 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40문제) 사회복지조사론(40문제)
사회복지실천 영역	사회복지실천론(40문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40문제) 지역사회복지론(40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40문제) 사회복지행정론(40문제) 사회복지법제론(40문제)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표 5-4〉와 같다.

〈표 5-4〉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1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1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011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p>
---

〈표 5-4〉 계속

-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역시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주로 대학을 통해 양성되며,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평생교육사 자격의 구체적인 등급별 취득방법은 〈표 5-5〉와 같다.

〈표 5-5〉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취득방법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90시간)을 이수
2급	1.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 가능. 2. 대학,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 취득. 3. 대학 졸업자로서 다음의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가. 대학 또는 대학 학력 인정 기관 나.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70시간)을 이수.
3급	1. 대학,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 2. 대학 졸업자로서 다음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 가. 대학 또는 대학 학력 인정 기관 나.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및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은 2급 자격인데, 그 이수과목은 〈표 5-6〉 과 같다.

〈표 5-6〉 평생교육사 과목

구분	과목명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이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기타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등이 해당된다.

#### 다.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다른 자격제도와는 달리 자격증이나 급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관련과목 이수 인정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제공하는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010)”인 건강가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표 5-7> 과 같다.

〈표 5-7〉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이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라.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을 통해 양성된다.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2급의 경우, 자격의 취득은 4지 택일형 100문제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2시간 30분에 걸친 필답형 실기시험을 통해 검정한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의 경우 직업상담학(20문제), 직업심리학(20문제), 직업정보론(20문제), 노동시장론(20문제), 노동관계법규(20문제) 등이며,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때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실기는 60점 이상으로 되어있다.

1급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이 필기는 고급직업상담학(20문제), 고급직업심리학(20문제), 고급직업정보론(20문제) , 노동시장론(20문제), 노동관계법규(20문제) 등이고 실기는 2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상담실무에 관한 내용이다. 검정방법은 2급과 유사하게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그리고 실기시험은 작업형(3시간정도)으로 구성된다. 합격기준 역시 2급과 같이 필기는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실기는 60점 이상으로 한다.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격제도다. 취득방법은 시험은 없으며,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직종별로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자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그리고 2급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기능대학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한다. 또한 3급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 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이거나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②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바. 대한노인회 자격증

대한노인회에서는 한국사회교육원과 한국고령사회교육원과 연합하여 자격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노후생애설계와 관련있는 자격제도는 다음 세 가지 정도다. 대한노인회에서 부여하는 다음 세 가지 자격은 모두 민간자격에 해당한다.

##### 1) 노인상담사(대한노인회 주관)

노인상담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국 245개 지회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강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노인상담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노인상담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등록 한국사회교육원(평생교육기관) · 한국고령사회교육원에서 교육하며, 자격증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발급한다.

교육시간은 이론 60시간, 실습 60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하며, 주로 고령화 사회 및 노인문제해결 정책대안, 노년기 발달과 상담, 노인상담의 이론과 실제, 노인 심리와 그림(K-HTP)검사의 이론과 실제, 노인의 정신건강상담, 노인의 성생활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노인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노인상담사의 역할과 비전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 2) 노인건강관리사(대한노인회 주관)

노인건강관리사 역시 이론 60시간, 실습 60시간 등 총 120시간의 한국사회교육원(평생교육기관) · 한국고령사회교육원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자격증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발급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노인건강증진과 예방관리,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노년기생애지침과 노년기 운동, 민요치료, 무용치료, 웃음치료, 단전치기(호흡법), 상하체근력운동, 근력강화운동민요창법, 복합운동체조, 노인건강관리사의 역할과 비전 등이다.

### 3) 노인교육사

노인교육사의 시험 없이 이론 60시간, 실습 60시간 등 총 120시간의 한국사회교육원(평생교육기관) · 한국고령사회교육원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자격증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발급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효과적인 강의기술과 전달방법,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노인 관련 법령 이해, 노년기 생활설계론, 노인교육사의 역할과 비전 등이다.

#### 사. 노인생애경력조언자(SLCA: Senior Life Career Advisor)

SLCA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제도로, 노년기 생애경력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입문과정과 전문과정, 마스터과정으로 나뉘며, 입문과정은 80시간, 4개 영역으로 나뉘는 전문과정은 각 40시간, 마스터 과정은 전문과정 이수자에 대한 임상실습과정으로 87시간으로 운영된다. 특별한 검정시험은 없으며 수업이수와 출석률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며, 수업은 각 지역사업본부에서 운영한다.

#### 아. 노후설계서비스 컨설턴트(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CSA 컨설턴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CSA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CSA 컨설턴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CSA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7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CSA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CSA 2급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만 인정되는 일종의 사내자격에 해당한다.

#### 자. 자산관리사 (FP:Financial Planner)

자산관리사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다. 자산관리사는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연 3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검정방법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의 필기시험으로, 시험과목은 <표 5-8> 과 같다.

<표 5-8> 자산관리사 시험과목

구분	과목	내용	배점
1부 자산기본 및 관리	FP 기본지식	고객재무관리(10), 경제동향분석 및 예측(15)	25
	법률 및 세무	금융거래관련 법률(15), 세무(35)	50
	보험설계 및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15), 퇴직설계와 연금(5), 상속계획(5)	25
	소계		100점
2부 자산운용	자산운용 I(금융자산)	금융상품(35), 주식투자(14), 채권투자(13), 파생금융상품(8)	70
	자산운용 II (부동산)	부동산기본지식(15), 부동산 취득과 활용(15)	30
	소계		100점

단, 검정시험의 일부 면제 제도가 있어서, 검정시험 결과 1부 시험 또는 2부 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연속되는 다음 3회의 검정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문의 시험을 면제해준다. 합격기준은 각 부별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각 부별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각 부별로 과락기준과 총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차. 종합자산관리사(IFP: Insurance Financial Planning)

종합자산관리사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 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생활설계에 적합한 자산운용(수입, 연금, 교육비, 레저, 주택마련, 저축, 투자, 생활비, 상속, 보험, 부동산 등)에 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자산관리사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민간자격제도다.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후, 보험연구원에서 <표 5-9> 와 같은 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초 자격 등록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표 5-9>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과목명	강의내용	시간
Financail Planning의 이론과 실제	- 파이낸셜플래닝의 이해 - FP의 역할 및 전망 등	5
부동산 운용설계	- 부동산정책과 법률 - 부동산 실무기초 및 실무활용방안 등	10
세무설계	- 소득세 - 부동산관련 세제 / 상속, 증여세	15
금융자산 운용설계	- 거시경제학의 이해 - 주식투자의 이해 - 채권투자의 이해 - 파생상품투자의 이해 - 금융상품투자의 이해	20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위험과 보험 - 생명보험설계 - 손해보험설계 - 은퇴설계와 연금제도 - 파이낸셜 플래닝과 보험설계 실무	20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 <표 5-10> 과 같다.

〈표 5-10〉 종합자산관리사 시험과목

파트	과목	문항수	과락 문제수
1	파이낸셜플래닝의 이론과 실제	20	7문제 이하
	세무설계	20	7문제 이하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30	11문제 이하
	계	70	
2	금융자산 운용설계	40	15문제 이하
	부동산 운용설계	20	7문제 이하
	계	60	

합격기준은 각 파트 과목별 과락을 면한 후 각 파트별 총 문제수 대비 60%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즉, 파트 1에서 과목별 과락을 면한 후 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70문제×60%), 그리고 파트 2에서 과목별 과락을 면한 후 총 60문제 중 36문제 이상(60문제×60%)을 맞아야 한다. 자산관리사와 유사하게 검정시험 결과 파트 1 또는 파트 2만 합격한 경우에는 연속되는 다음 3회의 검정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파트의 시험을 면제해준다.

## 2.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의미

별도의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필요할 것인가의 결정은 노후설계 서비스 수행체계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노후설계 서비스 수행체계의 네 가지 안에 따라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란, 노후설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이들에게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격제도에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 그리고 외국자격제도 등이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직접 혹은 각 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하

는 자격제도를 말하며,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된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평가제도를 확립하고,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우대함으로써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는 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방 관련 종목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국가전문자격제도는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인 국가기술자격과는 달리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전문자격은 현재 변호사, 의사 등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14개 부처에서 12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거래사, 감정사, 감정평가사, 검량사, 검수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기술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22종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변리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보험중계사 등이 대표적인 국가전문자격에 속한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란, 민간법인 등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일반민간자격, 그리고 사내자격 등으로 나뉜다.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는 민간자격이었던 자격을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자격으로 국가자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하며(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사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의 예로는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1,2급, 훈장특급,1,2급), 한자급수자격검정(사범,1급,준1급,2급, 준2급), 병원행정사, 신용관리사, 한자급수인증, 수화통역사, 문서실무사, TEPS(영어능력검정), 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있다.

한편, 등록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격을 의미하는데, 국가공인 신청은 등록민간자격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청요건은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 및 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민간자격 중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격들 중에는 아직 등록민간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반민간자격들도 많다.

다음으로 사업내 자격제도는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이다. 사업내 자격은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로는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Assistant, JCC(Master Degree, Specialist Degree) 등이 있다.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을 자격제도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중 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민간자격에서 등록과 공인의 절차를 걸쳐 국가자격 수준의 민간자격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건강가정사의 경우처럼 별도의 자격제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먼저 양성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양성기관에서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과목 이수를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제2절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1. 수행체계 제 1안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에서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는 1안의 경우 전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은 각 시군구에서 위탁받은 지역의 노후설계 서비스 거점기관에 위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이 될 경우, 각 지역사회복지관에 그 규모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의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만일 1안에서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노후설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진단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지역 자원들을 연계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은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필요한 전문 과정을 이수한 그리고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관 전반의 운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이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이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나 지역자원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설계사”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업무에 요구되는 교육내용 혹은 교과목을 규정하여 그 과목을 이수한 이들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로서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수행체계 제 2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2안은 각 시군구청 안에 지역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경우, 지역의 다른 관련기관들은 고유의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은 각 시군구청 내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의 자격은 두 가지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시군구의 공무원 중에 필요 인원으로 하여금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 방안은 노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경우,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와 노후설계 관련 업무 간에 갈등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노후설계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두 번째 경우에는 노후설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들과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노후설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전문성에 근거하여 선발하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의 별도 자격제도를 두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인력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별도 자격제도보다도 앞의 1안처럼 노후설계 서비스와 관련성이 큰 사회복지사 혹은 평생교육사 등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이들을 해당 업무담당자로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3. 수행체계 제 3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하는 3안은 2안과 유사하게 각 시군구청에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되 지역의 거점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 안에도 노후설계지원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은 시군구청과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 양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청 내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서의 업무는 주로 기존 공무원 인력 중 관련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고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노후설계 담당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므로 2안과 달리 담당업무를 할 공무원들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거점기관 노후설계지원팀에만 전문

적인 노후설계 인력을 배치하면 될 것이다. 거점기관 노후설계지원팀의 전문인력은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1-1안과 유사하게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거점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사 혹은 평생교육사 중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업무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이들에 한해서만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수행체계 제 4안

기존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노후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설계와 관련된 교육 및 활동기관을 지원하는 4안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전자바우처의 운용 업무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복지 수행체계와 민간의 사적 시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장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의 질인데, 이러한 서비스 질의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관리원 내에 노후설계지원팀을 두고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자격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자격제도 필요여부는 기존 시장의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분석 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필요한 자격제도를 구축,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수행체계 제 5안

국민연금공단을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는 5안의 경우,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양성해오던 노후설계컨설턴트(CSA)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이 요구된다. 기존에 연금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내부적으로(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개발되었지만, 공단의 요구에 따라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내부적인 교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후설계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격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단이 보다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SA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및 자격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신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기존 CSA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단 내부의 요구를 넘어서 바람직한 노후설계서비스의 방향과 정부의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의 방향에 맞춰 노후설계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의 확대에 대비하여 신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 평가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동안 내부적으로 인증되었던 노후설계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공식적으로 사업내 자격제도화하거나 국가공인 자격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연금업무와 노후설계서비스 업무의 분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

#### 1.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의 필요성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교) 등 형식적인(formal) 교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점은 다른 어떤 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교육의 질이 보장되며, 학습자 비용부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가적인 교육비용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또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등 관련 복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후설계 서비스에 필요한 부가적인 소양 및 능력을 겸비한 인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교육을 완료한 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노후설계 서비스를 곧바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교육이 완료되면 일시에 대규모 인원이 양성되기 때문에 인력의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이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불만의 소지도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이다. 이 경우 노후설계 서비스의 즉각 시행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존 사회 복지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출하는 동시에 대학을 통해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혼합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둘째, 형식교육기관 외에 별도의 교육기관(예컨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혹은 몇 개 대학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을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비교적 단기간 안에 인력 양성이 가능하며, 필요한 교육과정만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원활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단기간 집중교육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육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기관의 자격을 시장에 개방하고 정부가 기관의 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질 관리를 하는 방법이다. 즉, 정부에서는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의 표준교육안을 제시해주고 대학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간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하여금 교육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 각 기관을 심의, 평가하여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점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노후설계 전문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할 때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기관들이 정부의 지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실히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시장원리에 전문인력 양성을 맡겨 놓았을 때 일종의 자격증 장사로 와전되어 인력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위한 추가인력과 업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 2.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 도입 필요성 검토

### 가. 1안

1안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이 배치되며, 업무의 효율

성 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해 주고 각 대학별로 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교과목들을 선택, 개설하게 하며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도록 한다.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인증은 정부에서 직접하기보다는 대학에 위탁하여 요구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 총장 명의로 과목 이수 인증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2안

2안은 안은 각 시군구청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안에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이 배치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할 경우와 노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방향도 달라진다.

첫 번째,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재교육기관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노인인력개발원 또 혹은 지정된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교육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정부가 해당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의 1안의 경우처럼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3안

3안 역시 2안과 마찬가지로 재교육기관이나 대학을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라. 4안

기존의 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기타 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활용될 수 있다. 각 서비스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형식교육기관으로부터 민간기관까지 다양

한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유기관을 활용하는 만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기관 관리, 감독, 평가, 인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안에 별도의 자격증관리팀을 설치하고 자격증 및 교육기관 인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추가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재정지출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마. 5안

5안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외부 원격대학에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 개발하여 원격교육방식으로 노후설계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공단 자체적으로 노후설계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단의 기능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양성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수정·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기관 역시 공정한 평가절차를 걸쳐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존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시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격교육 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신규인력 채용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하여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면 별도의 자격과정을 개설하는 데 많은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급적 노후설계 관련 학과들 예컨대 사회복지 관련 학과나 평생교육 관련학과 등의 전공교육과정에 한 두 개의 노후설계 관련 기초과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6

K  
I  
H  
A  
S  
A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 제6장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예비노인 세대(45~64세)의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설계지원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중이다. 이는 예비노인세대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노후준비는 경제적 부문 등에 국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실시중인 노후설계서비스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해 미래 노인의 특성변화에 대응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본 장은 ‘노후설계서비스’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법적 정의를 모색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일부 법령에서 노후설계의 세부내용과 관련한 규정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나, 포괄적 차원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활성화할 법적 기반, 지원 체계와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노후설계서비스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론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중점을 둔다.

### 제1 절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과 법적 과제

입법론적 연구는 종전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두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법제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노후설계서비스의 정책적 개념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마지플랜2015에서 설정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층은 예비노인세대(45~64세)이고, 노후설계의 내용적 범위는 재무, 건강, 시간 및 여가취미, 배움, 정서, 봉사활동 등이다. 내용적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재무설계는 다층소득보장체계, 세금, 부채관리 등, 노후경력관리설계는 일자리-훈련, 소규모지역 NPO 창업 등, 노후 건강설계는 생활건강관리, 질병정보, 영양관리 등, 노후 여가설계는 은퇴전 여가준비 취미·여가, 자원봉사 등, 노후생활설계는 가족 및 대인관계, 시간관리, 배움, 정서, 주거, 전원생활 등이다. 그리고 서비스제공방식으로는 대상층에 대한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단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기관간 협력체계구축과 관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기능적 요소까지 포함하게 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대상층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의 문제는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노후설계는 노년기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이 장래의 노후생활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일단 노년기에 이르기전의 예비노인이 주대상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잠정적으로 새로마지플랜2015는 45~64세로 연령층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노후생활설계의 개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설정된 연령층을 넘어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국민들도 있을 것이며, 45세미만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노후설계에 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층의 범주를 협의적 차원에서 엄격히 할 것인가 아니면 광의적 차원에서 넓게 확장하여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할 것인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를 당해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령층을 사회적 계층으로 세분화하고 지원방식 또한 달리할 것인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의 기본방향

공공재로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재로서 민간자율에 맡겨두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은 1차적으로 노후설계 기반을 조성하고, 2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다. 노후설계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예비노년층이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상담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연계·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평균수명의 연장,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개인 입장에서의 노후설계는 미리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초고령사회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사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노후설계서비스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무적 부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 관련서비스 제공대가에 대한 적정가격의 산출이 쉽지 않고 서비스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노후설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부족하고 서비스의 효과성 자체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화 저해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정책의 평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보건복지정책,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정책,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건복지정책 등 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하여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의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권리적 차원에서의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보건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영유아-청소년-중장

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연령계층간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고령사회정책 영역자체에 있어서도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 관심하에 많은 정책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중고령자의 노년화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화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노후설계서비스는 중장년층의 노년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부족을 극복하고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국가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부모 부양, 자녀 부양, 본인의 노후준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중장년층이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가올 노년기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조력함으로써 본인으로 하여금 노후설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며,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설계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다만,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추진의 지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설계 교육상담, 전문인력 자격관리 등 인프라구축, 전담기구의 지정,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확립 등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성격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제2절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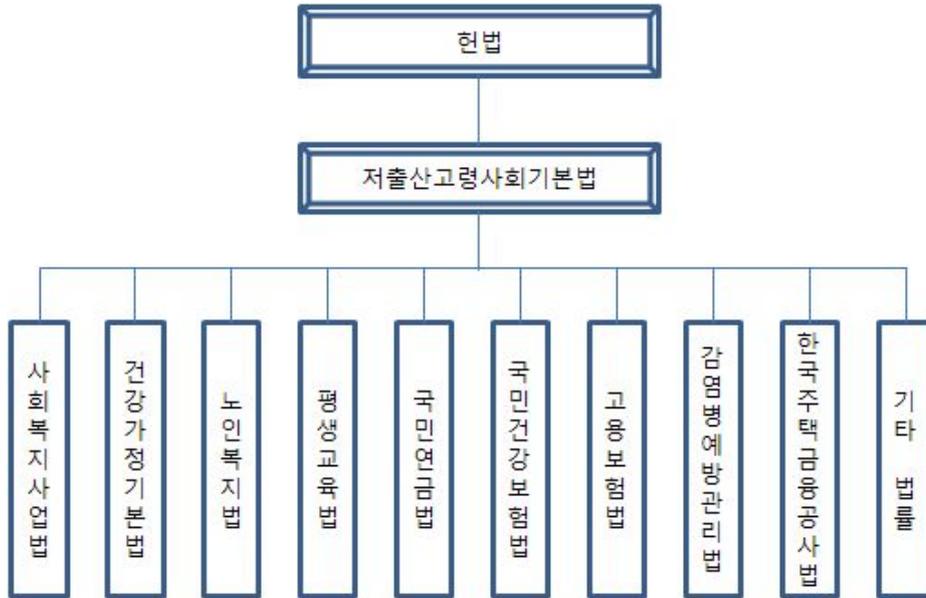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동일한 입법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유사한 사항을 다루는 정책이라

면 기존법률 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현행 관련 법률들을 개정함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 1.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헌법상 명시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해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국민의 근로권·근로 의무는 간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노후설계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동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의 세부규정 하에서 노후설계서비스 기본정책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6조에서 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동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보다 상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노인이 노년기에 맞게 되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제문제에 관하여 미리 설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제외하고는 노후설계서비스라는 명칭하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 외 법률들은 동서비스의 일부내용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내용은 표와 같다.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31조 5항)</li> <li>○ 국민의 근로권·근로 의무(32조 1, 2항)</li> <li>○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제34조)</li> </ul>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기본이념(제2조)</li> <li>○ 국민은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제5조)</li> <li>○ 고령사회정책으로서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제2절 제11조 내지 제17조)</li> </ul>	
⇓		
관련법	주관사업 및 주관기관	사업대상
국민연금법 (포괄적)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li> <li>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li> <li>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li> </ul>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p>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p> <p>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p> <p>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p> <p>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p>	<p>자, 수급권 자</p>
<p>노인복지법 (빈곤, 질병)</p>	<p>□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p>	<p>노인</p>
	<p>&lt;노인인력개발원&gt;</p> <p>○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p>	
	<p>&lt;노인복지상담원&gt;</p> <p>○ 노인복지 상담</p> <p>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p> <p>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p> <p>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p> <p>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p> <p>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lt;요양보호사&gt;</p> <p>○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p>	
	<p>&lt;치매상담센터(보건소)&gt;</p> <p>○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p> <p>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p> <p>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p> <p>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p> <p>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p> <p>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의 입소 안내</p> <p>6. 치매조기검진사업</p>	
<p>사회복지사 업법 (무위, 고독)</p>	<p>□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p> <p>□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p>	<p>아동,노 인,장애 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p>
	<p>&lt;사회복지관&gt;</p> <p>○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p>	
	<p>&lt;지역사회복지협의체(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gt;</p> <p>○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p> <p>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p> <p>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p> <p>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p>	
<p>건강가정기 본법 (고독)</p>	<p>□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p> <p>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p> <p>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p> <p>3. 안정된 주거생활</p>	<p>가족구 성원</p>

	<p>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p> <p>9.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p> <p>&lt;건강가정지원센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li> </ul> <p>&lt;건강가정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사업을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li> <li>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li> <li>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li> <li>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li> <li>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li> <li>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li> <li>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li> </ol> </li> </ul>	
국민건강보험법(질병)	<p>&lt;국민건강보험공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li> </ul>	가입자
고용보험법(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li> </ul> <p>&lt;민간직업상담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li> </ul>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	<p>&lt;한국건강관리협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li> </ul>	전국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빈곤)	<p>&lt;한국주택금융공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및 지급</li> </ul>	노인
평생교육법(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li> </ul> <p>&lt;평생교육진흥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li> <li>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li> <li>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li> <li>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li> </ul> <p>&lt;평생교육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li> </ul>	전국민

## 2. 노후설계서비스의 다른 법률에의 적용가능성

노후설계서비스를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이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서비스 내용이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상담 등 재무적 관점에 머물

고 있으며,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설계서비스의 타부문은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연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이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 한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재무적인 부문 뿐만 아니라 노후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타부문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범위가 협소한 점은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공단의 고유설립목적으로 벗어나는 수준의 업무범위까지 확장하여 대상자의 제한없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되고, 재무적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서비스제공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가도 서비스제공의 실효적 관점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질병예방과 노후생활안정 등 2가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의 포괄성 면에서는 국민연금법보다는 한단계 진보된 면이 있으나, 대상층이 노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연금법과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설계서비스를 동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목표의 상이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복지사업, 사회복지상담,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정목적의 하나가 사회복지필요로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노후설계서비스의 상당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가 동법 제2조 1호 가목 내지 서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사업에 한하고,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법 제2조 1의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인 지역사회복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활용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사회복지적 개념접근과 정합성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

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노후설계 서비스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표면적으로는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의 주요임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수 있듯이 가정문제의 예방·해결과 가정기능 강화 등 가정의 내부적 문제에 치우친 면이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 차원의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법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사업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외의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포괄한다. 그런데 노후설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이 교육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담, 사례관리까지 포괄하는 유형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도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다양하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노후설계서비스를 담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된다.

그 외, 국민건강법, 고용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도 입법목적, 적용대상, 내용적 한계로 인해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수용토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3.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각각의 법률은 나름대로의 독자적 제정목적은 가지고 있으며,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표도 각각 상이하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목표를 변경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나름의 한계가 있으며, 결국 노후설계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즉,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 제3절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안

본 절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법률이라는 틀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탐구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한다. 수행체계 1~4안에 대하여 각각의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각 수행체계에 대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제화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과정이 법제화 과정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법제화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광의적 측면에서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상하관계의 계층구조를 가지며, 법령상호간에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3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의 원칙 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뒤에 만들어진 법은 종전의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협의의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즉, 개별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국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시행령)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의 형태로 제정하게 된다.

#### 1. 입법의 목적과 기본방향

##### 가. 입법의 목적

노후설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예비노인 세대인 중장년층이 스스로 노년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국가차원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고령사회가 몰고 올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사회적 부담과 충격을 완화시키고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차원에서는 노후의 재무건강여가가정생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나감으로써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재무설계(다층소득보장체계, 세금, 부채관리 등), 노후경력관리설계(일자리연계-훈련, 소규모 지역NPO창업 등), 노후건강설계(생활건강관리, 질병정보, 영양관리 등), 노후여가설계(은퇴전 여가준비, 취미·여가, 자원봉사 등), 노후생활설계(가족 및 대인관계, 시간관리, 배움, 정서, 주거, 전원생활 등) 등 여러 영역의 노후설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영역에 대하여 교육, 상담, 사례관리까지 포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나. 입법의 기본방향

일반적으로 법령의 형식 내지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법이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형식을 의미하며, 특별법이란 특정한 사람·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형식을 말한다.

특별법은 대략 일반법의 적용으로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구체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입법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강한 법집행력을 수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특수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에 일반법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의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법 특례법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제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는 독자적 목적을 갖고 있는 법체계로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서비스 시장의 기반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구축,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등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설계서비스 지원대상은 서비스의 성격상 전국민이 아닌 특정연령대의 국민으로 한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예비노인세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45~64세의 중장년층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입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 2. 총칙부문의 구성

### 가. 입법목적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을 말하며, 해석상 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및 해석지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인 예비노인 세대(45~64세)가 스스로 노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노후의 재무·건강·여가·가정생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규정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개인으로 하여금 재무·건강·여가·가정생활 등 노후생활과 관련한 제부문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규정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명백히 하여 개념의 내용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본 법률안에서 정의의 대상이 되는 용어는 노후설계서비스,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 등이며, 당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설계서비스”라 함은 45세 내지 64세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재무설계, 노후경력관리, 노후건강설계, 노후여가설계, 노후생활설계 등 5개영역의 노후설계에 관하여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라 함은 45세 내지 64세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함은 노후설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가 지정된 제공기관에 제시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다. 국가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정책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갈 사항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노후설계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법률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률 상호간 또는 각 법률의 개별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고 법률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법 등 일부 법률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률이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의 기본이 됨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책 이외에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활용 및 연계

노후설계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필요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연계하여야 한다.

3.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 부문의 규정

가. 노후설계서비스 주요내용

노후설계서비스의 유형은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연계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주체는 지역사회내 관련 교육기관 및 활동기관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지역 또는 중앙의 노후설계지원센터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센터는 신청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서비스 유형,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6조(노후설계서비스)** ①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설계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상담서비스 : 서비스대상자의 노후설계상담 신청내용에 대한 전문상담제 공기관에 의한 전문적 상담
2. 교육서비스 : 노후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3. 연계서비스 : 서비스대상자와 지역사회내 교육기관 및 활동기관간 서비스 의 연계
4. 사후관리서비스 : 서비스대상자의 연계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서 비스제공

② 노후설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또는 지역노후 설계지원센터에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후설계서비 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제공서비스의 유형·내용 등에 관 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또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서비스신청 내용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노후설계서비스 과정, 노후설계사 자격도입여부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재무설계, 노후경력관리, 노후건강설계, 노후여가설계, 노후 생활설계 등 5개영역의 노후설계에 관하여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노후설계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는 노후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생애과정에 따른 노후 생활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행한 노후생활로의 인도 라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자격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규정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노후설계서비스 과정)** ①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시·군·구노후지원센터, 지역사회 노후설계서비스 유관기관 중 직접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노후설계서비스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노후설계서비스과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외에 노후설계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자격제도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일반민간자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 자격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제도 도입은 노후설계사의 특성, 업무 성격, 공인의 필요성, 정책목적 등 자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자격의 유형을 선택하고, 자격유형에 따른 여러 요건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법제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격의 성격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된다.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법률에서 관련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결정되는 자격유형과 유사형태의 자격의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규정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다. 바우처의 발급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금대응의 지불인증(인환)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상품권(coupon)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우처의 발급예로는 임신·출산 진료이용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보육서비스이용권(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등이 있다. 노후설계서비스에 있어서도 노후설계에 관한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 또는 노후설계서비스 산업 육성차원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1항의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의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0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지급대상, 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규칙에는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함께, 바우처의 전자적관리 및 관리업무 위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할 수 있다.

규칙 제0조(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이하 "대상자"이라 한다)는 법 제0조에 따른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이하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법 제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을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규칙 제0조(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규칙 제0조(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0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4. 그 밖에 노후설계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라. 사업평가

노후설계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산재하게 된다. 여러 제공기관에서 동시에 수행되게 될 경우 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질을 적정수준이상 담보할 수 있는 도구가 사업수행평가이다.

**제15조(사업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후설계지원기관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보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 마. 노후설계서비스 통계조사 근거규정

노후설계서비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행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현황, 실적, 사례 등 서비스 결과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결과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피드백되어 서비스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서비스 자체의 효용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된다.

**제16조(노후설계서비스 통계조사)**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설계서비스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노후설계지원조직 등에 관한 규정

##### 가.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노후설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의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센터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노후설계지원사업 표준 매뉴얼 개발, 지역별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DB구축 및 관리), 노후설계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후설계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업무까지 일부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적 지원이 수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노후설계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조직·운영 및 노후설계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과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제0조(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
3. 전문인력(가칭 ‘노후설계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노후설계지원사업 표준 매뉴얼(혹은 모듈) 구축
5. 지역별 노후설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6. 정보시스템 구축(DB구축 및 관리)
7. 노후설계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등

③ 센터의 장은 매년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1.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전담 기관으로서의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이다.

**제18조(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역사회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후설계지원센터를 둔다.  
 ②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는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과 시·군·구 노후설계사의 직무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다.

영 제0조(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노후설계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이들은 노후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후설계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등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영 제0조(시·군·구 노후설계사의 직무) 시·군·구에 노후설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노후설계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후설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사후관리
2. 노후설계에 관한 교육
3. 노후설계서비스 지원기관에 관한 연계
4. 기타 노후설계에 관한 사항

나 -2. 시·군·구 운영위원회

시·군·구 운영위원회는 유관기관들의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기관들의 연계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19조(시·군·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정보자료 수집과 연계를 위하여 시·군·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시·군·구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영 제0조(시·군·구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노후설계지원사업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내 노후설계지원사업 유관기관들의 정보자료 수집 및 의뢰체계(referral system)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2. 시군구 노후설계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섭외 협력

## 5. 보칙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총괄하는 관련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다.

**제21조(보조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 타법(고용보험법)의 개정

사업장 근로자가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규정을 두는 형태이다.

**제29-2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노후설계지원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이 노후설계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절 기존법률 개정안

제3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노후설계서비스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방안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기존법률을 개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입법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법률의 개정만으로는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달성에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의 정책추진환경이 새로운 법률제정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면 비록 약화된 형태이긴 하나 기존법률을 개정하여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차선책으로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유사정책목표를 가진 기존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노후설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집행력이 약화된다. 기존법률 개정방식은 그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일부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후설계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립법과 기존법률개정은 강행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이며, 기존법률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삽입하려는 정책사업의 목표간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이라는 목표개념의 이질성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

둘째, 연계서비스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경력관리, 여가, 생활 등 노후생활 전부문에 대한 사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기반 마련 없이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신설하는 방식은 법적기반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정책실행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연계서비스는 인지도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면 탄력을 받기가 힘들게 된다. 특별한 법적장치 없이 단순히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서비스총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협조관계가 긴밀하지 못하여 당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셋째, 노후설계상담사 자격제도의 공식적 도입이 불가능하다. 국가자격제도는 차

치하고서라도 민간자격제도 중 국가공인자격제도는 국가가 공인을 해주어야 공인의 효력이 발생하나, 법적근거없는 지침만으로는 국가공인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간자격제도의 난립과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확보에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법제도화 추진시 기존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후설계서비스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으므로 유사 또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기반과 강행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향후에도 고령사회대책의 하나로 수행되어질 것이므로 법적근거 확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후설계서비스의 모태법률로 기능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제2조), 국민은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선언하고 있으며(제5조), 제2절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 고령사회정책으로서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등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내지 제3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고령사회정책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삽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법체계상 신설이 가능한 장은 제4장 보칙이 될 것이며, 보칙은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조사 및 연구, 제30조 민간의 참여,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노후설계서비스가 위치할 수 있는 최적위치는 유사한 형태 즉, 조사연구사업에 관해 규정한 조항인 제29조 다음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9조의 2 (노후설계서비스)’를 신설하고 관련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근거규정은 노후설계서비스 실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서비스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제29조의2(노후설계서비스)** ① 국가는 국민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2009년 1월 30일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사업내용 중 하나로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년 4월 30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미 노후소득보장 종합상담, 전문기관 발굴 연계, 상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훈련, 홍보, 조사연구, 국제협력 등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주요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직접적 상담서비스 제공은 노후 소득보장에 한정하고 있고, 기타 노후생활서비스 제공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만 맡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국민연금법의 노후설계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이다. 향후 국민연금공단내에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두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면,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포괄적인 상담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이 법령개정을 통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민연금법 &gt;</b></p> <p><b>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b>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민연금법 &gt;</b></p> <p><b>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b>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자를 위하여 노후소득 보장,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민연금법 시행령 &gt;</b></p> <p><b>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b> 공단은 법 제46조의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li> <li>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 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li> <li>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 국민연금법 시행령 &gt;</b></p> <p><b>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b> 공단은 법 제46조의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li> <li>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 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li> <li>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li> <li>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li> <li>7. 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li> <li>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li> <li>7. <u>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에 관한 종합상담</u></li> </ul>
--	---

### 3. 보건복지부 지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그 권한범위내에서 관련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으로 시행할 내용은 제공서비스의 대상, 내용, 방법 등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과 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중앙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조직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절의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후설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내에 자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공인 또는 공인자격 등에 관하여는 언급할 수 없으며, 민간자격증을 활용하여야 한다

노후설계서비스 국내사례 현황



## 제7장 노후설계서비스 국내사례 현황

### 제1절 국내 노후설계 관련 프로그램 사례

노후설계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전문 인력, 제도 등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3의 인생 설계라는 의미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0년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해당하는 노후설계 관련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09년 매일경제신문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노후대비지표(고령화 속도, 저소득층 비율, 연금소득대체율, 은퇴 후 생존기간 등을 중심으로 각종 수치를 가중 평균한 후 지수화 산출)를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47점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매일경제, 2009). 일본 74점, 미국 128점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점수이다. 물론 본 지표가 경제적인 부분의 노후대비를 살펴보고 있지만 한국의 노후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 은퇴를 계기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및 국가, 기업의 협력을 이루어 노후설계를 시작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중장년층 및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아가는데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다양한 욕구의 표출과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중장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은 최근 다양하고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체별, 내용별, 영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연구 목적에 맞는 ‘노후설계’의 제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내용보다는 문화강좌 혹은 이벤트 성향의 일회성 프로그램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주체별로 노후설계에 대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비하는 부분도 다양하였다.

선행연구 가운데 2008년 진행된 “우리나라의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연구진행시 우수 기관으로 조사되었던 기관을 제외한 후 주체별 분류를 적용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국내사례 현황

### 1. 정부 및 공공기관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베이비 붐 세대 은퇴 후 관심 증가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일자리, 퇴직 후 복지차원의 지원, 전직지원 등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혹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노년기 이전 노후 준비에 목적이 맞추어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후설계 관련 분야 내용을 진행하는 기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 가. 서울시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서울시에서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대도시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9988 어르신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부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까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새로 펴는 계기로 진행되었다. 치매걱정 없는 서울, 일하는 노후, 노인건강 지원, 신바람노인문화, 세대통합지

원,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어르신행복타운이라는 하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대통합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고령사회 노인문제 대비 사회·정책적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 권리로서 노인교육을 진행하고, 사회적 소외집단으로 노인이 스스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1〉 인문학 아카데미 개요

교육기관 (교육장소)	프로그램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광진구 화양동)	· 현대문학 풍경 · 조선왕조 이해 · 판소리 문학 등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종로구 인의동 외 5)	· 역사 및 철학 · 노후생활 설계 · 노인의 사회참여 등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강동구 명일동 외 14)	· 역사문화 탐방 · 아름다운미술세계 · 자서전 쓰기 등
송실대 평생교육원 (동작구 상도동)	· 사극 속 우리역사 · 박물관 탐방 · 노년기 사회참여 등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성북구 하월곡동 외 1)	· 인문학 강좌 · 건강한 노년생활 · 활기찬 노년생활 등

교육 내용으로는 역사, 문학, 철학 등 인문학이 중심이 되며 내용 가운데 노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노년상, 노후생활설계, 노년기 여가활용,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생활법률상식, 노년기의 경제생활, 재산관리 및 재테크, 노년의 이해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 대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55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교육 장소로는 총 6곳을 거점으로 두고 있으며, 6곳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대다수 대상 교육 진행을 위하여 운영 주체를 여러 곳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1일 2시간, 주 2회, 8주 과정으로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

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이는 서울시 지원 7만원에 본인 부담금 1만원의 금액이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대상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 2천원이다.

영역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석률에 따라 과정 이수자를 선별하고 있다. 교육기관 자체 역량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과정은 대다수의 인원에게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노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한 노년기 진입 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과정을 접하게 함으로 다양한 영역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6곳의 거점에서 여러 곳의 운영주체를 두고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보다 흥미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큰 맥락은 인문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노후생활설계,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의 경제생활 등의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본 프로그램만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대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강점을 살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년기 가족교육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며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상담, 가족돌봄지원, 맞춤형 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교육상담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지역별 센터에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가운데 중년기 가족교육이 해당 영역으로 노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경제적 노년 준비 방법을 모색하고 그 세대에 나타나는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하는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본인의 경제상태를 이해하고, 노년기 경제적 문제 파악 및 극복 방안, 소비생활 이해, 부부관계 향상,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적응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대상으로는 50대 퇴직 전후의 중년부부가 주 대상이며 은퇴준비에 관심이 많은 30~40대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기간으로는 지역별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회기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지역별 내용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영역의 전문가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진행하여 기수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출석률에 따라 이수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수 후 센터 내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지속적인 센터의 관리를 받게 된다.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점과 지역별 센터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구성원들의 욕구 파악이 빠르며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이 기수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선택·순환적 진행이 되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지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파악에 있어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 매뉴얼을 제공한다 하여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진행 내용과 방식에 변화가 있어 지역별 센터가 얼마만큼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부에 따라 구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분야의 담당자를 배치하여 해당 연령층의 급증하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복지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심의 중심에 선 베이비 붐 세대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가고 있으나 대부분 여가 문화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복지기관들은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 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은 대상자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노후 준비는 해당 연령층이라고 보는 중년층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하지만 복지기관들 가운데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기관은 노인관련 기관들로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인복지시설수는 약 66,854개, 사회복지관 약 420개로 노년기 대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관 외에도 전생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 학습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참여대상자들의 능력 개발 혹은 추후 인생 설계에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조력자 등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2008년 우수 사례로 조사되었던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실버플래너(Silver Planner) 프로그램의 경우 조사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년기 건강, 노년기 사회관계, 노년기 자원봉사 등의 교육과정을 거쳐 노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연령대 초점이 60대 이후 노년기에 맞추어져 있다.

#### 가. 강남구노인복지관 ‘강남시니어칼리지’

강남구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체계를 통합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여타 다른 노인복지관과 유사하게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강남시니어칼리지’의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경륜과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다. 잉글리시 스토리텔러, 전통놀이 지도시는 영어 구연동화와 전통놀이 지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연계 및 교육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문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강남구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수별 30명씩 신청접수 후 모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총 20회로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석률에 따라 이수하고 있다. 또한 본 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육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동년배와 교류를 통한 노인문화 보급을 위하여 생활 속 한방지혜, 장수비결, 치매예방 등 전문한의사를 통한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강좌(이미지메이킹, 음악, 미술, 와인예절 등)를 통한 정서적 여유와 만족감 제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문화·교양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다수였다. 노인복지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연령대가 만 60세 이상으로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을 듣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용 구성에 있어서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여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구성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대상자들을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연계시켜주는 부분 역시 전문화된 역할로 키워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중량노인종합복지관 ‘행복한 부자학교’

중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객감동과 가치창출을 위해 고객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하여 ‘행복한 부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은퇴 후 주체적이고 사회인으로서 노년기 과업을 충분히 준비하여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기관리 및 생활설계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마련되었다. 주로 경제적인 부분의 내용으로 재테크, 부동산 및 펀드투자, 현명한 소비 교육, 유산 상속 법률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2〉 프로그램 내용

회기	프로그램 내용
1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
2	60세 이후 인생설계
3	금융상품 알고 가입하자
4	부동산 투자와 펀드투자
5	정보화 교육(인터넷 뱅킹 사용교육)
6	노년의 현명한 소비자 교육
7	자녀에게 현명하게 유산 상속하는 법률교육

참여 대상으로는 복지관 이용 혹은 지역 내 재테크에 관심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홍보를 통하여 기수별로 진행되었다.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기수별 출석률로 이수자를 선별하였다.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수자들 대부분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혹은 본 프로그램 이수 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예산에 따라 중단과 시작이 결정되어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이 운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일지라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중단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 부분은 기관 내부 영역의 문제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제한점이 있지만 이들이 본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켜가고, 프로그램 수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후 교육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이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민간단체

민간단체 가운데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많지 않으나 최근 관심 증대로 소수 기관들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체 운영 주체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적에 차이가 나타났다.

#### 가.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부설 평생교육원 ‘은퇴자 제2의 인생설계’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은 각 전공분야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의 교육제도나 정책, 문화와 정치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은퇴자 및 고학력자의 퇴직 이후 살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식생활에서부터 건강, 질병관리, 노년기 이해, 법률 상담, 제2의 인생설계, 정책 이해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3〉 은퇴자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교 과 명	담당 교수
1. 개강식 O/T, 시민교육론*	이종석박사(평생교육원장)
2. 행복한 노후설계	김준한(전 국방대 교수)
3. 건강한 식생활 관리	정은경(전 식품영양학 교사)
4. 인도의 오늘과 미래 전망	윤석명(한·인도문화원 교수)
5. 인적자원 개발론*	이종석박사(평생교육원장)
6. 고령사회의 도전과 대응	도재숙(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사무총장)
7. 노인성 질병관리와 예방법	김미라(IS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8. 부부상담*	이미소(한국행복컨설팅트협회장, 연세대 행복웃음 책임교수)
9. 기업경영의 이해*	김상조박사(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10. 북한사회의 이해와 노년기	전원근박사(본 교육원 부원장)
11. 가족생활 교육(현대사회와 IT)*	김혁구(주, 드림정보기술 대표)
12. 제2의 인생 설계론	이희승박사(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13. 동아시아 역사와 동북공정	서상원박사(전 한국체육대)
14. 기(氣) 수련을 통한 건강관리	정찬후(석문문화원 원장)
15. 자아발견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	이준희박사(국방대 교수, 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16. 서비스 마케팅*	김상조박사(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17. 사회복지법제론*	이종석박사(평생교육원장)
18.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정효현박사(전 국방대 교수)
19. 회계와 조세의 이해*	김상조박사(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20. 평생교육론* / 수료식	이종석박사(평생교육원장)

\* 표는 학점은행계 예정

참여 대상은 마포구 거주 은퇴자, 고학력 퇴직자가 1순위였으며, 서울시 거주자가 2순위 모집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하였다. 중앙 일간지, 메트로 신문, 구청 신문광고 등을 통해 주기적 게시를 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참가비는 학기당 1만 5천원으로 학기 주2회 총 20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과정의 80%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료 후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본 프로그램은 마포구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추후 마포구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본 기관에서는 은퇴자와 고학력 퇴직자라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대상자를 모집한 부분이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기관의 운영 목적과 연

계되는 부분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수 과목 가운데 학점 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점 이수과목으로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추후 진행시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대상자가 고학력 퇴직자라는 고등교육 대상자라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점이었으나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인력 재생산 및 활용 부분에 미흡함이 있었다. 또한, 본 기관 역시 예산 지원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속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는 가족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생애주기별 영역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 관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결혼준비교육 및 부부교육,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일반인 교육 영역 가운데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노년기 준비교육 영역인 건강, 가족관계, 경제, 여가를 중심으로 노후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원만한 자녀 및 부부관계, 노후 경제 준비, 여가활동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참여 대상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50~60대 기혼 남녀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신청자에 따라 부부 혹은 개인 남녀로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 1회 2시간으로 구성되며 대상자 모집정보를 파악 한 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구성하며, 대상자에 따라 4~8회로 회기는 정해진다. 참가 비용은 회별 3~5만원으로 전체 12~15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이는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따라 참가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기관의 상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 진행하기도 하며 외부로 나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출석률에 따라 이수 여부가 결정된다. 프로그램 이수 후 사후 관리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대상자들에게 기관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지속적으로 기관과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본 기관은 상담 전문 연구기관으로 상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연령층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관의 접근용이성이 타 기관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기관 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와 외부 요청이 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전 생애연령층을 대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제한된 전문 인력이 구성되어 운영하다보니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종교기관 프로그램

종교기관은 노인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가운데 수많은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여가,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의 기관을 하나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몇 개의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에서 실시하였던 연구 내용 가운데 올해에도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남서울은혜교회 새롭평생대학과 카톨릭 시니어 아카데미를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종교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성을 가진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 대한 정보 분석은 2008년 이루어진 내용과 큰 변화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 5. 대학 및 교육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은 베이비붐 세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설 연구소 설립 등 교

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노후 준비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 학위 과정 개설 등을 통하여 노후 준비 전문 영역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 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제3기 인생대학”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노인 정책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 기관으로 노인과 관련된 제반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개발을 마련하고자 종합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제3기 인생을 퇴직 이후 또는 40대 이후에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로 정의하고 중년기 이후의 노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제3기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중년기 이후의 여가활동, 고령화 사회와 제3기 인생, 중년기 이후 신체적 변화, 자기 적성 개발, 식생활, 은퇴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4〉 제3기 인생대학 프로그램 내용

→ 1학기

교 과 명	담 당 교 수
1. 입학식	
2. 중년기 이후의 여가활동	김동진(서울대)
3. 고령화 사회와 제3기 인생	최성재(서울대)
4. 중년기 이후 신체적 변화	박상철(서울대)
5. 특강	
6. 중년기 이후 사회적 관계	한경혜(서울대)
7. 중년기 이후 심리적 변화	민경환(서울대)
8. 중년기 이후의 평생학습	한승희(서울대)
9. 중년기 이후 자기 적성 발견	문용린(서울대)
10. Mid-term Break	
11. 특강	
12. 디지털시대의 IT 발전과 Social Network	김성준(서울대)
13. 중년기 이후의 리더십	조동성(서울대)

〈표 7-4〉 계속

교 과 명	담 당 교 수
14. 미래사회의 이해	서이준(서울대)
15. 중년기 이후의 시간관리	최성재(서울대)
16. 젊은 세대의 이해	권석만(서울대)
17. 고령화사회와 실버 산업	이건직(한림대)

→ 2학기

교 과 명	담 당 교 수
1. 중년기 이후의 구강건강과 질병	고홍섭(서울대)
2. 중년기 이후의 신체건강과 질병	김철호(서울대)
3. 중년기 이후의 정신건강과 질병	조맹제(서울대)
4. 특강	
5. 고령화사회와 연금제도	최성재(서울대)
6. 운동으로 지키는 건강	김선진(서울대)
7. 인생100시대의 자산관리	강창희(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8. 노화와 기억의 전쟁	김정오(서울대)
9. Mid-term Break	
10. 특강	
11. 노화와 약물 복용	서유현(서울대)
12. 은퇴설계의 개요	최현자(서울대)
13. 제3기 인생의 맞춤 영양과 식생활	이연숙(연세대)
14. 노후를 위한 주거환경 계획	이연숙(연세대)
15. 중년기 이후 성생활	김수웅(서울대)
16. 노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설계	최성재(서울대)
17. 발표회	
18. 졸업식	

참여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40~50대 중년층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기수별 100명으로 구성되며 서류 접수를 통하여 대기자 선정 절차를 거친다. 서류에는 2기 인생 이후의 계획, 지원동기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류 준비 미비자들이 우선 탈락자이며 자체 내부 회의를 통하여 고학력 지원자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총 2학기 과정으로 1년 동안 진행되며 학기당 16회 정도의 강의를 배치하였고, 참가 비용으로 교재비 포함 금액인 학기별 20만원을 받고 있다. 강사진은 해당 영역 전문가인 본교 내 영역별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강과 같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본 프로그램은 결석 4회 미만과

매회기별 과제 제출로 이수 평가를 진행하며,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다. 1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수료자들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으며 이에 연구소측에서는 지원을 하기도 한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의 발전을 위하여 추후 본 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들에게 본교 평생교육원 내에 지도자 과정과 같은 관련 다양한 영역이 생길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과목 인정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위 프로그램 외에도 Gold Cook(중년 이후 남성 대상 독립성과 적응력 향상, 건전한 식생활 영위 및 노후과정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강의, 조리 실습, 시식으로 이루어짐), 미니메드스쿨(일반인 의과학 이해도 향상을 위한 중년층 교육 프로그램), 장수과학최고지도자과정, 장수문화조찬포럼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활발한 노후 준비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후 전문가 양성까지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과정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2008,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선정되어 오프라인 상에서 시범 운영 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었다. 참여 대상은 2009년 오프라인 강의시 40대 후반부터 관심있는 대상의 연령대가 구성되었으나 2010년 온라인 강의로 변경된 이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2010년 남녀의 비율은 3:7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다. 교육 기간은 정규 과정임으로 학기제로 운영되며, 2010년 이론 강의 34시간, 재택과제 8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7-5〉 세부 강의 일정

차수	시수	강의내용	담당
1	2	시대적 변화와 고령화	정민승(방통대)
2	2	생애발달과 노인의 발달과업	한정란(한서대)
3	2	생물학적 노화와 신체적 특성	이화정(백석대)
4	2	노년기 심리적 특성	정태연(중앙대)
5	2	노인 인적자원정책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6	2	행복론	전기보(행복한 은퇴연구소)
7	2	재테크, 재무설계	김재원(중앙이아이피)
8	2	고령자의 주거	김태일(제주대)
9	2	노년기 여가와 문화	박준기(용산노인복지관)
10	2	노년기 성	이호선(한국노인상담센터)
11	2	노년기 운동	원영신(연세대)
12	2	노년기 건강과 영양	이미숙(식생활 클리닉“건강한 식탁”)
13	2	노년기 자원봉사	이금룡(상명대)
14	2	죽음준비교육(유서쓰기 포함)	유경(가천의과대)
15	2	생애설계와 자기진단	한정란(한서대)
16	2	성격유형진단(행동유형진단)	백유미(건양대)
17	2	인간관계 훈련	이현경 박사(장학문화재단)

교육 비용은 2009년은 지원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 온라인강의로 정규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재비 포함 학기당 15만원을 받고 있다. 강사진은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과정 이수 후 이수자들 자체 모임이나 사후 관리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기관에서는 추후 자격증과 연계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중이며, 전문 영역으로 키워 나갈 경우 과정 내용을 수강생의 다양한 연령층과 생애설계 과정 강의 내용 구성시 기본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본 과정에 대한 목적을 돌아보고 어떠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자격증 연계시 전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영역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야 함으로 체계적이고 전문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 6. 기업

기업체는 퇴직이라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이른 시기부터 노후 준비라는 목적 하에 전직 지원, 퇴직 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다. 또한 재정 설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른 영역의 기관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가. KT

KT는 IMF 대량 퇴직이 진행될 때 금전적인 보상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2003년 outplacement 외부 업체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정 기간에만 형식적인 교육이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공식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연계를 진행하였고, 이 부분이 확대되어 현재의 커리어디자인센터의 역할이 되었다. 퇴직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진행된다면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재직자와 종사자 배우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T에서는 고령 사회로의 진행 가운데 평생직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하고자 변화관리 프로그램, 전직 지원 프로그램, 생애설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6〉 변화관리 프로그램

과정	자기혁명 프로젝트	자기혁명	New Business Planning	자기개발 지원
FOCUS	개인변화관리 능력 제고 및 가치 향상	재직자 중심의 개인경력 개발 전직, 퇴직 후의 인생설계	적성에 맞는 직업군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역량개발 지원
운영형태	e-learning	집합(2박 3일)	집합(3박 4일)	자율(외부 집합, e-learning 등)
대상	전사원	전사원(자기혁명 프로젝트 이수자)	전사원	자기 혁명 이수자
주요내용	*비전/목표 설정 *자기혁명지도 작성 *자기장점과 재능발견	*Career Profile *경력설계 *창업마인드 형성 *생애 재무설계	*변화관리 기업가정신 *적성검사, 직업군 탐색 *상권분석(실습) *재취업 시장 동향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마일리지 부여-20만점 *자격증 취득지원-공인증개사 등 *외부 교육 활동

〈표 7-7〉 전직지원 프로그램

과정	전직지원 워크숍	Startup Business(창업 전문교육)	경력설계전략 (재취업 전문교육)	컨설팅 (창업/재취업)
운영형태	집합(1박 2일)	집합(4박 5일)	집합(3박 4일)	1:1 맞춤 컨설팅
장소	도고수련관	인재개발원(대전)	인재개발원(원주)	원하는 장소, 시간
대상	명예퇴직자 (배우자 동반)	퇴직(예정)자 (배우자, 가족 동반)	퇴직(예정)자	창업: 전사원, 가족 재취업: 전직휴직자, 퇴직자
주요내용	*환경변화 관리 *4대보험 이해 *생애 재무설계 *스트레스 관리 *전직지원 안내	*창업 이해 *적성 검사 *적성별 업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분석/입지 선정 *점포 경영 *마케팅 전략	*근무 경력 분석 *역량 분야 도출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작성 *면접 스킬 *네트워크 활용 *구직시장 이해	*창업적성검사 *점포경영 *아이템선정 *상권/입지분석 *구직마케팅 *이력서 작성, 면접전략 *인맥구축, 연봉협상

〈표 7-8〉 생애설계 컨설팅

과정	재무 컨설팅	커리어 코칭	개인성향 진단
운영형태	전사원 대상으로 1:1 맞춤식 컨설팅 비용: 60,000원(마일리지 사용 원칙, 미보유자 분기별 무료 이벤트 이용)		
대상	재직자		
제공방법	1:1 맞춤형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주요내용	*재무상황 진단 및 분석 *운용 상품 선정 및 실행계획	*개인 Needs 분석, 경력설계 *경력개발계획, 개발관리	*성격유형 분석 *개인성향별 특성 진단 *직무연관성 분석

참석 대상은 40대 이상의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와 배우자, 명예퇴직자가 해당되며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교육 기간은 과정별로 상이한데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는 권장 사항이며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수업을 듣기도 한다. E-learning의 경우 기수별 100명 정도 되며, 집합 교육의 경우 기수별 30명, New Business Planning은 기수별 40명씩 진행되고 있다. 참가비용은 모두 무료이며,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정보를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다.

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내에서 과정을 신청하여 듣게 되면 퇴직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인식이 있어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과정 이수 후 창업을 한 경우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전직 지원과 창업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 설계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영역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 컨설팅 업체

전문컨설팅 업체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 창업, 은퇴 후 활동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활동,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IMF 이후 outplacement를 담당하며 성장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컨설팅 업체가 성장하였다. 대부분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직 지원이 초점이 되고 있다.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재취업, 전직 지원에 대한 개념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다양한 대상층에게 해당 영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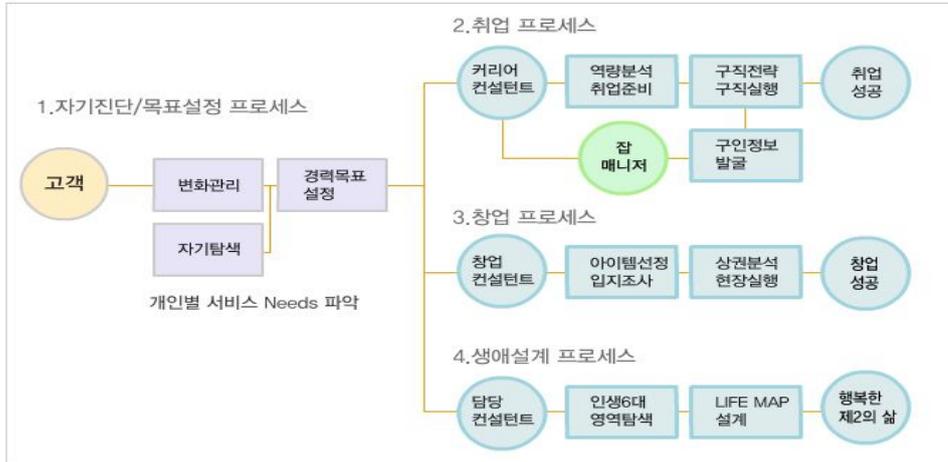
컨설팅 업체에서는 노후 준비 영역을 별도로 전문적 색깔을 가지고 진행하기 보다는 재취업, 전직 지원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안에 노후 준비 관련 내용의 프로그램을 추가 하고 있다.

### 가. JMCareer

JMCareer는 전직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년 출발하여 약 150개 업체와 20,000여명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퇴직에 따른 충격과 환경변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정확한 자기진단을 통해 경력목표를 설정하여 신속한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퇴직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 극복, 개인별 1:1 재무진단, 자산운용법, 건강상태 진단,

운동처방, 직업별 성공사례, 평생직업 찾기, 인간관계 재정립 및 관계증진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에 자기진단 및 목표설정, 취업, 창업, 생애설계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7-1] 전직지원 서비스 진행과정



이 가운데 생애설계 프로세스는 퇴직 후 맞게 되는 변화를 인식, 수용,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바탕으로 생애 설계과정이 이루어진다. 제2의 인생설계인 New Life Master Plan을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인생 6대 영역(재정, 직업, 여가, 건강, 관계, 자아)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과 실질적인 탐색활동을 지원,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생애설계 프로세스를 자세히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7-2] 생애설계 프로세스



참여 대상자는 기업체 우선 접수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체 내 정년 대상자가 교육 대상이다. 온라인 및 기업체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 비용은 기업체와 참여 대상자의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영역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기관은 재취업과 창업인 전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년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컨설팅 업체의 특성인 전직 지원에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준비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생애설계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근로활동에 있어 삶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어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1:1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구성한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outplacement 영역에 노후 준비 관련 내용이 접목 될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 나. KR&C

KR&C HR 컨설팅업체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시작으로 한국최초 컨설팅 방법론인 FCS, KISA 등의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해외컨설팅기관과 업무제휴를 맺고,

컨설팅 방법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며 전직지원 컨설팅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1995년 IBM 퇴직자를 국내기업으로는 최초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공기업, 공사, 금융권 등 각 산업별 국내 최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본 기관의 관련 프로그램은 기업의 합병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자 개개인에게 Job Lead, 맞춤형 구인정보제공, 취업정보제공, 창업정보제공, 창업컨설팅 등과 더불어 평생직업을 찾아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는 전직 지원 서비스 내용이 중심이 되며 그 과정 가운데 노후설계지원서비스 지원으로 노후안전설계, 재테크, 평생직업 설계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9〉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용

진로상담지원서비스	개인의 전문적성진단 및 분석, 희망진로결정 요구조사, 전직, 창업, 독립전문직 교차 상담, 노후설계, 건강, 재테크 등 1:1 개별 상담지원
Career Planning 서비스	나의 인생설계, 나의 Career Map 설계, Career Path 및 Job Location
노후설계지원서비스	노후안전설계, 재테크, 평생직업 설계
가정프로그램	부부전문상담, 자녀상담, 가정변화관리 프로그램
전직지원서비스	Job Lead, 맞춤형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창업지원서비스	창업진단, 아이템탐색, 사업타당성검토, 사업계획, 창업체험, 입지선정, 개업, 정착지원(마케팅전략 수립 등)
공동창업지원서비스	공동창업아이템제공, 사업타당성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개업절차, 아이템별 전문훈련, 인큐베이팅 컨설팅
독립전문직 지원서비스	자격증 및 교육 정보제공, 핵심역량개발 훈련
교육지원서비스	평생직업찾기과정, 핵심역량개발과정, 컨설턴트양성과정, 창업교육, 전직교육, 독립전문직교육, 자격증교육 등
이벤트 지원	각 분야별 최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요구조사에 따른 이벤트 실시, 기타 심리안정을 위한 이벤트 기획 등
Network 지원	동호회 결성 등 커뮤니케이션 활용 지원, 전문가 DB 제공
Hardware 제공	Mobile Office(Booth), Incu Room, 119 Center, 비서지원, 명함, 행정지원

참여 대상자는 주로 기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기업 재직자가 주 대상이며 개별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신청의 경우 주 1회로 한 달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 비용은 컨설턴트의 경력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으나 1회 15~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가 배치되어 종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접수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며 대부분 과정을 이수한다. 개인의 필요여부에 따라 기관 내 개인 사무실을 대여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합한 직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본 기관 역시 컨설팅 업체의 전직 지원 및 종업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설계지원에 대한 영역의 관심으로 일부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영역의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 결과



# 제8장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 결과

## 제1절 조사 개요

전화조사의 표본은 통계청의 2010년도 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비례할당체에 의하여 전국의 45~64세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지역별 표본규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도시(서울 외 6대 광역시)와 각 도의 전화번호부 인명편을 이용하여 확률표본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추출된 45~64세 표본 남녀의 인구비율은 약 5:5로 분포되었다. 남자 45~49세 32.3%(161명), 50~59세 51.5%(257명), 60~64세 16.2%(81명)로 구성되었으며, 여자 45~49세 31.7%(159명), 50~59세 51.1%(256명), 60~64세 17.2%(86명)으로 구성되었다.

전화조사는 조사의 경력이 풍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원 13명을 활용하여 2010년 11월 29일~12월 8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8-1〉 조사대상자의 인구분포 현황

	남자			여자		
	45~49세	50~59세	60~64세	45~49세	50~59세	60~64세
서울특별시	30.0(30)	52.0(52)	18.0(18)	29.9(32)	52.3(56)	17.8(19)
부산광역시	28.2(11)	53.8(21)	17.9(7)	28.6(12)	52.4(22)	19.0(8)
대구광역시	32.0(8)	52.0(43)	16.0(4)	30.8(8)	53.8(14)	15.4(4)
인천광역시	35.7(10)	50.0(14)	14.3(4)	37.0(10)	48.1(13)	14.8(4)
광주광역시	30.8(4)	53.8(7)	15.4(2)	30.8(4)	53.8(7)	15.4(2)
대전광역시	33.3(5)	53.3(8)	15.4(4)	33.3(5)	53.3(8)	13.3(2)
울산광역시	33.3(4)	50.0(6)	16.7(2)	33.3(4)	50.0(6)	16.7(2)
경기도	36.3(41)	50.4(57)	13.3(15)	35.5(38)	49.5(53)	15.0(16)
강원도	31.3(5)	56.3(9)	12.5(2)	31.3(5)	50.0(8)	18.8(3)

〈표 8-1〉 계속

	남자			여자		
	45~49세	50~59세	60~64세	45~49세	50~59세	60~64세
충청북도	33.3(5)	53.3(8)	13.3(2)	33.3(5)	53.3(8)	13.3(2)
충청남도	30.0(6)	50.0(10)	20.0(4)	30.0(6)	50.0(10)	20.0(4)
전라북도	27.8(5)	50.0(9)	22.2(4)	27.8(5)	50.0(9)	22.2(4)
전라남도	31.6(6)	47.4(9)	21.1(4)	27.8(5)	50.0(9)	22.2(4)
경상북도	29.6(8)	51.9(14)	18.5(5)	29.6(8)	51.9(14)	18.5(5)
경상남도	33.3(11)	51.5(17)	15.2(5)	31.3(10)	50.0(16)	18.8(6)
제주도	33.3(2)	50.0(3)	16.7(1)	33.3(4)	50.0(6)	16.7(2)
계	32.3(161)	51.5(257)	16.2(81)	31.7(159)	51.1(256)	17.2(86)

## 제2절 기술통계 결과

### 1. 노후에 관한 인식

〈표 8-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에 관한 인식

	노후에 관한 인식					계	(명)
	훨씬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전체	2.2	24.0	48.6	23.7	1.5	100.0	(1,000)
연령							
45-49세	2.2	26.9	49.1	20.0	1.9	100.0	(320)
50-54세	2.9	22.8	50.7	22.8	0.7	100.0	(276)
55-59세	2.1	21.5	47.3	27.4	1.7	100.0	(237)
60-64세	1.2	24.0	46.1	26.9	1.8	100.0	(167)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1.0	21.5	52.1	25.1	0.3	100.0	(303)
1960-1963년생	4.1	23.2	45.0	25.0	2.7	100.0	(220)
성							
남자	2.6	24.0	45.9	25.3	2.2	100.0	(499)
여자	1.8	24.0	51.3	22.2	0.8	100.0	(501)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0.0	16.7	50.0	31.5	1.9	100.0	(108)
중졸	0.6	24.1	49.4	23.5	2.5	100.0	(162)
고졸	1.9	24.5	47.3	25.0	1.3	100.0	(372)
대졸	3.9	26.1	48.4	20.3	1.3	100.0	(310)
대학원 이상	4.8	23.8	50.0	21.4	0.0	100.0	(42)

〈표 8-2〉 계속

	노후에 관한 인식					계	(명)
	훨씬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가구형태							
1인가구	0.0	25.0	42.5	25.0	7.5	100.0	(40)
부부가구	1.8	22.5	49.5	25.7	0.5	100.0	(218)
부모+미혼자녀	2.0	24.3	48.0	24.0	1.7	100.0	(650)
확대가족	5.6	22.5	55.1	16.9	0.0	100.0	(89)
기타가족	0.0	100.0	0.0	0.0	0.0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0.0	18.8	38.6	37.6	5.0	100.0	(101)
100~199만원	1.3	18.6	51.9	25.6	2.6	100.0	(156)
200~299만원	2.8	19.2	49.8	27.2	0.9	100.0	(213)
300~399만원	1.3	25.1	51.5	21.6	0.4	100.0	(227)
400~499만원	3.4	30.8	44.4	19.7	1.7	100.0	(117)
500만원 이상	3.8	30.4	49.4	15.8	0.6	100.0	(158)

주: 1) 523명 대상  
 2) 무응답 6명 제외  
 3) 무응답 28명 제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48.6%)은 노후의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좋아질 것(24.0%)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나빠질 것(23.7%)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아직 노년기가 멀게 인식되는 젊은 연령층일수록(45-49세) 노후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수준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양극단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홀로 살고 있는 가구이거나 부부 단독 가구인 경우에 비해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확대가족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은 경우 노후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 직업유형별 노후에 관한 인식

	노후에 관한 인식					계	(명)
	훨씬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전체	2.2	24	48.6	23.7	1.5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1.4	27.1	40.0	28.6	2.9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1.8	15.8	59.6	17.5	5.3	100.0	(57)
임금근로자	4.4	21.8	44.4	27.6	1.8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0.0	50.0	38.9	11.1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3.3	16.7	53.3	26.7	0.0	100.0	(30)
자영업자	1.3	26.0	49.9	21.7	1.1	100.0	(373)
주부 취업자	0.0	22.5	60.0	15.0	2.5	100.0	(40)
주부	1.5	22.4	50.7	25.4	0.0	100.0	(134)
무직	0.0	66.7	33.3	0.0	0.0	100.0	(3)

직업유형별로 임금근로자들은 노후 생활수준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4%로 가장 높은 동시에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27.6%로 높게 나타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엇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퇴직자들의 경우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노후준비 중요도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결과는 아래 〈표 8-4〉에서부터 〈표 8-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들 표는 연령집단별, 출생연도(전기 및 후기 베이비붐 구분)와 성별, 교육수준별, 가구형태별, 월수입별로 각 영역별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뚜렷한 인식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50대 이후의 연령층에 비해 45~49세 집단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와 건강 노후준비 그리고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와 건강에 대한 노후준

비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제와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집단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집단별로 다소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년기에 보다 인접한 전기베이비부머(1955년~1959년 출생)가 후기베이비부머에 비해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구형태의 경우 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구형태가 노후준비에 대한 각 영역별 중요도 인식을 좌우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이지 않으며 월수입의 경우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상의 중상층이 월소득이 적은 집단에 비해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의 중요도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8-4〉 연령별 노후준비 중요도

	전체	연령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경제					
매우 중요하다	68.7	70.3	68.5	67.1	68.3
중요하다	26.2	25.3	26.8	27.0	25.7
보통이다	5.1	4.4	4.7	5.9	6.0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건강					
매우 중요하다	80.9	82.2	81.2	79.7	79.6
중요하다	18.0	17.5	18.1	19.0	17.4
보통이다	1.1	0.3	0.7	1.3	3.0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가					
매우 중요하다	27.2	32.5	25.0	24.1	25.1
중요하다	53.7	49.7	57.2	57.8	49.7
보통이다	17.0	16.6	16.7	15.6	20.4
중요하지 않다	1.7	0.6	1.1	2.5	3.6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0.6	0.0	0.0	1.2

〈표 8-4〉 계속

	전체	연령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매우 중요하다	20.2	20.3	21.0	17.3	22.8
중요하다	54.2	54.1	54.0	55.3	53.3
보통이다	21.0	21.6	21.7	21.9	17.4
중요하지 않다	4.3	3.8	3.3	5.1	6.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0.3	0.0	0.4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320)	(276)	(237)	(167)

〈표 8-5〉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 중요도

	전체	출생연도		전체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경제						
매우 중요하다	70.6	70.3	70.9	68.7	65.1	72.3
중요하다	24.9	25.4	24.1	26.2	28.1	24.4
보통이다	4.6	4.3	5.0	5.1	6.8	3.4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건강						
매우 중요하다	82.4	81.2	84.1	80.9	78.6	83.2
중요하다	17.0	18.2	15.5	18.0	20.2	15.8
보통이다	0.6	0.7	0.5	1.1	1.2	1.0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여가						
매우 중요하다	27.3	23.4	32.7	27.2	27.9	26.5
중요하다	55.3	58.7	50.5	53.7	51.9	55.5
보통이다	15.9	16.2	15.5	17.0	17.6	16.4
중요하지 않다	1.1	1.7	0.5	1.7	2.2	1.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0.0	0.9	0.4	0.4	0.4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매우 중요하다	20.1	20.5	19.5	20.2	20.2	20.2
중요하다	54.7	55.4	53.6	54.2	52.7	55.7
보통이다	22.0	21.1	23.2	21.0	21.2	20.8
중요하지 않다	3.1	3.0	3.2	4.3	5.4	3.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2	0.0	0.5	0.3	0.4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23)	(303)	(220)	(1,000)	(499)	(501)

〈표 8-6〉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중요도

	전체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b>경제</b>						
매우 중요하다	68.9	62.0	64.8	72.8	67.7	76.2
중요하다	26.0	31.5	27.2	23.9	26.5	21.4
보통이다	5.1	6.5	8.0	3.2	5.8	2.4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b>건강</b>						
매우 중요하다	80.9	71.3	82.1	83.9	79.4	85.7
중요하다	18.0	26.9	16.7	15.1	20.0	11.9
보통이다	1.1	1.9	1.2	1.1	0.6	2.4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b>여가</b>						
매우 중요하다	27.3	19.4	25.3	27.7	28.7	40.5
중요하다	53.5	50.9	51.9	51.3	58.4	50.0
보통이다	17.1	23.1	19.8	19.1	12.3	9.5
중요하지 않다	1.7	4.6	2.5	1.6	0.6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1.9	0.6	0.3	0.0	0.0
<b>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b>						
매우 중요하다	20.2	15.7	20.4	21.5	18.7	31.0
중요하다	54.2	59.3	54.3	51.1	55.5	59.5
보통이다	21.0	17.6	19.8	23.9	21.6	4.8
중요하지 않다	4.2	6.5	5.6	3.5	3.5	4.8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0.9	0.0	0.0	0.6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4)	(108)	(162)	(372)	(310)	(42)

〈표 8-7〉 가구형태별 노후준비 중요도

	전체	가구형태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 미혼자녀	확대가족	기타가족
<b>경제</b>						
매우 중요하다	68.7	70.0	66.1	70.0	67.4	0.0
중요하다	26.2	22.5	27.1	25.4	30.3	66.7
보통이다	5.1	7.5	6.9	4.6	2.2	33.3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표 8-7〉 계속

	전체	가구형태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 미혼자녀	확대가족	기타가족
건강						
매우 중요하다	80.9	77.5	78.9	83.1	74.2	0.0
중요하다	18.0	20.0	18.3	16.6	24.7	66.7
보통이다	1.1	2.5	2.8	0.3	1.1	33.3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여가						
매우 중요하다	27.2	20.0	24.8	27.5	34.8	0.0
중요하다	53.7	60.0	56.9	52.3	52.8	66.7
보통이다	17.0	17.5	16.5	18.3	9.0	0.0
중요하지 않다	1.7	0.0	1.4	1.7	3.4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4	2.5	0.5	0.2	0.0	33.3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매우 중요하다	20.2	17.5	18.8	20.8	21.3	0.0
중요하다	54.2	52.5	56.0	53.8	52.8	66.7
보통이다	21.0	25.0	19.3	20.9	24.7	0.0
중요하지 않다	4.3	5.0	6.0	4.2	1.1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0.0	0.0	0.3	0.0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40)	(218)	(650)	(89)	(3)

〈표 8-8〉 월수입별 노후준비 중요도

	전체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경제							
매우 중요하다	68.5	58.4	60.9	70.4	70.5	76.9	70.9
중요하다	26.3	28.7	32.7	24.9	25.1	20.5	26.6
보통이다	5.1	12.9	6.4	4.7	4.4	2.6	2.5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건강							
매우 중요하다	80.9	68.3	81.4	83.1	81.9	84.6	82.9
중요하다	18.0	26.7	16.7	16.0	17.6	15.4	17.1
보통이다	1.1	5.0	1.9	0.9	0.4	0.0	0.0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표 8-8〉 계속

	전체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여가							
매우 중요하다	27.5	17.8	22.4	28.2	26.4	31.6	36.1
중요하다	53.5	57.4	51.9	48.4	59.0	55.6	50.0
보통이다	17.1	19.8	21.8	21.1	13.2	12.8	13.9
중요하지 않다	1.6	3.0	3.8	1.9	1.3	0.0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3	2.0	0.0	0.5	0.0	0.0	0.0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매우 중요하다	20.2	10.9	21.2	21.1	20.3	24.8	20.3
중요하다	53.9	63.4	52.6	52.6	56.4	46.2	53.2
보통이다	21.4	22.8	19.9	21.6	19.4	24.8	22.2
중요하지 않다	4.3	3.0	6.4	4.7	4.0	4.3	3.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2	0.0	0.0	0.0	0.0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72)	(101)	(156)	(213)	(227)	(117)	(158)

다음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을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퇴직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과 재취업한 주부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 노년기 진입 직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 수준은 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확연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유형에 따라 건강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차별화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퇴직 및 재취업한 사람들의 경우 여가에 대한 준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후 여가에 대한 준비에 있어 종사 직종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생애 동안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여가를 접하거나 즐길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 필요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생애 동안 자율적인 시간선용이 상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노후 여가에 대한 사전적 준비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후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의 중요도 인식은 주부 취업자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및 퇴직자) 또는 자영업자(및 퇴직자)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아예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주부의 경우 중요도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8-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경제)

	노후준비 중요도(경제)			계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전체	68.7	26.2	5.1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58.6	38.6	2.9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66.7	21.1	12.3	100.0	(57)
임금근로자	68.4	26.5	5.1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77.8	22.2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70.0	23.3	6.7	100.0	(30)
자영업자	68.6	26.8	4.6	100.0	(373)
주부 취업자	82.5	12.5	5.0	100.0	(40)
주부	70.1	25.4	4.5	100.0	(134)
무직	66.7	0.0	33.3	100.0	(3)

〈표 8-10〉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건강)

	노후준비 중요도(건강)			계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전체	80.9	18.0	1.1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75.7	24.3	0.0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87.7	8.8	3.5	100.0	(57)
임금근로자	77.8	21.8	0.4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83.3	16.7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83.3	16.7	0.0	100.0	(30)
자영업자	83.1	15.5	1.3	100.0	(373)
주부 취업자	82.5	17.5	0.0	100.0	(40)
주부	80.6	17.9	1.5	100.0	(134)
무직	33.3	33.3	33.3	100.0	(3)

〈표 8-1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여가)

	노후준비 중요도(여가)					계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체	27.2	53.7	17	1.7	0.4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4.3	57.1	17.1	1.4	0.0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33.3	43.9	19.3	3.5	0.0	100.0	(57)
임금근로자	29.8	55.6	12.0	2.2	0.4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22.2	44.4	27.8	5.6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23.3	46.7	26.7	3.3	0.0	100.0	(30)
자영업자	26.5	52.8	19.3	1.1	0.3	100.0	(373)
주부 취업자	27.5	50.0	22.5	0.0	0.0	100.0	(40)
주부	24.6	57.5	14.9	1.5	1.5	100.0	(134)
무직	0.0	100.0	0.0	0.0	0.0	100.0	(3)

〈표 8-12〉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중요도(사회참여)

	노후준비 중요도(사회참여)					계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체	20.2	54.2	21.0	4.3	0.3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0.0	54.3	15.7	10.0	0.0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14.0	56.1	24.6	5.3	0.0	100.0	(57)
임금근로자	18.5	54.5	22.5	3.6	0.7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16.7	50.0	27.8	5.6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23.3	43.3	23.3	10.0	0.0	100.0	(30)
자영업자	22.5	54.4	18.8	4.3	0.0	100.0	(373)
주부 취업자	25	57.5	17.5	0.0	0.0	100.0	(40)
주부	18.7	53.7	24.6	2.2	0.7	100.0	(134)
무직	0.0	66.7	33.3	0.0	0.0	100.0	(3)

### 3. 노후준비 정도

〈표 8-13〉 부터 〈표 8-21〉 은 실제로 조사대상자가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

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못하고 있다’ ‘아예 못하고 있다’ 등 5점 척도로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라기보다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측정한 것이다.

〈표 8-13〉은 연령집단별로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를 보여주는데, 경제적 노후준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45~49세 또는 50~54세가 노년기에 보다 인접한 55~59세 또는 60~64세에 비해 준비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년기에 보다 인접한 연령 집단의 경우 경제적인 노후준비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안감이 커서 준비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도 경제적 노후준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55~59세와 60~64세 집단이 45~49세 및 50~54세에 비해 준비 정도가 부족한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낮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는 45~49세의 준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54세가 가장 준비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역시 45~49세가 가장 준비 정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한편 55~59세와 60~64세를 비교해 보면 60~64세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와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의 정도는 55~59세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 정도는 높은 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60~64세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60~64세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표 8-13〉 연령별 노후준비도

	전체	연령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5	4.4	6.2	5.5	6.6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0.4	34.1	33.3	27.4	22.8
보통이다	31.9	35.0	29.7	31.6	29.9
거의 못하고 있다	26.9	21.6	26.4	28.7	35.3
아예 못하고 있다	5.3	5.0	4.3	6.8	5.4

〈표 8-13〉 계속

	전체	연령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b>건강</b>					
충분히 하고 있다	7.4	6.9	9.1	6.3	7.2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2	44.4	34.4	38.8	37.7
보통이다	32.1	32.5	35.1	30.0	29.3
거의 못하고 있다	18.2	14.1	18.5	21.1	21.6
아예 못하고 있다	3.1	2.2	2.9	3.8	4.2
<b>여가</b>					
충분히 하고 있다	4.2	4.4	2.9	6.3	3.0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4.8	25.3	25.0	22.8	26.3
보통이다	29.6	32.8	30.1	27.8	25.1
거의 못하고 있다	35.4	32.5	38.8	34.2	37.1
아예 못하고 있다	6.0	5.0	3.3	8.9	8.4
<b>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b>					
충분히 하고 있다	4.1	3.8	6.5	3.0	2.4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0.4	22.5	20.3	15.6	23.4
보통이다	22.8	25.6	25.4	22.4	13.8
거의 못하고 있다	43.0	39.1	41.3	46.4	48.5
아예 못하고 있다	9.7	9.1	6.5	12.7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320)	(276)	(237)	(167)

〈표 8-14〉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도

	전체	출생연도		전체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b>경제</b>						
충분히 하고 있다	5.2	5.6	4.5	5.5	4.8	6.2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3.7	31.7	36.4	30.4	31.5	29.3
보통이다	29.8	29.4	30.5	31.9	33.9	29.9
거의 못하고 있다	26.4	28.7	23.2	26.9	25.3	28.5
아예 못하고 있다	5.0	4.6	5.5	5.3	4.6	6.0
<b>건강</b>						
충분히 하고 있다	8.0	7.6	8.6	7.4	9.4	5.4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0	35.3	44.1	39.2	41.5	36.9
보통이다	33.5	35.0	31.4	32.1	31.9	32.3
거의 못하고 있다	17.0	19.5	13.6	18.2	15.0	21.4
아예 못하고 있다	2.5	2.6	2.3	3.1	2.2	4.0

〈표 8-14〉 계속

	전체	출생년도		전체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0	3.6	4.5	4.2	4.0	4.4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3.1	24.1	21.8	24.8	26.3	23.4
보통이다	31.5	28.1	36.4	29.6	32.5	26.7
거의 못하고 있다	36.1	39.3	31.8	35.4	33.1	37.7
아예 못하고 있다	5.2	5.0	5.5	6.0	4.2	7.8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5.4	5.0	5.9	4.1	3.8	4.4
어느 정도 하고 있다	19.3	18.8	20.0	20.4	19.8	21.0
보통이다	26.2	24.4	28.6	22.8	26.3	19.4
거의 못하고 있다	41.7	45.2	36.8	43.0	42.1	43.9
아예 못하고 있다	7.5	6.6	8.6	9.7	8.0	1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23)	(303)	(220)	(1,000)	(499)	(501)

특별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조사대상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에 대한 준비 정도가 후기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종합해 보면 1955~1959년 출생 집단인 전기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960~1963년 출생집단인 후기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로 분석해 보면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준비도가 다소 낮지만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50.9%가 건강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해당 비율이 42.3%에 불과하다. 반대로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남성은 17.2%에 불과한 반면 여성의 경우 25.4%에 달한다. 노후 여가준비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은 27.8%, 남성은 30.3%인 반면 거의 못하고 있는 여성은 45.5%, 남성은 37.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가 준비도가 현격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의 경우 여성의 25.4%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반면 55.3%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50.1%에 비해 높다.

〈표 8-15〉는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정도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가 높다.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졸 이상 중에서는 22.0%, 대학원 이상 중에서는 19.0%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들 중에서는 55.6%로서 과반수 이상이 노후 경제적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수준에 따른 노후준비의 편차는 여가영역과 사회참여영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즉 대졸 이상의 29.3%, 대학원졸 이상의 28.6%가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반면 초졸이하 졸업자의 60.2%가 노후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사회참여 준비의 경우 초졸이하의 저학력자 가운데 70.4%가 거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15〉 교육수준별 노후준비도

	전체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5	3.7	3.1	4.0	8.7	9.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0.6	16.7	29.6	32.3	33.9	31.0
보통이다	31.7	24.1	24.1	33.1	35.5	40.5
거의 못하고 있다	26.9	42.6	35.8	26.3	19.4	11.9
아예 못하고 있다	5.3	13.0	7.4	4.3	2.6	7.1
건강						
충분히 하고 있다	7.2	5.6	3.7	6.7	10.0	9.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3	27.8	30.9	44.6	42.3	33.3
보통이다	32.2	25.9	34.0	29.8	35.2	40.5
거의 못하고 있다	18.2	31.5	26.5	16.9	11.9	9.5
아예 못하고 있다	3.0	9.3	4.9	1.9	0.6	7.1

〈표 8-15〉 계속

	전체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2	2.8	2.5	3.2	5.8	11.9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4.7	15.7	21.6	24.5	28.4	35.7
보통이다	29.6	21.3	19.8	31.2	36.5	23.8
거의 못하고 있다	35.4	46.3	44.4	36.0	27.7	23.8
아예 못하고 있다	6.0	13.9	11.7	5.1	1.6	4.8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4.0	3.7	2.5	3.0	5.2	11.9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0.5	13.0	16.7	21.0	24.5	21.4
보통이다	22.8	13.0	17.9	24.2	28.4	14.3
거의 못하고 있다	42.9	52.8	48.8	43.0	35.8	45.2
아예 못하고 있다	9.8	17.6	14.2	8.9	6.1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4)	(108)	(162)	(372)	(310)	(42)

가구 형태별로 노후준비의 정도를 살펴보면 타 가구형태에 비해 1인가구가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인가구의 경우 60.0%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으며 55.0%가 노후 여가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으며 60.0%가 노후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 결과 1인가구 역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집단’으로 보인다. 〈표 8-17〉은 소득수준별 노후준비도를 보여주는데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전 영역에 걸쳐 노후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전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표 8-16〉 가구형태별 노후준비도

	전체	가구형태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 미혼자녀	확대가족	기타가족
<b>경제</b>						
충분히 하고 있다	5.5	2.5	8.3	4.8	5.6	0.0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0.4	22.5	26.1	31.8	33.7	33.3
보통이다	31.9	15.0	34.4	32.2	31.5	33.3
거의 못하고 있다	26.9	50.0	25.2	26.2	25.8	33.3
아예 못하고 있다	5.3	10.0	6.0	5.1	3.4	0.0
<b>건강</b>						
충분히 하고 있다	7.4	2.5	7.8	7.7	6.7	0.0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2	32.5	38.1	40.0	39.3	33.3
보통이다	32.1	32.5	31.2	32.0	36.0	0.0
거의 못하고 있다	18.2	27.5	19.7	17.1	18.0	33.3
아예 못하고 있다	3.1	5.0	3.2	3.2	0.0	33.3
<b>여가</b>						
충분히 하고 있다	4.2	2.5	6.0	3.4	6.7	0.0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4.8	15.0	27.1	24.2	27.0	66.7
보통이다	29.6	27.5	26.1	31.4	27.0	0.0
거의 못하고 있다	35.4	47.5	34.4	34.9	37.1	0.0
아예 못하고 있다	6.0	7.5	6.4	6.2	2.2	33.3
<b>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b>						
충분히 하고 있다	4.1	0.0	5.0	4.0	3.4	33.3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0.4	25.0	21.1	20.8	13.5	33.3
보통이다	22.8	15.0	19.3	24.5	23.6	0.0
거의 못하고 있다	43.0	50.0	44.0	40.9	53.9	0.0
아예 못하고 있다	9.7	10.0	10.6	9.8	5.6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40)	(218)	(650)	(89)	(3)

〈표 8-17〉 월수입별 노후준비도

	전체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b>경제</b>							
충분히 하고 있다	5.5	1.0	3.2	2.3	3.1	6.8	17.1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0.6	11.9	18.6	22.1	36.1	47.9	44.9
보통이다	31.7	14.9	27.6	38.0	38.3	30.8	29.1
거의 못하고 있다	26.9	54.5	40.4	33.3	19.4	13.7	7.6
아예 못하고 있다	5.5	17.8	10.3	4.2	3.1	0.9	1.3

〈표 8-17〉 계속

	전체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b>건강</b>							
충분히 하고 있다	7.5	2.0	8.3	5.2	7.0	7.7	13.9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8.9	20.8	25.0	35.7	47.6	49.6	48.1
보통이다	32.3	26.7	31.4	37.6	33.9	30.8	28.5
거의 못하고 있다	18.3	42.6	28.8	18.8	9.7	12.0	8.9
아예 못하고 있다	3.0	7.9	6.4	2.8	1.8	0.0	0.6
<b>여가</b>							
충분히 하고 있다	4.3	1.0	3.2	2.3	4.8	3.4	10.1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4.6	10.9	17.9	18.3	27.3	29.1	41.1
보통이다	29.5	17.8	19.9	32.4	33.0	42.7	27.8
거의 못하고 있다	35.6	53.5	47.4	40.4	33.0	23.9	18.4
아예 못하고 있다	6.0	16.8	11.5	6.6	1.8	0.9	2.5
<b>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b>							
충분히 하고 있다	4.2	0.0	2.6	2.3	5.7	5.1	8.2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0.6	12.9	15.4	18.3	19.8	25.6	31.0
보통이다	22.9	10.9	14.1	26.3	26.0	30.8	24.7
거의 못하고 있다	42.6	57.4	51.9	45.1	40.1	34.2	30.4
아예 못하고 있다	9.7	18.8	16.0	8.0	8.4	4.3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72)	(101)	(156)	(213)	(227)	(117)	(158)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정도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임금근로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자영업자(또는 자영업 퇴직자)의 경우 임금근로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낮다. 이러한 점은 직종별로 보았을 때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가 경제적 노후준비의 측면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특성이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직업유형별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근로자의 45.1%가 노후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53.7%에 달해 자영업자 중 노후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18〉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경제)

	노후준비 중요도(경제)					계	(명)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못하고 있다	아예 못하고 있다		
전체	5.5	30.4	31.9	26.9	5.3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7.1	20.0	32.9	32.9	7.1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8.8	19.3	35.1	26.3	10.5	100.0	(57)
임금근로자	7.3	36.4	37.1	15.3	4.0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0.0	22.2	33.3	44.4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0.0	20.0	36.7	36.7	6.7	100.0	(30)
자영업자	4.3	31.9	27.6	31.1	5.1	100.0	(373)
주부 취업자	2.5	27.5	35.0	27.5	7.5	100.0	(40)
주부	6.0	27.6	29.9	31.3	5.2	100.0	(134)
무직	0.0	66.7	0.0	33.3	0.0	100.0	(3)

〈표 8-1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건강)

	노후준비 중요도(건강)					계	(명)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못하고 있다	아예 못하고 있다		
전체	7.4	39.2	32.1	18.2	3.1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5.7	38.6	31.4	22.9	1.4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10.5	33.3	33.3	17.5	5.3	100.0	(57)
임금근로자	6.5	46.5	34.2	12.0	0.7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16.7	27.8	22.2	33.3	0.0	100.0	(18)
자영업 퇴직자	6.7	33.3	33.3	23.3	3.3	100.0	(30)
자영업자	9.1	35.4	31.1	21.2	3.2	100.0	(373)
주부 취업자	2.5	40.0	37.5	15.0	5.0	100.0	(40)
주부	4.5	39.6	30.6	17.9	7.5	100.0	(134)
무직	0.0	66.7	0.0	33.3	0.0	100.0	(3)

〈표 8-20〉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여가)

	노후준비 중요도(여가)					계	(명)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못하고 있다	아예 못하고 있다		
전체	4.2	24.8	29.6	35.4	6.0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4.3	21.4	28.6	42.9	2.9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7.0	15.8	31.6	38.6	7.0	100.0	(57)
임금근로자	4.0	29.8	38.9	25.8	1.5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0.0	5.6	44.4	44.4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3.3	26.7	33.3	33.3	3.3	100.0	(30)
자영업자	3.8	24.4	22.0	40.8	9.1	100.0	(373)
주부 취업자	5.0	22.5	35.0	32.5	5.0	100.0	(40)
주부	5.2	23.1	27.6	35.1	9.0	100.0	(134)
무직	0.0	66.7	0.0	33.3	0.0	100.0	(3)

〈표 8-2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도(사회참여)

	노후준비 중요도(사회참여)					계	(명)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정도 하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못하고 있다	아예 못하고 있다		
전체	4.1	20.4	22.8	43.0	9.7	1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9	21.4	18.6	48.6	8.6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0.0	17.5	26.3	42.1	14.0	100.0	(57)
임금근로자	4.7	21.1	29.1	38.9	6.2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0.0	16.7	5.6	72.2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6.7	16.7	20.0	46.7	10.0	100.0	(30)
자영업자	4.6	20.9	20.9	44.0	9.7	100.0	(373)
주부 취업자	2.5	37.5	25.0	27.5	7.5	100.0	(40)
주부	4.5	13.4	18.7	46.3	17.2	100.0	(134)
무직	0.0	66.7	0.0	33.3	0.0	100.0	(3)

#### 4. 노후준비 시기

〈표 8-22〉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했는지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43.8%는 40대부터 시작했으며 30대부터 시작한 사람이 28.9%, 50대부

터 시작한 사람들의 비율이 17.0%로 다수의 사람들은 40대부터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찍부터 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이른 나이에 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와 마찬가지로 다수(49.0%)의 응답자가 40대에 시작했으며 50대에 시작한 비율이 25.4%, 30대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더 일찍부터 시작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찍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는 50.2%가 40대에 시작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50대가 27.6%, 30대가 14.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더 일찍부터 노후에 대한 여가준비를 시작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른 연령대부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다. 예컨대 대졸자의 23.7%,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43.3%가 30대 이전부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형태의 경우 부부가구에 비해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거나 확대가족에 거주하는 경우 여가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에도 타 가구형태에 비해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자의 경우 20대 또는 30대부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199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미리부터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임금근로자(또는 퇴직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미리부터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자원봉사활동 등 노년기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46.1%는 40대에 준비를 시작했으며 25.4%는 50대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후기베이비붐 세대일수록 30대 이전에 노후준비를 시작한 비율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대 이전에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경우 타 영역과 달리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30대 이

전에 사회참여에 관한 노후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의 비율이 중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타 영역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노후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종사자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표 8-2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경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명)
전체	8.6	28.9	43.8	17.0	1.8	100.0	(678)
연령							
45-49세	8.9	46.8	44.3	0.0	0.0	100.0	(235)
50-54세	7.3	26.7	51.8	13.6	0.5	100.0	(191)
55-59세	8.5	14.4	43.8	33.3	0.0	100.0	(153)
60-64세	10.1	13.1	27.3	38.4	11.1	100.0	(99)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8.9	22.3	49.5	19.3	0.0	100.0	(202)
1960-1963년생	6.4	37.6	54.1	1.3	0.6	100.0	(157)
성							
남자	10.6	29.7	40.0	18.0	1.7	100.0	(350)
여자	6.4	28.0	47.9	15.9	1.8	100.0	(328)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4.2	16.7	31.3	37.5	10.4	100.0	(48)
중졸	1.1	17.4	53.3	26.1	2.2	100.0	(92)
고졸	6.6	31.0	43.4	17.4	1.6	100.0	(258)
대졸	12.8	33.9	43.4	9.5	0.4	100.0	(242)
대학원 이상	20.6	26.5	44.1	8.8	0.0	100.0	(34)
가구형태							
1인가구	6.3	31.3	56.3	6.3	0.0	100.0	(16)
부부가구	11.3	14.7	34.7	34.7	4.7	100.0	(150)
부모+미혼자녀	7.2	33.3	47.0	11.6	0.9	100.0	(447)
확대가족	11.1	30.2	41.3	15.9	1.6	100.0	(63)
기타가족	50.0	50.0	0.0	0.0	0.0	100.0	(2)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7.1	10.7	53.6	25.0	3.6	100.0	(28)
100~199만원	5.2	23.4	31.2	33.8	6.5	100.0	(77)
200~299만원	5.3	25.6	48.9	18.8	1.5	100.0	(133)
300~399만원	6.3	33.0	44.3	14.8	1.7	100.0	(176)
400~499만원	9.0	37.0	43.0	10.0	1.0	100.0	(100)
500만원 이상	17.4	29.9	43.8	9.0	0.0	100.0	(144)

주: 1) 359명

2) 674명

3) 658명

〈표 8-23〉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경제)

	노후준비시기(경제)					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8.6	28.9	43.8	17.0	1.8	100	(678)
임금근로 재취업자	16.7	19.0	38.1	23.8	2.4	100.0	(42)
임금근로 퇴직자	5.6	36.1	30.6	27.8	0.0	100.0	(36)
임금근로자	13.5	32.0	44.6	9.9	0.0	100.0	(222)
자영업 재취업자	0.0	40.0	50.0	10.0	0.0	100.0	(10)
자영업 퇴직자	5.9	35.3	29.4	29.4	0.0	100.0	(17)
자영업자	3.4	27.7	49.2	16.4	3.4	100.0	(238)
주부 취업자	7.7	26.9	46.2	15.4	3.8	100.0	(26)
주부	8.2	24.7	36.5	28.2	2.4	100.0	(85)
무직	50.0	0.0	50.0	0.0	0.0	100.0	(2)

〈표 8-2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건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타	계	(명)
전체	5.6	17.5	49.0	25.4	2.0	0.4	100.0	(787)
연령								
45-49세	7.5	29.9	61.2	1.5	0.0	0.0	100.0	(268)
50-54세	4.6	13.8	58.5	23.0	0.0	0.0	100.0	(217)
55-59세	3.4	10.7	39.3	46.1	0.0	0.6	100.0	(178)
60-64세	6.5	7.3	20.2	51.6	12.9	1.6	100.0	(124)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4.7	14.0	50.8	30.5			100.0	(236)
1960-1963년생	5.9	21.1	70.3	2.7			100.0	(185)
성								
남자	6.8	20.1	47.9	23.5	1.5	0.2	100.0	(413)
여자	4.3	14.7	50.3	27.5	2.7	0.5	100.0	(374)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0.0	7.8	39.1	45.3	7.8	0.0	100.0	(64)
중졸	0.9	14.4	43.2	37.8	3.6	0.0	100.0	(111)
고졸	4.6	16.6	48.0	27.5	2.3	1.0	100.0	(302)
대졸	10.3	22.1	53.5	14.0	0.0	0.0	100.0	(271)
대학원 이상	2.9	20.0	60.0	17.1	0.0	0.0	100.0	(35)
가구형태								
1인가구	3.7	22.2	44.4	25.9	3.7	0.0	100.0	(27)
부부가구	7.7	8.3	34.5	42.9	6.0	0.6	100.0	(168)
부모+미혼자녀	4.8	20.3	53.7	19.9	1.0	0.4	100.0	(518)
확대가족	5.5	17.8	52.1	24.7	0.0	0.0	100.0	(73)
기타가족	100.0	0.0	0.0	0.0	0.0	0.0	100.0	(1)

〈표 8-24〉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타	계	(명)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6.0	14.0	36.0	38.0	6.0	0.0	100.0	(50)
100~199만원	3.0	9.9	32.7	45.5	6.9	2.0	100.0	(101)
200~299만원	4.8	16.8	52.1	24.0	2.4	0.0	100.0	(167)
300~399만원	5.5	20.9	47.8	24.4	1.0	0.5	100.0	(201)
400~499만원	3.9	17.5	60.2	18.4	0.0	0.0	100.0	(103)
500만원 이상	10.5	21.7	54.5	13.3	0.0	0.0	100.0	(143)

주: 1) 421명 대상  
 2) 783명 대상  
 3) 765명 대상

〈표 8-25〉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건강)

	노후준비시기(건강)						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타		
전체	5.6	17.5	49.0	25.4	2.0	0.4	100	(787)
임금근로 재취업자	5.7	15.1	49.1	28.3	1.9	0.0	100.0	(53)
임금근로 퇴직자	11.4	13.6	38.6	34.1	2.3	0.0	100.0	(44)
임금근로자	6.3	19.6	57.5	16.3	0.4	0.0	100.0	(240)
자영업 재취업자	16.7	25.0	41.7	8.3	0.0	8.3	100.0	(12)
자영업 퇴직자	0.0	13.6	45.5	36.4	0.0	4.5	100.0	(22)
자영업자	4.6	18.1	46.1	28.4	2.8	0.0	100.0	(282)
주부 취업자	3.1	28.1	46.9	18.8	3.1	0.0	100.0	(32)
주부	4.0	11.0	44.0	36.0	4.0	1.0	100.0	(100)
무직	50.0	0.0	50.0	0.0	0.0	0.0	100.0	(2)

〈표 8-2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명)
전체	5.1	14.0	50.2	27.6	3.1	100.0	(586)
연령							
45-49세	6.5	24.5	68.0	1.0	0.0	100.0	(200)
50-54세	3.8	13.8	56.9	25.6	0.0	100.0	(160)
55-59세	5.2	5.9	37.0	49.6	2.2	100.0	(135)
60-64세	4.4	3.3	18.7	57.1	16.5	100.0	(91)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4.1	11.8	49.7	33.1	1.2	100.0	(169)
1960-1963년생	2.9	19.6	76.1	1.4	0.0	100.0	(138)
성							
남자	5.4	16.0	50.2	25.6	2.9	100.0	(313)
여자	4.8	11.7	50.2	30.0	3.3	100.0	(273)

〈표 8-26〉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명)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2.3	7.0	32.6	48.8	9.3	100.0	(43)
중졸	0.0	11.3	36.6	45.1	7.0	100.0	(71)
고졸	3.7	12.3	48.9	31.5	3.7	100.0	(219)
대졸	8.2	15.5	59.8	16.0	0.5	100.0	(219)
대학원 이상	10.0	33.3	46.7	10.0	0.0	100.0	(30)
가구형태							
1인가구	11.1	22.2	33.3	33.3	0.0	100.0	(18)
부부가구	4.7	4.7	31.8	49.6	9.3	100.0	(129)
부모+미혼자녀	4.7	15.9	57.7	20.6	1.0	100.0	(383)
확대가족	5.6	18.5	48.1	24.1	3.7	100.0	(54)
기타가족	50.0	50.0	0.0	0.0	0.0	100.0	(2)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6.7	6.7	23.3	56.7	6.7	100.0	(30)
100~199만원	4.7	9.4	26.6	48.4	10.9	100.0	(64)
200~299만원	4.4	10.6	54.9	27.4	2.7	100.0	(113)
300~399만원	4.1	16.9	50.0	25.7	3.4	100.0	(148)
400~499만원	2.3	13.6	64.8	19.3	0.0	100.0	(88)
500만원 이상	9.6	17.6	56.8	16.0	0.0	100.0	(125)

주: 1) 421명 대상  
 2) 582명 대상  
 3) 765명 대상

〈표 8-27〉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여가)

	노후준비시기(여가)					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5.1	14.0	50.2	27.6	3.1	100	(678)
임금근로 재취업자	7.9	13.2	47.4	26.3	5.3	100.0	(38)
임금근로 퇴직자	0.0	12.9	45.2	38.7	3.2	100.0	(31)
임금근로자	7.0	18.5	56.0	17.5	1.0	100.0	(200)
자영업 재취업자	0.0	22.2	33.3	44.4	0.0	100.0	(9)
자영업 퇴직자	5.3	10.5	36.8	42.1	5.3	100.0	(19)
자영업자	3.2	11.2	50.3	32.1	3.2	100.0	(187)
주부 취업자	4.0	20.0	60.0	12.0	4.0	100.0	(25)
주부	5.3	8.0	40.0	40.0	6.7	100.0	(75)
무직	50.0	0.0	50.0	0.0	0.0	100.0	(2)

〈표 8-2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시기(사회참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명)
전체	7.6	17.5	46.1	25.4	3.4	100.0	(473)
연령							
45-49세	9.0	27.7	61.4	1.8	0.0	100.0	(166)
50-54세	6.3	14.6	47.9	30.6	0.7	100.0	(144)
55-59세	9.3	10.3	38.1	39.2	3.1	100.0	(97)
60-64세	4.5	9.1	15.2	53.0	18.2	100.0	(66)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6.8	14.4	40.4	37.7	0.7	100.0	(146)
1960-1963년생	6.7	19.2	70.8	2.5	0.8	100.0	(120)
성							
남자	6.8	17.3	45.0	26.9	4.0	100.0	(249)
여자	8.5	17.9	47.3	23.7	2.7	100.0	(224)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3.1	18.8	21.9	37.5	18.8	100.0	(32)
중졸	1.7	13.3	45.0	33.3	6.7	100.0	(60)
고졸	7.8	16.8	45.8	26.8	2.8	100.0	(179)
대졸	10.6	19.4	50.0	19.4	0.6	100.0	(180)
대학원 이상	5.0	20.0	55.0	20.0	0.0	100.0	(20)
가구형태							
1인가구	6.3	37.5	18.8	37.5	0.0	100.0	(16)
부부가구	10.1	9.1	28.3	42.4	10.1	100.0	(99)
부모+미혼자녀	7.2	19.7	52.2	19.4	1.6	100.0	(320)
확대가족	2.8	11.1	55.6	27.8	2.8	100.0	(36)
기타가족	50.0	50.0	0.0	0.0	0.0	100.0	(2)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8.3	16.7	25.0	37.5	12.5	100.0	(24)
100~199만원	8.0	18.0	30.0	28.0	16.0	100.0	(50)
200~299만원	3.0	20.0	49.0	25.0	3.0	100.0	(100)
300~399만원	7.7	20.5	45.3	25.6	0.9	100.0	(117)
400~499만원	6.9	12.5	58.3	20.8	1.4	100.0	(72)
500만원 이상	12.9	16.8	47.5	22.8	0.0	100.0	(101)

주: 1) 266명 대상  
 2) 471명 대상  
 3) 464명 대상

〈표 8-29〉 직업유형별 노후준비시기(사회참여)

	노후준비시기(사회참여)					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7.6	17.5	46.1	25.4	3.4	100	(473)
임금근로 재취업자	3.3	20.0	43.3	33.3	0.0	100.0	(30)
임금근로 퇴직자	0.0	8.0	40.0	48.0	4.0	100.0	(25)
임금근로자	10.6	17.9	50.3	19.2	2.0	100.0	(151)
자영업 재취업자	0.0	25.0	50.0	25.0	0.0	100.0	(4)
자영업 퇴직자	7.7	7.7	30.8	46.2	7.7	100.0	(13)
자영업자	5.8	21.4	44.5	23.7	4.6	100.0	(173)
주부 취업자	11.5	15.4	46.2	23.1	3.8	100.0	(26)
주부	8.2	10.2	46.9	30.6	4.1	100.0	(49)
무직	50.0	0.0	50.0	0.0	0.0	100.0	(2)

### 5. 노후준비의 어려움

이하에서는 노후준비를 실제로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노후준비의 각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표 8-30〉은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밝힌 경제적 노후준비의 어려움인데 응답자의 93.2%가 ‘경제적 여유없음’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노년기에 매우 근접한 60~64세의 경우 응답자의 7.4%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초졸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6.7%,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5.5%가 방법을 모르는 것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음을 주된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차이가 있으며 노후설계의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타 가구에 비해 1인가구 또는 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보다 확대된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정보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한 비율이 높았으며 임금근로나 자영업에 종사하다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경제)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2.5	93.2	0.9	2.2	1.2	100.0	(322)
연령							
45-49세	2.4	95.3	1.2	0.0	1.2	100.0	(85)
50-54세	1.2	95.3	0.0	1.2	2.4	100.0	(85)
55-59세	3.6	94.0	1.2	1.2	0.0	100.0	(84)
60-64세	2.9	86.8	1.5	7.4	1.5	100.0	(68)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0	92.1	1.0	2.0	2.0	100.0	(101)
1960-1963년생	1.6	98.4	0.0	0.0	0.0	100.0	(63)
성							
남자	3.4	91.9	0.7	3.4	0.7	100.0	(149)
여자	1.7	94.2	1.2	1.2	1.7	100.0	(173)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0.0	88.3	1.7	6.7	3.3	100.0	(60)
중졸	1.4	95.7	0.0	2.9	0.0	100.0	(70)
고졸	0.9	96.5	0.9	0.0	1.8	100.0	(114)
대졸	7.4	89.7	1.5	1.5	0.0	100.0	(68)
대학원 이상	12.5	87.5	0.0	0.0	0.0	100.0	(8)
가구형태							
1인가구	4.2	91.7	0.0	4.2	0.0	100.0	(24)
부부가구	1.5	88.2	0.0	5.9	4.4	100.0	(68)
부모+미혼자녀	3.0	94.6	1.0	1.0	0.5	100.0	(203)
확대가족	0.0	100.0	0.0	0.0	0.0	100.0	(26)
기타가족	0.0	0.0	100.0	0.0	0.0	100.0	(1)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0.0	91.8	0.0	5.5	2.7	100.0	(73)
100~199만원	1.3	96.2	0.0	1.3	1.3	100.0	(79)
200~299만원	2.5	95.0	0.0	1.3	1.3	100.0	(80)
300~399만원	2.0	96.1	2.0	0.0	0.0	100.0	(51)
400~499만원	11.8	88.2	0.0	0.0	0.0	100.0	(17)
500만원 이상	7.1	85.7	7.1	0.0	0.0	100.0	(14)

주: 1) 164명 대상

2) 320명 대상

3) 314명 대상

〈표 8-31〉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경제)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2.5	93.2	0.9	2.2	1.2	100.0	(322)
임금근로 재취업자	0.0	92.9	3.6	3.6	0.0	100.0	(28)
임금근로 퇴직자	0.0	85.7	0.0	4.8	9.5	100.0	(21)
임금근로자	3.8	96.2	0.0	0.0	0.0	100.0	(53)
자영업 재취업자	12.5	87.5	0.0	0.0	0.0	100.0	(8)
자영업 퇴직자	0.0	76.9	0.0	7.7	15.4	100.0	(13)
자영업자	1.5	95.6	0.7	2.2	0.0	100.0	(135)
주부 취업자	7.1	92.9	0.0	0.0	0.0	100.0	(14)
주부	2.0	93.9	2.0	2.0	0.0	100.0	(49)
무직	100.0	0.0	0.0	0.0	0.0	100.0	(1)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 31.9%는 시간의 부족을 호소했으며 54.9%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응답했다. 특히 45-49세의 경우 40.4%가 시간 부족을 호소했으며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졸자의 경우 43.6%가 시간부족을 이유로 응답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호소했으며 직종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45.7%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 노후 건강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에 비해 시간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임금근로자들의 경우가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3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건강)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31.9	54.9	2.8	1.4	8.9	100.0	(213)
연령							
45-49세	40.4	51.9	3.8	0.0	3.8	100.0	(52)
50-54세	32.2	54.2	1.7	0.0	11.9	100.0	(59)
55-59세	28.8	55.9	1.7	0.0	13.6	100.0	(59)
60-64세	25.6	58.1	4.7	7.0	4.7	100.0	(43)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2.8	53.7	3.0	0.0	10.4	100.0	(67)
1960-1963년생	45.7	45.7	5.7	0.0	2.9	100.0	(35)

〈표 8-32〉 계속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성							
남자	24.4	64.0	3.5	2.3	5.8	100.0	(86)
여자	37.0	48.8	2.4	0.8	11.0	100.0	(127)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31.8	47.7	4.5	4.5	11.4	100.0	(44)
중졸	27.5	62.7	2.0	0.0	7.8	100.0	(51)
고졸	30.0	61.4	1.4	0.0	7.1	100.0	(70)
대졸	43.6	41.0	2.6	2.6	10.3	100.0	(39)
대학원 이상	28.6	42.9	14.3	0.0	14.3	100.0	(7)
가구형태							
1인가구	7.7	61.5	15.4	0.0	15.4	100.0	(13)
부부가구	24.0	58.0	0.0	4.0	14.0	100.0	(50)
부모+미혼자녀	34.8	56.8	1.5	0.8	6.1	100.0	(132)
확대가족	50.0	31.3	6.3	0.0	12.5	100.0	(16)
기타가족	50.0	0.0	50.0	0.0	0.0	100.0	(2)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5.7	64.7	5.9	3.9	9.8	100.0	(51)
100~199만원	23.6	67.3	0.0	0.0	9.1	100.0	(55)
200~299만원	47.8	45.7	0.0	2.2	4.3	100.0	(46)
300~399만원	38.5	50.0	0.0	0.0	11.5	100.0	(26)
400~499만원	57.1	28.6	7.1	0.0	7.1	100.0	(14)
500만원 이상	40.0	40.0	0.0	0.0	20.0	100.0	(15)

주: 1) 102명 대상

2) 211명 대상

3) 207명 대상

〈표 8-33〉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건강)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31.9	54.9	2.8	1.4	8.9	100.0	(213)
임금근로 재취업자	23.5	52.9	0.0	5.9	17.6	100.0	(17)
임금근로 퇴직자	23.1	61.5	0.0	0.0	15.4	100.0	(13)
임금근로자	45.7	45.7	2.9	0.0	5.7	100.0	(35)
자영업 재취업자	50.0	50.0	0.0	0.0	0.0	100.0	(6)
자영업 퇴직자	12.5	50.0	0.0	0.0	37.5	100.0	(8)
자영업자	31.9	58.2	2.2	2.2	5.5	100.0	(91)
주부 취업자	50.0	50.0	0.0	0.0	0.0	100.0	(8)
주부	23.5	58.8	5.9	0.0	11.8	100.0	(34)
무직	0.0	0.0	100.0	0.0	0.0	100.0	(1)

〈표 8-34〉는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31.4%는 시간부족을, 58.2%는 경제적 여유를 그리고 4.6%는 관심이 없음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징적인 점은 타 영역에 비해 ‘관심이 없음’에 대한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타 영역에 비해 무관심한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5~49세 집단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그리고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부족’과 ‘관심 없음’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시간부족과 관심없음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여유없음’과 ‘방법을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별로 여가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차별적이었다. 소득수준도 교육수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시간의 부족과 관심의 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방법을 모르기 경제적 어려움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다수가 시간부족을,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부족을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표 8-3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여가)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31.4	58.2	4.6	2.7	3.1	100.0	(414)
연령							
45-49세	35.0	57.5	5.8	0.0	1.7	100.0	(120)
50-54세	31.9	57.8	4.3	3.4	2.6	100.0	(116)
55-59세	34.3	53.9	3.9	1.0	6.9	100.0	(102)
60-64세	21.1	65.8	3.9	7.9	1.3	100.0	(76)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3.6	56.0	4.5	3.0	3.0	100.0	(134)
1960-1963년생	37.8	56.1	4.9	0.0	1.2	100.0	(82)
성							
남자	25.3	66.1	3.8	2.7	2.2	100.0	(186)
여자	36.4	51.8	5.3	2.6	3.9	100.0	(228)

〈표 8-34〉 계속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8.5	64.6	4.6	9.2	3.1	100.0	(65)
중졸	30.8	61.5	4.4	1.1	2.2	100.0	(91)
고졸	29.4	62.7	3.9	0.7	3.3	100.0	(153)
대졸	42.9	44.0	5.5	3.3	4.4	100.0	(91)
대학원 이상	50.0	41.7	8.3	0.0	0.0	100.0	(12)
가구형태							
1인가구	4.5	72.7	9.1	4.5	9.1	100.0	(22)
부부가구	25.8	61.8	2.2	4.5	5.6	100.0	(89)
부모+미혼자녀	32.2	58.4	4.9	2.2	2.2	100.0	(267)
확대가족	57.1	40.0	2.9	0.0	0.0	100.0	(35)
기타가족	0.0	0.0	100.0	0.0	0.0	100.0	(1)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8.5	80.3	1.4	5.6	4.2	100.0	(71)
100~199만원	20.7	66.3	4.3	4.3	4.3	100.0	(92)
200~299만원	39.0	56.0	1.0	1.0	3.0	100.0	(100)
300~399만원	39.2	54.4	3.8	1.3	1.3	100.0	(79)
400~499만원	37.9	41.4	13.8	3.4	3.4	100.0	(29)
500만원 이상	63.6	21.2	12.1	0.0	3.0	100.0	(33)

주: 1) 216명 대상

2) 412명 대상

3) 404명 대상

〈표 8-35〉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여가)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31.4	58.2	4.6	2.7	3.1	100.0	(414)
임금근로 재취업자	31.3	53.1	0.0	6.3	9.4	100.0	(32)
임금근로 퇴직자	19.2	53.8	19.2	3.8	3.8	100.0	(26)
임금근로자	44.0	49.3	4.0	2.7	0.0	100.0	(75)
자영업 재취업자	44.4	55.6	0.0	0.0	0.0	100.0	(9)
자영업 퇴직자	9.1	72.7	0.0	0.0	18.2	100.0	(11)
자영업자	31.7	60.8	3.2	2.7	1.6	100.0	(186)
주부 취업자	40.0	60.0	0.0	0.0	0.0	100.0	(15)
주부	20.3	64.4	6.8	1.7	6.8	100.0	(59)
무직	0.0	0.0	100.0	0.0	0.0	100.0	(1)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5%가 ‘시간부족’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했으며 33.4%가 경제적 여유부족 때문으로 응답했다. 반면 8.2%는 관심

부족을 그리고 6.3%는 방법을 모름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해, 경제, 건강, 여가 영역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5~49세의 경우 51.3%가 시간부족을, 60~64세의 경우 11.9%가 관심없음을, 그리고 55~59세의 7.9%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해 각각의 영역에서 연령대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관심없음과 방법을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목 할만한 점은 교육수준별 분포인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시간부족’과 ‘관심부족’, 그리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학력자들이 기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노후 사회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관심도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 역시 교육수준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부족과 관심의 부족, 그리고 방법을 모름이 노후 사회참여 준비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시간의 부족과 관심의 부족, 그리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준비 어려움(사회참여)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45.0	33.4	8.2	6.3	7.2	100.0	(527)
연령							
45-49세	51.3	29.9	9.7	5.2	3.9	100.0	(154)
50-54세	43.2	39.4	3.8	6.8	6.8	100.0	(132)
55-59세	43.6	32.1	7.9	7.9	8.6	100.0	(140)
60-64세	39.6	32.7	11.9	5.0	10.9	100.0	(101)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43.3	40.8	3.8	5.7	6.4	100.0	(157)
1960-1963년생	48.0	31.0	9.0	10.0	2.0	100.0	(100)
성							
남자	42.8	38.4	8.0	8.0	2.8	100.0	(250)
여자	46.9	28.9	8.3	4.7	11.2	100.0	(277)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30.3	47.4	7.9	3.9	10.5	100.0	(76)
중졸	38.2	38.2	5.9	5.9	11.8	100.0	(102)
고졸	47.2	35.2	7.3	4.7	5.7	100.0	(193)
대졸	55.4	20.0	11.5	9.2	3.8	100.0	(130)
대학원 이상	54.5	18.2	4.5	13.6	9.1	100.0	(22)

〈표 8-36〉 계속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가구형태							
1인가구	29.2	41.7	12.5	8.3	8.3	100.0	(24)
부부가구	34.5	37.0	10.1	5.9	12.6	100.0	(119)
부모+미혼자녀	48.2	33.0	7.9	6.4	4.5	100.0	(330)
확대가족	56.6	24.5	1.9	5.7	11.3	100.0	(53)
기타가족	0.0	0.0	100.0	0.0	0.0	100.0	(1)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22.1	53.2	5.2	5.2	14.3	100.0	(77)
100~199만원	34.9	43.4	9.4	2.8	9.4	100.0	(106)
200~299만원	47.8	36.3	3.5	7.1	5.3	100.0	(113)
300~399만원	53.6	27.3	7.3	6.4	5.5	100.0	(110)
400~499만원	60.0	8.9	15.6	11.1	4.4	100.0	(45)
500만원 이상	61.4	12.3	14.0	8.8	3.5	100.0	(57)

주: 1) 257명 대상  
 2) 523명 대상  
 3) 508명 대상

〈표 8-37〉 직업유형별 노후준비 어려움(사회활동)

	시간이 없음	경제적 여유없음	관심이 없음	방법을 모름	기타	계	(명)
전체	45.0	33.4	8.2	6.3	7.2	100.0	(527)
임금근로 재취업자	60.0	22.5	7.5	7.5	2.5	100.0	(40)
임금근로 퇴직자	15.6	37.5	18.8	6.3	21.9	100.0	(32)
임금근로자	56.5	23.4	9.7	8.9	1.6	100.0	(124)
자영업 재취업자	28.6	50.0	7.1	7.1	7.1	100.0	(14)
자영업 퇴직자	17.6	17.6	11.8	5.9	47.1	100.0	(17)
자영업자	46.0	45.0	2.0	3.5	3.5	100.0	(200)
주부 취업자	57.1	28.6	0.0	7.1	7.1	100.0	(14)
주부	36.5	25.9	17.6	7.1	12.9	100.0	(85)
무직	0.0	0.0	0.0	100.0	0.0	100.0	(1)

## 6. 노후설계서비스 욕구(필요도)

앞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 가구형태별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노후설계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연계시켜주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75.0%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45~49세, 50~54세 집단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이미 근접한 세대에 비해 현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에 대해 미리부터 설계하고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유형 별로는 자영업자에 비해 임금근로 종사자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를 위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조사 결과 59.5%가 전문가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인식하고 있는 필요도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69.0%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55~59세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임금근로 종사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의 경우 응답자의 58%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타 영역에 비해 필요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50대가 40대 또는 60대에 비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8-3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28.6	46.4	13.4	8.8	2.8	100.0	(1,000)
연령							
45-49세	31.6	45.6	11.6	9.1	2.2	100.0	(320)
50-54세	29.0	47.8	12.0	8.7	2.5	100.0	(276)
55-59세	26.6	46.4	16.0	7.6	3.4	100.0	(237)
60-64세	25.1	45.5	15.6	10.2	3.6	100.0	(167)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0.4	46.2	12.9	8.9	1.7	100.0	(303)
1960-1963년생	30.9	45.0	11.8	10.0	2.3	100.0	(220)

〈표 8-38〉 계속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성							
남자	26.3	47.7	12.6	9.6	3.8	100.0	(499)
여자	30.9	45.1	14.2	8.0	1.8	100.0	(501)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20.4	41.7	23.1	12.0	2.8	100.0	(108)
중졸	27.2	53.1	13.0	6.2	0.6	100.0	(162)
고졸	26.9	47.8	11.3	10.5	3.5	100.0	(372)
대졸	34.2	44.5	11.6	6.8	2.9	100.0	(310)
대학원 이상	33.3	33.3	19.0	11.9	2.4	100.0	(42)
가구형태							
1인가구	15.0	60.0	12.5	7.5	5.0	100.0	(40)
부부가구	27.5	43.6	16.5	9.6	2.8	100.0	(218)
부모+미혼자녀	28.9	47.4	12.8	8.2	2.8	100.0	(650)
확대가족	36.0	40.4	11.2	10.1	2.2	100.0	(89)
기타가족	0.0	33.3	0.0	66.7	0.0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22.8	49.5	15.8	10.9	1.0	100.0	(101)
100~199만원	21.8	47.4	16.0	10.9	3.8	100.0	(156)
200~299만원	31.9	46.9	11.7	5.2	4.2	100.0	(213)
300~399만원	29.1	48.5	14.1	7.9	0.4	100.0	(227)
400~499만원	35.0	43.6	11.1	7.7	2.6	100.0	(117)
500만원 이상	29.1	45.6	10.1	10.1	5.1	100.0	(158)

주: 1) 523명 대상

2) 994명 대상

3) 972명 대상

〈표 8-39〉 직업유형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28.6	46.4	13.4	8.8	2.8	10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2.9	52.9	8.6	11.4	4.3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26.3	43.9	15.8	8.8	5.3	100.0	(57)
임금근로자	33.1	44.7	12.0	8.7	1.5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27.8	50.0	11.1	5.6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30.0	36.7	23.3	10.0	0.0	100.0	(30)
자영업자	24.7	48.8	13.4	8.8	4.3	100.0	(373)
주부 취업자	45.0	42.5	12.5	0.0	0.0	100.0	(40)
주부	29.9	44.0	16.4	9.0	0.7	100.0	(134)
무직	0.0	33.3	0.0	66.7	0.0	100.0	(3)

〈표 8-4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전문가상담 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17.1	42.4	15.8	20.9	3.8	100.0	(1,000)
연령							
45-49세	16.9	40.3	19.4	19.4	4.1	100.0	(320)
50-54세	14.5	48.2	11.6	22.1	3.6	100.0	(276)
55-59세	18.6	40.9	18.1	19.0	3.4	100.0	(237)
60-64세	19.8	38.9	12.6	24.6	4.2	100.0	(167)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15.5	46.5	12.5	23.1	2.3	100.0	(303)
1960-1963년생	17.3	42.7	14.1	21.4	4.5	100.0	(220)
성							
남자	18.8	43.7	14.8	17.6	5.0	100.0	(499)
여자	15.4	41.1	16.8	24.2	2.6	100.0	(501)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1.1	41.7	17.6	26.9	2.8	100.0	(108)
중졸	16.0	49.4	12.3	20.4	1.9	100.0	(162)
고졸	17.5	39.8	16.1	22.0	4.6	100.0	(372)
대졸	19.0	43.9	17.1	16.1	3.9	100.0	(310)
대학원 이상	19.0	33.3	11.9	31.0	4.8	100.0	(42)
가구형태							
1인가구	7.5	55.0	20.0	12.5	5.0	100.0	(40)
부부가구	19.3	39.9	11.9	24.3	4.6	100.0	(218)
부모+미혼자녀	16.8	42.6	16.6	20.5	3.5	100.0	(650)
확대가족	19.1	42.7	18.0	16.9	3.4	100.0	(89)
기타가족	0.0	0.0	0.0	100.0	0.0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6.8	36.6	17.8	27.7	1.0	100.0	(101)
100~199만원	14.1	42.3	14.7	23.7	5.1	100.0	(156)
200~299만원	16.9	46.5	14.1	17.8	4.7	100.0	(213)
300~399만원	17.6	40.5	18.9	20.3	2.6	100.0	(227)
400~499만원	17.1	45.3	14.5	19.7	3.4	100.0	(117)
500만원 이상	20.9	42.4	13.9	17.7	5.1	100.0	(158)

주: 1) 523명 대상

2) 994명 대상

3) 972명 대상

〈표 8-41〉 직업유형별 전문가상담 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28.6	46.4	13.4	8.8	2.8	10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1.4	37.1	12.9	21.4	7.1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26.3	36.8	12.3	15.8	8.8	100.0	(57)
임금근로자	21.8	40.4	16.4	20.4	1.1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11.1	55.6	11.1	16.7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16.7	43.3	16.7	20.0	3.3	100.0	(30)
자영업자	13.1	44.5	14.7	22.0	5.6	100.0	(373)
주부 취업자	17.5	52.5	15.0	15.0	0.0	100.0	(40)
주부	13.4	41.0	21.6	22.4	1.5	100.0	(134)
무직	0.0	33.3	0.0	66.7	0.0	100.0	(3)

〈표 8-4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교육프로그램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17.4	51.6	14.2	12.9	3.9	100.0	(1,000)
연령							
45-49세	17.2	52.5	14.7	12.2	3.4	100.0	(320)
50-54세	14.9	56.9	14.5	9.1	4.7	100.0	(276)
55-59세	21.1	50.2	11.4	14.8	2.5	100.0	(237)
60-64세	16.8	43.1	16.8	18.0	5.4	100.0	(167)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18.8	52.8	12.9	12.5	3.0	100.0	(303)
1960-1963년생	15.9	50.0	15.9	11.8	6.4	100.0	(220)
성							
남자	17.4	51.9	14.0	12.0	4.6	100.0	(499)
여자	17.4	51.3	14.4	13.8	3.2	100.0	(501)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1.1	44.4	21.3	17.6	5.6	100.0	(108)
중졸	14.8	58.6	10.5	14.2	1.9	100.0	(162)
고졸	17.7	49.7	14.0	14.0	4.6	100.0	(372)
대졸	19.4	52.9	15.2	9.4	3.2	100.0	(310)
대학원 이상	28.6	47.6	4.8	14.3	4.8	100.0	(42)
가구형태							
1인가구	12.5	60.0	15.0	7.5	5.0	100.0	(40)
부부가구	18.3	42.7	17.4	16.1	5.5	100.0	(218)
부모+미혼자녀	17.4	54.3	12.8	12.0	3.5	100.0	(650)
확대가족	18.0	51.7	15.7	13.5	1.1	100.0	(89)
기타가족	0.0	0.0	33.3	33.3	33.3	100.0	(3)

〈표 8-42〉 계속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3.9	45.5	16.8	21.8	2.0	100.0	(101)
100~199만원	13.5	52.6	12.8	14.7	6.4	100.0	(156)
200~299만원	17.4	54.0	13.1	10.8	4.7	100.0	(213)
300~399만원	18.5	54.2	14.1	11.0	2.2	100.0	(227)
400~499만원	23.1	50.4	12.0	11.1	3.4	100.0	(117)
500만원 이상	18.4	51.9	13.9	12.0	3.8	100.0	(158)

주: 1) 523명 대상  
 2) 994명 대상  
 3) 972명 대상

〈표 8-43〉 직업유형별 교육프로그램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28.6	46.4	13.4	8.8	2.8	10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20.0	55.7	5.7	11.4	7.1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21.1	47.4	14.0	12.3	5.3	100.0	(57)
임금근로자	19.3	53.8	14.5	10.5	1.8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16.7	55.6	0.0	22.2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16.7	46.7	13.3	20.0	3.3	100.0	(30)
자영업자	13.7	49.3	15.5	16.1	5.4	100.0	(373)
주부 취업자	22.5	62.5	12.5	2.5	0.0	100.0	(40)
주부	20.1	50.7	17.2	9.0	3.0	100.0	(134)
무직	0.0	33.3	0.0	66.7	0.0	100.0	(3)

〈표 8-44〉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15.6	42.4	18.3	19.3	4.4	100.0	(1,000)
연령							
45-49세	15.0	37.2	22.5	20.9	4.4	100.0	(320)
50-54세	15.9	47.5	17.0	14.5	5.1	100.0	(276)
55-59세	16.9	43.5	13.9	22.8	3.0	100.0	(237)
60-64세	14.4	42.5	18.6	19.2	5.4	100.0	(167)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17.5	46.2	17.8	15.5	3.0	100.0	(303)
1960-1963년생	15.9	37.7	20.0	19.5	6.8	100.0	(220)
성							
남자	17.0	45.1	16.4	16.4	5.0	100.0	(499)
여자	14.2	39.7	20.2	22.2	3.8	100.0	(501)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1.1	42.6	22.2	18.5	5.6	100.0	(108)
중졸	17.3	47.5	14.2	19.1	1.9	100.0	(162)
고졸	13.4	41.7	19.1	20.4	5.4	100.0	(372)
대졸	17.7	42.9	19.4	16.1	3.9	100.0	(310)
대학원 이상	23.8	28.6	7.1	35.7	4.8	100.0	(42)
가구형태							
1인가구	10.0	55.0	15.0	15.0	5.0	100.0	(40)
부부가구	15.6	39.9	18.8	20.2	5.5	100.0	(218)
부모+미혼자녀	15.1	42.0	19.1	19.7	4.2	100.0	(650)
확대가족	22.5	46.1	13.5	14.6	3.4	100.0	(89)
기타가족	0.0	33.3	0.0	66.7	0.0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3.9	44.6	16.8	20.8	4.0	100.0	(101)
100~199만원	12.8	43.6	15.4	22.4	5.8	100.0	(156)
200~299만원	16.9	47.4	16.0	14.6	5.2	100.0	(213)
300~399만원	16.7	41.4	18.5	20.7	2.6	100.0	(227)
400~499만원	12.8	39.3	28.2	16.2	3.4	100.0	(117)
500만원 이상	18.4	39.9	17.1	19.0	5.7	100.0	(158)

주: 1) 523명 대상  
 2) 994명 대상  
 3) 972명 대상

〈표 8-45〉 직업유형별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비교적 필요함	보통이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명)
전체	15.6	42.4	18.3	19.3	4.4	100.0	(1,000)
임금근로 재취업자	17.1	42.9	12.9	20.0	7.1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17.5	42.1	19.3	14.0	7.0	100.0	(57)
임금근로자	19.6	39.6	19.3	19.6	1.8	100.0	(275)
자영업 재취업자	16.7	50.0	11.1	16.7	5.6	100.0	(18)
자영업 퇴직자	13.3	43.3	16.7	23.3	3.3	100.0	(30)
자영업자	13.4	44.2	17.4	18.2	6.7	100.0	(373)
주부 취업자	15.0	57.5	15.0	10.0	2.5	100.0	(40)
주부	12.7	37.3	23.9	24.6	1.5	100.0	(134)
무직	0.0	33.3	0.0	66.7	0.0	100.0	(3)

## 7. 노후설계 서비스 이용의향

다음은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와 달리 실제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전문가 상담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지속적 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고졸, 대졸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이용의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200~399만원 사이의 중간 소득층의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종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필요도에 대한 직종별 경향성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8-46〉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전체	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연령						
45-49세	32.2	30.8	33.2	31.9	31.5	32.2
50-54세	27.7	31.8	24.8	27.7	30.6	25.9
55-59세	23.6	23.0	24.0	23.8	24.2	23.6
60-64세	16.6	14.5	18.0	16.6	13.8	18.3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58.1	60.1	56.5	58.5	60.9	56.9
1960-1963년생	41.9	39.9	43.5	41.5	39.1	43.1
성						
남자	49.4	50.5	48.6	49.3	52.2	47.5
여자	50.6	49.5	51.4	50.7	47.8	52.5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0.9	7.8	13.0	11.0	8.5	12.5
중졸	16.6	18.4	15.4	16.6	19.4	15.0
고졸	37.1	38.3	36.3	37.1	37.2	37.0
대졸	31.1	30.7	31.4	31.1	31.3	31.1
대학원 이상	4.2	4.8	3.9	4.2	3.7	4.5
가구형태						
1인가구	3.9	4.0	3.8	4.0	3.7	4.1
부부가구	21.8	19.3	23.6	21.6	19.7	22.8
부모+미혼자녀	65.0	67.8	63.1	65.2	67.4	63.9
확대가족	9.0	8.8	9.1	8.9	9.3	8.7
기타가족	0.3	0.3	0.3	0.3	0.0	0.5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0.6	6.6	13.5	10.7	6.6	13.2
100~199만원	15.9	12.9	18.0	15.8	12.5	17.8
200~299만원	21.6	23.0	20.6	21.7	22.5	21.2
300~399만원	23.9	26.8	21.9	23.6	26.2	22.1
400~499만원	12.1	13.9	10.7	12.1	15.7	9.9
500만원 이상	15.9	16.7	15.3	16.0	16.5	1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72)	(400)	(572)	(962)	(356)	(606)

주: 1)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513명, 전문가상담 서비스 506명 대상  
 2)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967명, 전문가상담 서비스 957명 대상  
 3)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944명, 전문가상담 서비스 935명 대상

〈표 8-47〉 직업유형별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정보제공 및 연결서비스		전체	전문가상담 서비스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임금근로 재취업자	6.9	25.0	42.0	6.8	7.3	6.4
임금근로 퇴직자	5.6	16.0	38.0	5.4	4.8	5.8
임금근로자	27.9	28.0	27.8	28.3	27.5	28.7
자영업 재취업자	1.7	1.8	1.7	1.8	0.8	2.3
자영업 퇴직자	3.1	3.0	3.1	3.0	2.8	3.1
자영업자	36.7	38.0	35.8	36.6	38.2	35.6
주부 취업자	4.1	5.5	3.1	4.2	6.2	3.0
주부	13.7	13.3	14.0	13.7	12.1	14.7
무직	0.3	0.3	0.3	0.3	0.3	0.3
계 (명)	100.0 (972)	100.0 (400)	100.0 (572)	100.0 (962)	100.0 (356)	100.0 (606)

〈표 8-48〉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교육프로그램·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교육프로그램		전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연령						
45-49세	32.2	32.7	31.7	32.0	30.9	32.7
50-54세	27.4	30.0	25.3	27.4	31.8	24.7
55-59세	24.0	23.3	24.6	24.1	23.2	24.6
60-64세	16.4	13.9	18.3	16.5	14.1	18.0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58.8	59.6	58.1	58.9	62.3	56.5
1960-1963년생	41.2	40.4	41.9	41.1	37.7	43.5
성						
남자	49.5	50.5	48.8	49.6	51.7	48.3
여자	50.5	49.5	51.2	50.4	48.3	51.7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10.7	8.2	12.5	10.7	8.1	12.4
중졸	16.6	17.9	15.7	16.7	37.5	36.7
고졸	37.1	36.3	37.8	37.0	37.5	36.7
대졸	31.4	32.4	30.6	31.3	30.8	31.6
대학원 이상	4.2	5.1	3.5	4.2	4.4	4.1
가구형태						
1인가구	4.0	4.1	3.9	4.0	3.6	4.2
부부가구	21.4	20.0	22.6	21.5	18.2	23.6
부모+미혼자녀	65.2	67.1	63.9	65.2	68.0	63.5
확대가족	9.2	8.7	9.5	9.0	9.9	8.4
기타가족	0.2	0.2	0.2	0.3	0.3	0.3

〈표 8-48〉 계속

	전체	교육프로그램		전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이용	비용		이용	비용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10.6	5.9	14.2	10.4	6.2	13.1
100~199만원	15.6	13.8	17.0	15.8	14.6	16.6
200~299만원	21.7	20.9	22.3	21.7	22.2	21.5
300~399만원	23.7	26.5	21.6	23.8	25.6	22.7
400~499만원	12.1	15.0	9.8	12.2	14.6	10.6
500만원 이상	16.3	17.9	15.0	16.0	16.9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61)	(416)	(545)	(956)	(362)	(594)

주: 1) 교육프로그램 500명,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는 499명이 대상  
 2) 교육프로그램 956명,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는 951명이 대상  
 3) 교육프로그램 935명,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는 929명이 대상

〈표 8-49〉 직업유형별 교육프로그램·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이용의향

	전체	교육프로그램		전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이용	비용		이용	비용
임금근로 재취업자	6.8	7.5	6.2	6.8	7.2	6.6
임금근로 퇴직자	5.6	5.5	5.7	5.5	5.0	5.9
임금근로자	28.1	28.4	27.9	28.2	28.7	27.9
자영업 재취업자	1.8	1.2	2.2	1.8	1.7	1.9
자영업 퇴직자	3.0	2.2	3.7	3.0	2.2	3.5
자영업자	36.7	37.5	36.1	36.4	38.4	35.2
주부 취업자	4.2	5.3	3.3	4.1	5.8	3.0
주부	13.5	12.3	14.5	13.8	10.8	15.7
무직	0.3	0.2	0.4	0.3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61)	(416)	(545)	(956)	(362)	(594)

## 8. 노후설계서비스 적합기관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31%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지사를 꼽았으며 구청 또는 군청(16.2%), 평생교육시설(13.5%), 건강가정지원센터(12.0%), 종합사회복지관(11.7%), 노인복지관(8.5%), 직장(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 초반의 경우 구청 및 군청과 평생교

육시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50대 후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선호도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대의 경우 노인복지관 선호도가 높아 연령대별로 노후설계서비스 적합기관에서 차이가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과 고졸의 중간학력층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역시 교육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과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자영업자와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50〉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노후설계서비스 적합기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가정 지원센터	평생 교육시설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구청 군청	직장	기타	계	(명)
전체	31.0	12.0	13.5	8.5	11.7	16.2	5.1	2.0	100.0	(961)
연령										
45-49세	29.8	9.8	16.4	5.9	11.8	18.0	6.9	1.3	100.0	(305)
50-54세	29.4	14.5	16.4	5.2	13.8	14.5	5.2	1.1	100.0	(269)
55-59세	35.4	11.5	10.2	9.3	9.7	16.8	4.4	2.7	100.0	(226)
60-64세	29.8	12.4	8.1	18.0	10.6	14.9	2.5	3.7	100.0	(161)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0.4	14.9	17.2	5.4	11.8	13.9	5.1	1.4	100.0	(296)
1960-1963년생	29.2	10.4	16.0	4.7	14.2	17.9	6.1	1.4	100.0	(212)
성										
남자	31.8	11.1	11.5	9.1	9.5	16.5	7.4	3.1	100.0	(485)
여자	30.3	12.8	15.5	8.0	13.9	16.0	2.7	0.8	100.0	(476)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25.8	13.4	7.2	25.8	12.4	12.4	1.0	2.1	100.0	(97)
중졸	34.2	10.3	11.6	10.3	14.8	15.5	2.6	0.6	100.0	(155)
고졸	34.1	11.9	14.4	6.4	13.3	16.1	2.2	1.7	100.0	(361)
대졸	28.2	11.6	14.6	4.3	9.0	18.9	10.0	3.3	100.0	(301)
대학원 이상	26.2	19.0	21.4	7.1	0.0	11.9	14.3	0.0	100.0	(42)

〈표 8-50〉 계속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가정 지원센터	평생 교육시설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구청 군청	직장	기타	계	(명)
가구형태										
1인가구	15.8	13.2	10.5	10.5	26.3	18.4	2.6	2.6	100.0	(38)
부부가구	28.3	13.2	9.8	14.1	13.7	15.6	2.9	2.4	100.0	(205)
부모+미혼자녀	33.7	11.0	15.4	6.3	10.5	16.2	5.2	1.7	100.0	(630)
확대가족	25.9	16.5	10.6	10.6	8.2	17.6	10.6	0.0	100.0	(85)
기타가족	0.0	0.0	0.0	0.0	33.3	0.0	0.0	66.7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30.4	8.7	8.7	14.1	17.4	16.3	2.2	2.2	100.0	(92)
100~199만원	29.5	10.1	10.7	14.8	12.8	16.8	1.3	4.0	100.0	(149)
200~299만원	31.1	12.4	12.9	11.5	10.5	14.8	4.8	1.9	100.0	(209)
300~399만원	32.9	13.2	15.1	6.8	12.3	16.0	3.2	0.5	100.0	(219)
400~499만원	32.5	16.7	14.0	0.9	8.8	15.8	10.5	0.9	100.0	(114)
500만원 이상	26.8	10.5	18.3	3.9	10.5	19.0	9.2	2.0	100.0	(153)

주: 1) 508명 대상  
2) 956명 대상  
3) 936명 대상

〈표 8-51〉 직업유형별 노후설계서비스 적합기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가정 지원센터	평생 교육시설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구청 군청	직장	기타	계	(명)
전체	31.0	12.0	13.5	8.5	11.7	16.2	5.1	2.0	100.0	(961)
임금근로 재취업자	32.9	8.6	17.1	8.6	11.4	14.3	1.4	5.7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38.9	9.3	9.3	9.3	13.0	14.8	3.7	1.9	100.0	(54)
임금근로자	26.6	9.4	18.4	6.0	10.1	15.0	13.1	1.5	100.0	(267)
자영업 재취업자	41.2	11.8	0.0	5.9	23.5	17.6	0.0	0.0	100.0	(17)
자영업 퇴직자	30.0	6.7	10.0	23.3	20.0	10.0	0.0	0.0	100.0	(30)
자영업자	31.7	13.7	11.2	10.4	11.5	16.8	2.5	2.2	100.0	(357)
주부 취업자	37.8	21.6	18.9	2.7	5.4	13.5	0.0	0.0	100.0	(37)
주부	31.7	13.5	11.1	7.1	13.5	20.6	1.6	0.8	100.0	(126)
무직	0.0	33.3	0.0	0.0	0.0	33.3	0.0	33.3	100.0	(3)

선호하는 기관을 선택한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근성, 신뢰성, 전문성 등의 사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39.1%가 신뢰성을 기관선택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접근성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경우 전문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8-52〉 연령별·성별·교육수준별·가구형태별·월평균가구수입별 기관 선택 이유

	접근성	신뢰성	전문성	기타	계	(명)
전체	34.8	39.1	24.5	1.7	100.0	(961)
연령						
45-49세	34.4	38.0	25.2	2.3	100.0	(305)
50-54세	33.1	42.0	24.2	0.7	100.0	(269)
55-59세	34.1	37.6	27.9	0.4	100.0	(226)
60-64세	39.1	38.5	18.6	3.7	100.0	(161)
출생연도 <sup>1)</sup>						
1955-1959년생	32.4	40.5	26.4	0.7	100.0	(296)
1960-1963년생	34.0	38.2	25.5	2.4	100.0	(212)
성						
남자	34.0	41.6	21.9	2.5	100.0	(485)
여자	35.5	36.6	27.1	0.8	100.0	(476)
교육수준 <sup>2)</sup>						
초졸이하	45.4	36.1	17.5	1.0	100.0	(97)
중졸	38.1	40.0	21.9	0.0	100.0	(155)
고졸	31.6	40.7	26.0	1.7	100.0	(361)
대졸	34.6	36.9	25.9	2.7	100.0	(301)
대학원 이상	31.0	42.9	26.2	0.0	100.0	(42)
가구형태						
1인가구	36.8	34.2	26.3	2.6	100.0	(38)
부부가구	34.1	40.0	23.4	2.4	100.0	(205)
부모+미혼자녀	34.0	40.3	24.3	1.4	100.0	(630)
확대가족	42.4	30.6	27.1	0.0	100.0	(85)
기타가족	0.0	33.3	33.3	33.3	100.0	(3)
월수입 <sup>3)</sup>						
100만원 미만	43.5	34.8	19.6	2.2	100.0	(92)
100~199만원	38.9	38.9	19.5	2.7	100.0	(149)
200~299만원	35.9	38.3	24.4	1.4	100.0	(209)
300~399만원	30.1	39.3	30.1	0.5	100.0	(219)
400~499만원	28.9	43.0	26.3	1.8	100.0	(114)
500만원 이상	36.6	36.6	25.5	1.3	100.0	(153)

주: 1) 508명 대상  
 2) 956명 대상  
 3) 936명 대상

〈표 8-53〉 직업유형별 기관선택 이유

	접근성	신뢰성	전문성	기타	계	(명)
전체	34.8	39.1	24.5	1.7	100.0	(961)
임금근로 재취업자	31.4	35.7	27.1	5.7	100.0	(70)
임금근로 퇴직자	48.1	31.5	18.5	1.9	100.0	(54)
임금근로자	34.1	40.8	23.6	1.5	100.0	(267)
자영업 재취업자	35.3	47.1	11.8	5.9	100.0	(17)
자영업 퇴직자	40.0	30.0	30.0	0.0	100.0	(30)
자영업자	36.1	38.4	24.4	1.1	100.0	(357)
주부 취업자	29.7	40.5	29.7	0.0	100.0	(37)
주부	29.4	43.7	26.2	0.8	100.0	(126)
무직	0.0	33.3	33.3	33.3	100.0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 9 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노후설계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 계획 수립에서부터 교육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과의 연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후설계서비스의 내용은 수행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거꾸로 수행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는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맞물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센터(가칭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러한 중앙 기구가 지역의 거점기관을 관리하는 수행체계를 상정하였다. 또한 중앙센터, 지자체, 거점기관의 관계와 위상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시나리오별 적합한 거점기관 및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적합한 거점기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재 유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수행체계 시나리오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시군구 차원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시군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기관에 노후설계서비스라는 방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기관에 추가 인력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노후설계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

지도가 향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수행체계 시나리오는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해 노후설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즉, 시군구청 내에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시군구 청사 내 노후설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지리적, 인지적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센터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한 노하우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세 번째 수행체계 시나리오는 거점기관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내 노후설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되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거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지자체의 공신력 및 접근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반면 노후설계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점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및 책임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기존의 사회서비스 지원센터에 노후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설계와 관련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 노후설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소비자와 제공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이 배제됨으로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활용정도가 미흡하게될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전달체계 운영상의 큰 장점을 갖지만 노후설계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과 연계될 개연성 및 미약한 지역기반 등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타 거점기관에 비해 지역 네트워크 확보가 미약하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비포괄 대상자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에서 배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9-1〉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의 장단점 비교분석

수행체계 안	특징	장점	단점
거점기관 중심안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중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기존 인프라 활용하므로 비용절감 -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 거점기관에 인력추가배치 없다면 업무부담 가중 -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인지도 향상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중심안	-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	- 지리적, 인지적 접근성 높음 -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 용이	-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	- 지방자치단체에 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하되 거점기관에서 인력파견,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 거점기관의 전문성 활용화 지자체의 공신력 및 접근성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책임상의 혼란 발생 소지
사회서비스 관리원 활용안	-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노후설계지원팀을 신설, 바우처 제도 활용	- 노후설계서비스 시장 활성화 가능	- 현재 노후설계에 대한 소비자 욕구 부족 - 연계의 역할이 배제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활용도 저하의 가능성
국민연금공단 활용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	- 별도의 조직 구성 없이 효율적 전달체계 운영 가능	- 노후설계서비스가 연금공단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 - 지역네트워크 미약 - 국민연금 비포괄 대상자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배제

## 2.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의 역할 및 양성 방안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 양성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수행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수행체계 시나리오별로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점기관 중심안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기존 전문인력(ex.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부가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다. 예컨대 거점기관에 찾아온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노후설계 관련 적합한 교육 및 기관을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이미 특정

한 전문인력 자격제도(ex.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의해 선발된 전문인력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제도를 통해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노후설계서비스 업무에 요구되는 교육내용 혹은 교과목을 규정하여 그 과목을 이수한 이들에 한해 노후설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안의 경우 새로운 노후설계사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독자적인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 선임될 것이며 센터장은 일정 교육기간을 거친후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된 중간 관리자 및 중간 실무자급 노후설계사의 역할과 기능을 감독 및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선 노후설계사를 감독 및 교육하며 지역사회 내 노후설계서비스를 홍보하고 특성화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일선 노후설계사는 센터 내 일선 대면 상담, 교육, 실태조사, 프로그램 집행, 관련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일선 노후설계사의 경우 기존 공무원 인력을 배치할 경우 기존 업무와 노후설계서비스 업무간에 갈등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노후설계서비스 전담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전문인력선발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 면에서 보았을 때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성이 큰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 등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이들을 해당 업무 담당자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은 시군구청과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 양쪽에 위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청 내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에서의 업무는 주로 기존 공무원 인력 중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고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에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므로(거점기관의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과 분담되므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거점기관 노후설계지원팀의 전문인력은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것 보다 거점기관의 전문인력이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업무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관리원 활용안의 경우 시장의 노후설계사 전문 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복지수행체계와 민간 시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여타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후설계서비스의 질 관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서비스 질의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전자바우처 운용 업무 이외에도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자격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등의 형태로 적절한 자격제도를 구축 및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연금공단 활용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노후설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일정한 교육시스템을 통한 인력(노후설계컨설턴트, CSA)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만, 다섯 번째 안의 경우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는 것이므로 기존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다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신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기존의 CSA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9-2〉 수행체계 안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행체계 안	전문인력의 주요 역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
거점기관 중심안	- 기존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노후설계서비스 역할 부가	- 별도 자격제도 없이 노후설계서비스에 필요한 교과목 및 교육내용 이수 규정
지방자치단체 중심안	- 공무원 담당인력이 노후설계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태조사, 프로그램 집행 등 업무	- 별도의 자격제도 마련 또는 관련성이 큰 전문가 자격제도에 노후설계관련 교육 추가 이수한 사람에게 업무배치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	- 지자체 공무원과 거점기관 전문가 업무 분담	- 1안과 상동
사회서비스관리원 활용안	- 시장의 노후설계 전문인력이 노후설계에 관한 유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자격제도 관리(민간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형태)
국민연금공단 활용안	- 기존 CSA 업무에 포괄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추가	- CSA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와 진단 및 개선

### 3. 노후설계서비스 법제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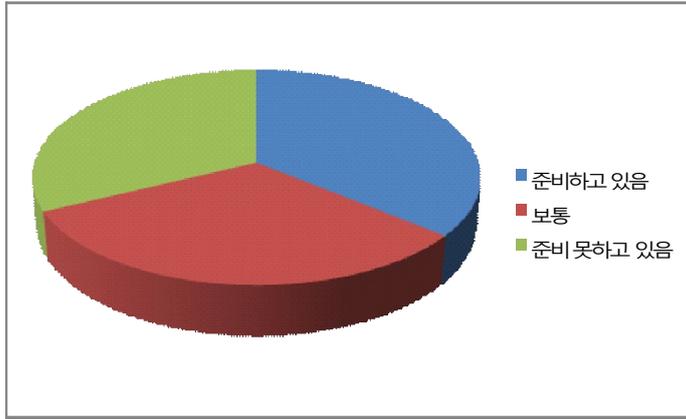
전국민이 미리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및 제도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서비스가 법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존 유관 법률에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정책의 집행력 약화, 연계 서비스 약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으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해 노후설계의 내용과 범위, 수행주체 관련 규정, 자격제도 관련 규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4.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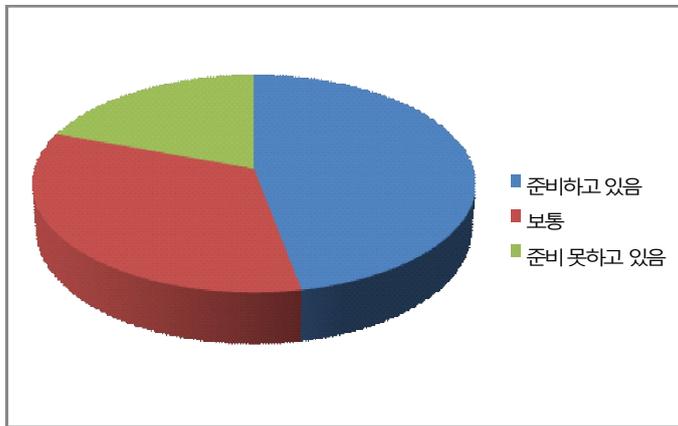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 및 건강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실제 준비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 영역의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도와 실제 준비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예비 노인세대가 경제와 건강 측면의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자각 수준은 아직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의 방향은 여가와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으로 초점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설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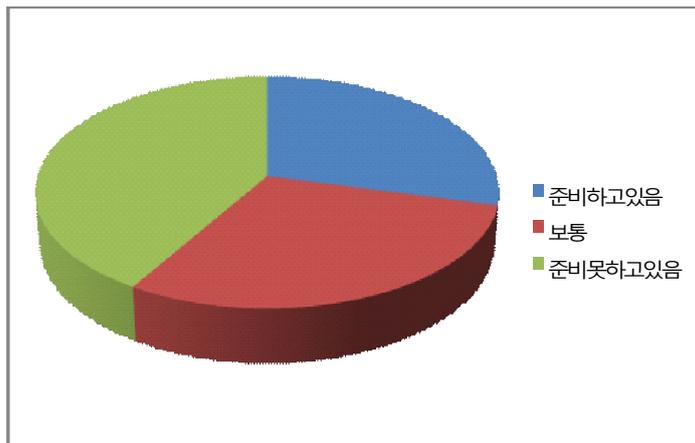
[그림 9-1]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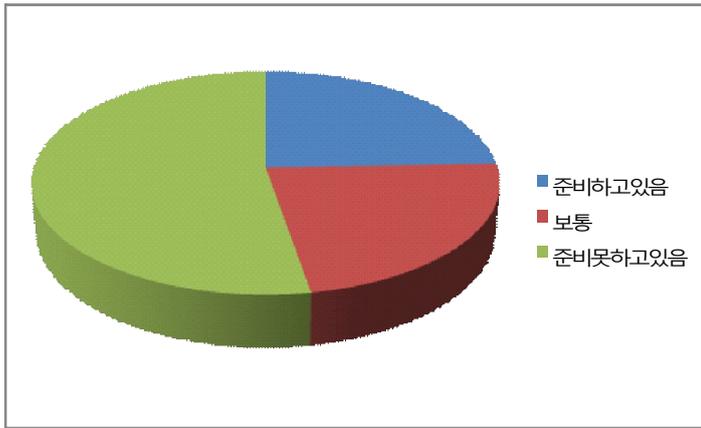
[그림 9-2] 노후 건강 준비 정도



[그림 9-3] 노후 여가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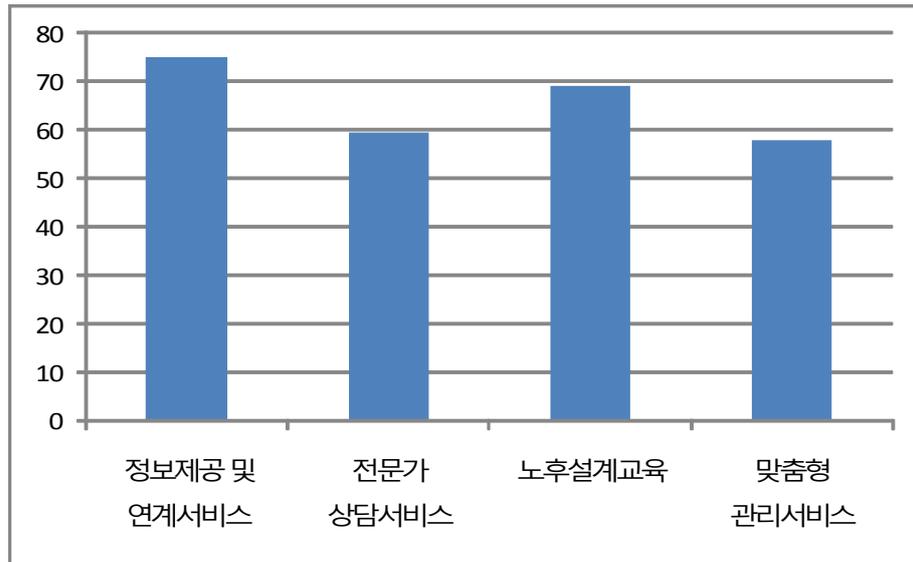


[그림 9-4] 노후 사회참여 준비 정도



둘째, 국민들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연계시켜주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75%), 두 번째가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69%), 세 번째가 전문가 상담서비스(59.5%) 그리고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서비스(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모든 형태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및 연계, 그리고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의 욕구를 고려해 향후 노후설계서비스가 구축되는 과정의 전략적 순서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다수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 후 전문가에 의한 맞춤 상담 및 지속 관리와 같은 개별화되고 심도있는 서비스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5]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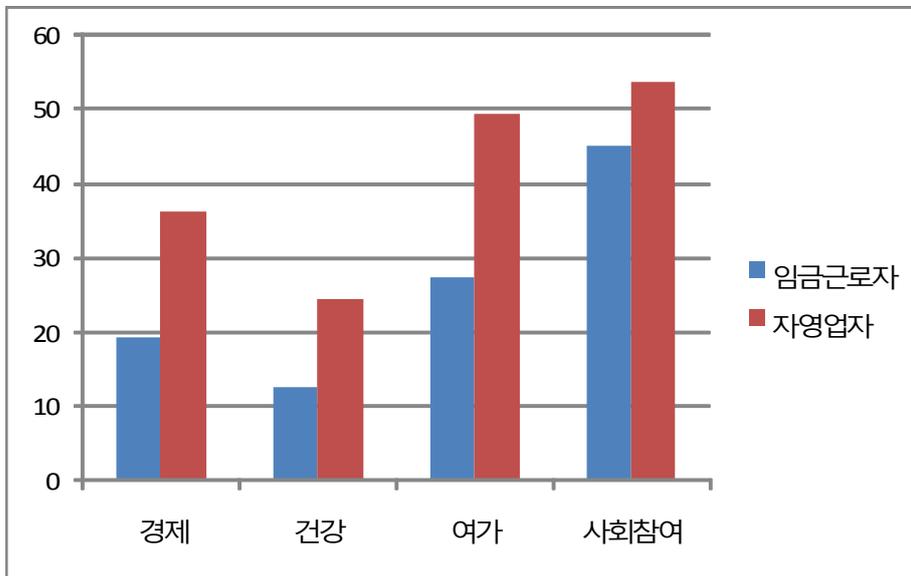


셋째,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연령집단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수행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49세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 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희망율이 노년기에 근접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도 45-49세 또는 50-54세 집단이 55-59세와 60-64세 집단에 비해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각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노인세대 또는 곧 노년기에 진입할 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의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현재보다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호응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집단별로 노후준비에 있어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가령 노년기에 근접한 60-64세의 경우 경제, 건강, 여가 준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 높으며 사회참여의 경우 ‘관심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집단에 따라 노후준비의 어려움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도 연령에 특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정도 및 욕구에 있어 직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직종을 크게 임금근로와 자영업으로 양분했을 때, 우선 양 직종 간에 노후준비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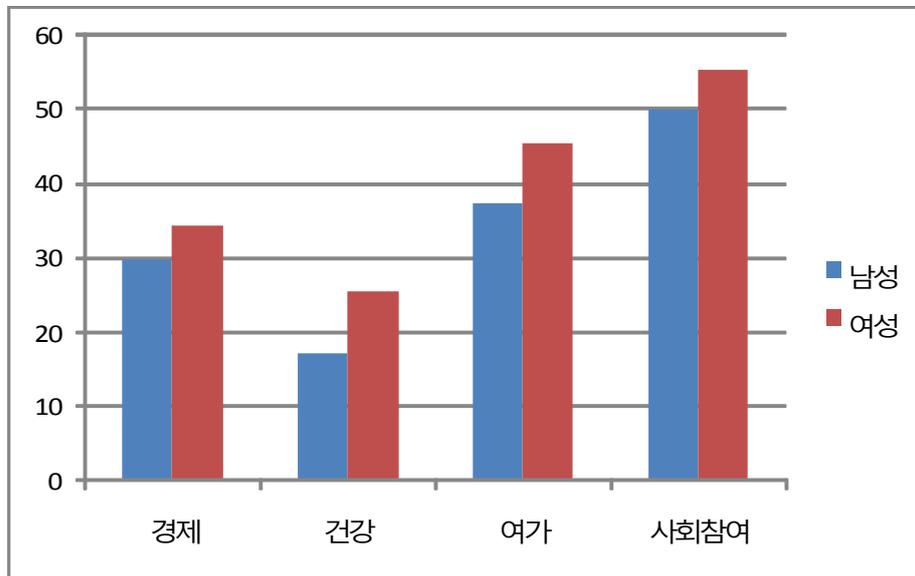
역 모두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가운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도 직종간에 차이가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의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참여 영역의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와의 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종사자들이 사회참여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의 부족과 관심없음 그리고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종사자에 비해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희망 기관으로서 타 집단에 비해 평생교육기관과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직종간에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특히 주된 난점과 욕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사 직종에 따라 차별화된 노후설계서비스 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6] 직종별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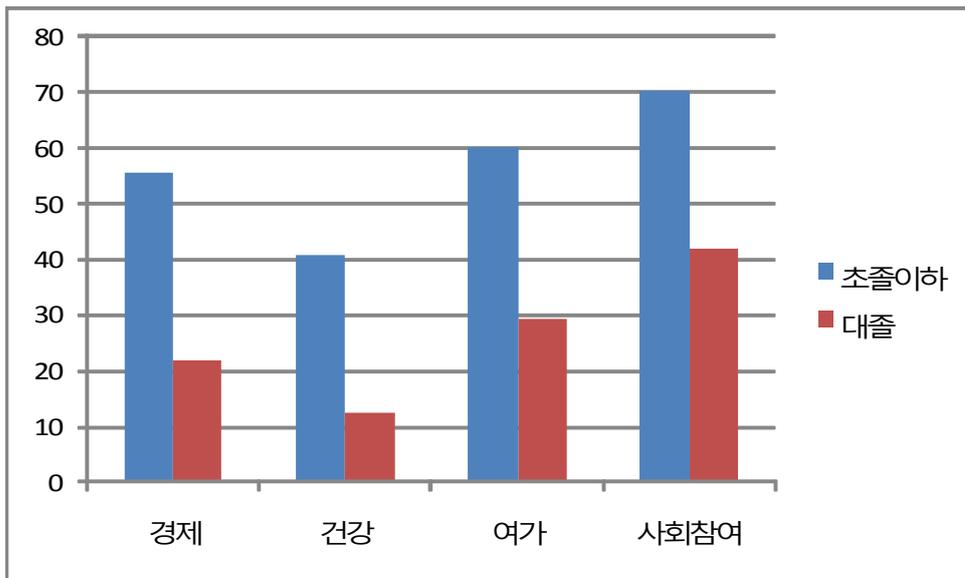
다섯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호소하는 노후준비의 어려움 가운데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에 있어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장년기 여성의 삶이 가족돌봄 또는 일과 가정 양립에 쏠려 자신의 노후 삶과 관련된 시간 투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문가 상담 및 지속적 관리 서비스와 같이 개별화되고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희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물음에 대해 남성은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그 반대여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실제 이용욕구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지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때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해 여성의 현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9-7] 성별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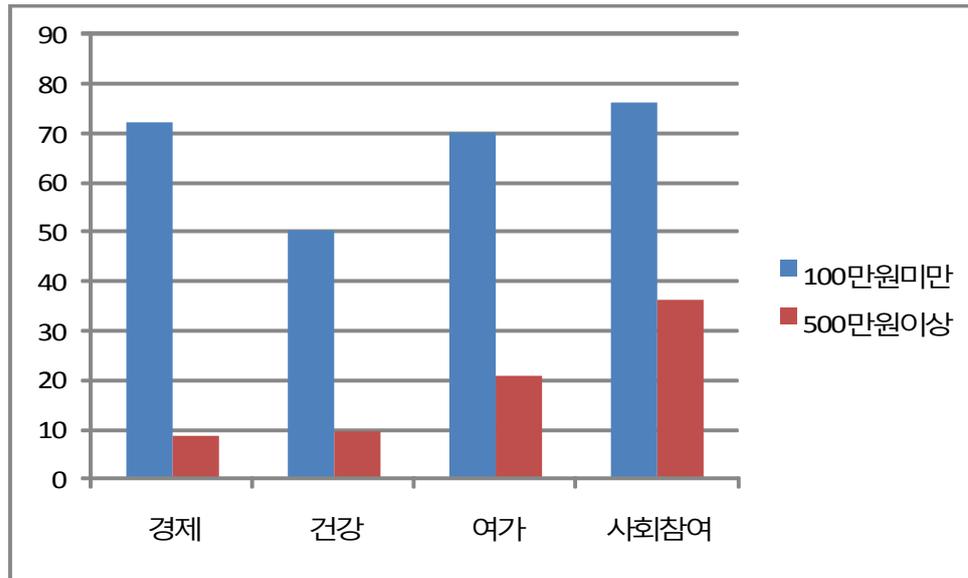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차이 및 소득차이에 따라 노후준비율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계층별 노후준비율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계층간 노년기 삶의 질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저소득, 저학력층이 노후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프라 조성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은 계층간 차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희망하는 노후설계서비스 기관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구축시 이러한 계층별 차이를 고려해 다원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다양한 계층적 욕구에 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9-8] 교육수준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그림 9-9] 소득수준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 5. 결어

인구의 다수가 고령자인 사회에서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수준과 직결된다. 그러나 노년기의 행복은 지금과 같이 노년기를 ‘인생의 담’ 또는 인생의 부차적인 단계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노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나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미리부터 노년기의 삶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보편화될 때 비로소 노년기의 행복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러나 중요성만큼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노후설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축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행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의미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며 단일 사업으로서 사업의 범위가 매우 큰 사업이 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 충돌되거나 지나치게 기존 업무에 영향 받지 않도록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유사한 전문인력이 특정 교육커리큘럼을 이수한 후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으려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되 개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노후설계컨설팅 분야의 시장 형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 인,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2003, pp.95-116.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2005, pp.159-174.
- 고양곤·김근홍·이선형, 『노인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협의회, 2003.
- 고혜이, 『일본의 복지정책』, 김승희·김은숙 역, 한울아카데미, 2006.
- 권승·황규선,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2004, pp.69-90.
- 김남선·김희중, 「대구·경북지역 퇴직자의 평생교육자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9(3), 2003, pp.275-298.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2004, pp.79-95.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1), 2005, pp.91-104.
- 김미혜·신경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2005, pp.35-52.
- 김인숙, 「중년기 직업종사자의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공적 연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3), 2006, pp.67-87.

- 김재인·허현란, 『여성노인의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9.
- 김정석, 「노후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6(1), 2003, pp.59-77.
- 김정환, 「전직지원제도의 의의와 정책과제」, 『매월노동동향』, 2001, pp.11-21.
- 김지경,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2005, pp.55-76.
-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2005.
- 박수경·문수경,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2005, pp.77-89.
- 박재간, 「미국의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 『자치행정』 5, 지방행정연구소, 2003.
- 박재간, 「미국의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 『자치행정』 5, 지방행정연구소, 2003.
- 박철민·김대원, 「지방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수요모형 분석 -구 조방정식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2005, pp.405-429.
- 배문조·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2004.
- 서울사이버대학교(2009). CSA1급과정 개발·운영 제안서, 서울사이버대학교
- 양순미·홍숙자,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02.
- 여윤경·정순희·문숙재,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지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2007, pp.129-155.
- 원형준·김숙자,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Ⅱ)」, 『체육과학 연구』, 17(4), 2006, pp.179-192.
- 전길양·송현애·고선주·김일명,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한국노년학』, 20(1), 2000, pp.69-91.
- 정경희·최현수·방효정·이현주·석재은,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

- 원, 2006.
- 정경희,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저출산·고령사회 미래와 비전’ 정책포럼 발표집』, 2007.
- 최옥채, 「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1996, pp.143-185.
- 최정환, 『고령인력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2006.
- 최혜경·백지은·서선영,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23(2), 2005, pp.1-10.
- 최혜지·이영분,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2005, pp.415-435.
- 최환용·류창호(2009).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 노인생애경력조연자 양성교육 기본과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홍현방·최혜경,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03, pp.145-154.
- 홍현방,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대전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1, 2003, pp.49-72.
- 홍현방,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05, pp.203-235.
- AARP, Retirement Planning Survey Among U.S. Adults Age 40 and Older, AARP, AARP's Research Report, 2006, available at [www.aarp.org](http://www.aarp.org)
- Andrews, Gary, Michael Clark, & Mary Luszcz, "Successful in The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pplying the MacArthur Model Cross-Nationally,"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2002, pp.749-765.
- AoA (U.S. Administration on Aging), Strategic Action Plan 2007-2012, 2007.

- Arnold, Suzanne, *Ready or Not, Your Retirement Planning Guide (32th edition)*, Manpower Education Institute, 2005.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 Baltes, P. B. & Baltes, M. M.,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s, Sott A., "Emergence of the Third Age: Toward a Productive Aging Societ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1(2), 2000, pp.7-18.
- Bassett, Raewyn, Valérie Bourbonnais, & Lan McDowell, "Living Long and Keeping Well: Elderly Canadians Account for Success in Aging," *Canadian Journal on Aging*, 26(2), 2007, pp.113-126.
- Biggs, Simon, Chris phillipson, Rebecca Leach, and Annemarie Money, "BaBy boomers and adults ageing: issues for social and public policy," *Quality in Ageing*, 8(3), 2007, pp.32-40.
- Binstock, R. H. & George, L. 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ixth edition), Academic Press, 2006.
- Bowling, Ann, Steve ILiffe, "Which model of successful ageing should be used? Baseline findings from a British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Age and Ageing*, 35, 2006, pp.607-614.
- Brubaker, Timothy H. & Karan A. Roberto, "Family Life Education for the Later Years," *Family Relation*, 42(2), 1993, pp.212-221.
- Buesching, Rosaria, "Successful Aging: A Religious Viewpoint," *Aging: It's Challenge to the Individual & to Society*, 1974, pp.282-292.
- Cumming, E. & Henry, W. E.,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Y Basic Books, 1961.
- Darnley, Fred, Jr. "Adjustment to Retirement: Intergrity or Despair," *The*

- Family Coordinator*, 24(2), 1975, pp.217-226.
- Dennis, Helen, "The Retirement Planning Specialty," *Generation*, 26(2), 2002, pp.55-60.
- Dorfman, Lorraine T. & D. Alex Heckert,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Household Tasks, Decision 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 37(1), 1988, pp.73-78.
- Ekerdt, David J. & Stanley Deviney, "Evidence for a preretirement process among older male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y*, 48, 1993, s35-s43.
- Hirsch, Donald, *Crossroads after 50: Improving choices in work and retirement*,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3.
- Holden, Karen C., Richard V. Burkhauser, & Daniel J. Feaster, "The Timing of Falls Into Poverty After Retirement and Widowhood," *Demography*, 25(3), 1988, pp.405-414.
- Hoppmann, Christiane & Jacqui Smith, "Life-History Related Differences In Possible Selves In Very Old Ag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2), 2007, pp.109-127.
- Krause, Neal, "Religious Doub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7(3), 2006, pp.287-302.
- Laberge, Suzanne & Mathieu Albert, "Conception of "Aging Well" Among Women Seniors From Underprivileged and Affluent Communities," *Conference Papers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2004, pp.1-22.
- Laslett, P., *A Fresh Map of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Laslett, Peter, *A Fresh Map of Life :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Laz, Cheryl, "Act Your Age," *Sociological Forum*, 13(1), 1998, pp.85-113.
- Litwin, Howard, "Correlates of successful aging: Are They Univers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4), 2005, pp.313-333.

- Phua, Voon Chin, James McNally, & Keong-Suk Park, "Men Planning for Retirement: A Life course Perspective," *Conference Papers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2004, pp.1-24.
- Phyllis Moen & Donna Spencer, "Converging Divergences in Age, Gender, Health and Well-being: Strategic Selection in the Third Age"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2006.
- Ponzo, Zander, "Promoting Successful Aging: Problems, Opportunities, and Counseling Guidelin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992, pp.210-213.
- Van der Meer, M. J., "The sociospatial diversity in the leisure activities of older people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Aging Studies*, 22, 2008, pp.1-12.
- Vickerstaff, Sarah, "Entering the Retirement Zone: How Much Choice do Individuals Have?," *Social And Society*, 5(4), 2006, pp.507-517.
- Voon Chin Phua, James McNally and Keong-suk, Park, "Men Planning for Retirement: A Life course Perspective," *Conference Papers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4, pp.1-24.
- Weinstock, Comilda S., "Successful Aging: A Psychological Viewpoint," *Aging: It's Challenge to the Individual & to Society*, 1974, pp.265-281.
- Wermel, Michael T., "The Role of Management in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Insurance*, 27(2), 1960, pp.37-43.
- Zhan, Min & Shanta Pandey,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he well-being of women in retirement," *Social Work Research*, 26(3), 2002, pp.171-184.

<참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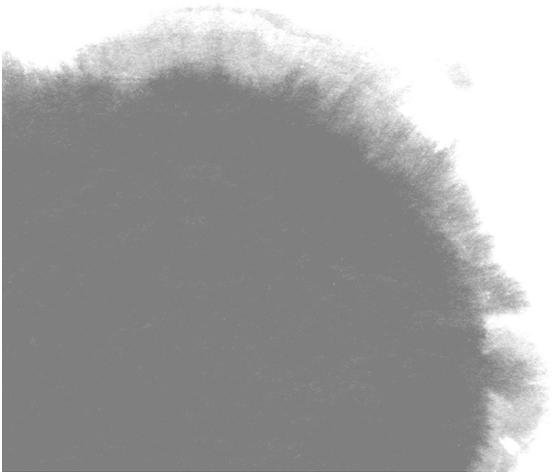
Q-Net(2010). <http://www.q-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http://www.familynet.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main.html>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  
 대한노인회(2010). <http://www.koreapeople.co.kr/>  
 문화체육관광부(2010). <http://www.mcst.go.kr/>  
 법제처(2010). <http://www.moleg.go.kr/>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평생교육진흥원(2010). <http://www.nile.or.kr/>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2010). <http://www.welfare.net/>  
 한국가족관계학회(2010). <http://www.kafr.or.kr/>  
 한국가족치료학회(2010). <http://www.familytherapy.or.kr/>  
 한국건강심리학회(2010). <http://www.healthpsy.or.kr/>  
 한국고령사회교육원(2010). [www.silver365.org/](http://www.silver365.org/)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2010). [www.kula.or.kr/](http://www.kula.or.kr/)  
 한국금융연수원 <http://www.kb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2010). <http://www.kauce.or.kr/>  
 한국발달심리학회(2010). <http://www.baldal.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한국상담심리학회(2010). <http://www.krcpa.or.kr/>  
 한국임상심리학회(2010). <http://www.kcp.or.kr/>  
 한국FPSB(2010). <http://www.fpsbkorea.org/>



# 부 록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또 실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지** 등에 대해 간단히 여쭙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 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 380 - 8268, 8125 이은진, 이소정

조사원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사·도	시·군·구	성	나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___ 세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화 번호	(        )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원 유의사항

1) 조사 당시 응답자가 응답을 거리는 경우는 해당 문항을 '무응답(⑧, ⑧⑧)' 처리함.

2) 세부문항 중 상위문항의 응답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해당없음(⑨, ⑨⑨)' 처리함.

## 노후에 관한 인식

☞ 다음은 노후에 관한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1. OO님은 은퇴하신 후 또는 나이가 드신 후의 노후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 ② 좋아질 것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④ 나빠질 것이다
-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1. 

--

  
15

## 노후준비 실태

☞ 다음은 노후준비에 관한 귀하의 준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2. 노후준비를 생각할 때 다음 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	2)	3)	4)

  
16 17 18 19

3. 각 영역별로 노후를 대비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① 충분히 하고 있다(3-1로)       ② 어느 정도 하고 있다(3-1로)
- ③ 보통이다(3-1로)       ④ 거의 못하고 있다(3-2로)
- ⑤ 아예 못 하고 있다(3-2로)

3. 

1)	2)	3)	4)

  
20 21 22 23

	2. 중요도	3. 노후대비 준비여부
1) 경제		
2) 건강		
3) 여가		
4) 사회참여 (자원봉사, 일자리 등)		

	3-1. 시작시기 (3번 문항 ①, ②, ③ 응답자만)	3-2. 어려움 (3번 문항 ④, ⑤ 응답자만)
1) 경제		
2) 건강		
3) 여가		
4) 사회참여 (자원봉사, 일자리 등)		

3-1.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기타

3-1.  
1) 2) 3) 4)  
□ □ □ □  
24 25 26 27

3-2. 노후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음  
② 경제적 여유가 없음  
③ 그다지 관심이 생기지 않음  
④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름  
⑤ 기타

3-2.  
1) 2) 3) 4)  
□ □ □ □  
28 29 30 31

##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욕구

☞ 다음은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관한 문항입니다.

\* 노후설계 서비스란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인이 노후에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계획 및 대비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형태는 인터넷 또는 책자를 통한 필요한 정보제공,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4. OO님께서서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다음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4.  
1) 2) 3) 4)  
□ □ □ □  
32 33 34 35

5. OO님께서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노후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1) 2) 3) 4)  
□ □ □ □  
36 37 38 39

	4. 필요도	5. 비용지불부
1)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결		
2) 전문가가 상담(또는 컨설팅)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노후준비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3)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ex. 평생교육원 등)		
4) 전문가가 노후준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고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		

6. OO님께서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노후설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40

### 전달체계 관련

☞ 다음은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7. OO님께서 노후 설계 서비스를 받는다면 다음의 기관 중 어떤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평생교육시설(ex. 평생학습관 등)  
④ 노인복지관  
⑤ 종합사회복지관  
⑥ 구청 또는 군청  
⑦ 재직 중인 직장  
⑧ 기타

7.   
41

7-1. 기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접근성(근접한 거리, 심리적으로 가기 편안함)  
② 신뢰성  
③ 전문성  
④ 기타

7-1.   
42

### 일반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8. OO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 재학 또는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8.   
43

9. OO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9-1로) ② 자영업(9-1로) ③ 전업주부(9-2로)  
④ 무직(9-2로) ⑤ 기타

9.   
44

9-1. 가장 오랫동안 하신 일에서 퇴직을 하셨습니까?

- ① 예(9-2로) ② 아니오

9-1.   
45

9-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2.   
46

10. OO님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10.   
47

(※ 조사원은 응답을 듣고 아래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하십시오.)

1	1인 가구	2	부부가족	3	부모+미혼자녀
4	확대가족	5	기타가족		

11. 귀하의 월 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만원

11.  
 만원  
48 49 50 51

(보기:  )

(※ 월 수입을 기입하고,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함.)

보기  
  
52 53

<보기>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 ~ 199만원
- ③ 200 ~ 299만원
- ④ 300 ~ 399만원
- ⑤ 400 ~ 499만원
- ⑥ 500만원 이상

- ※ 1) 소득은 실소득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 귀하의 성의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